

200해리시대에 부응한

水産資源管理制度 改善方案研究
Korean Fisheries Management System

2005. 5



해양수산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200해리시대에 부응한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5. 7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서 승 완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전 재 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민 규 교수(인하대학교)

송 영 선 전문연구원

김 현 희 초청연구원

자문위원 김 병 호 교수(부경대학교)

류 정 곤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차 철 표 연구위원(수산과학연구소)

이 광 남 연구위원(한국수산회)

황 진 욱 연구관(국립수산과학원)

연구보조원 김 경 미

目 次

研究概要	11
제 1 장 研究背景 및 現行法制	17
제 1 절 문제제기	17
1. 수산업 여건의 변화	17
2. 수산정책의 미래	18
3. 수산업법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19
4. 법리와 법의식의 괴리	21
제 2 절 관련법제의 구조	22
1. 해양수산부 출범전의 수산관련법제	22
2. 해양수산부 출범후의 수산관련법제	25
3. UN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 수산법제	27
제 2 장 法制整備의 範圍와 方向	31
제 1 절 법제정비의 범위	31
1. 관련법제의 구조조정	31
2.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32
제 2 절 법적 안정성의 확보	34
1. 법개념의 명료화	34
2. 불법어업의 예방	36
3. 명목적 법률의 정비	37
4. 하위법령들의 정비	37
5. 행정규제의 개혁	39
제 3 절 기초법리의 정립	41
1. 어업권의 본질	41

2. 어업자원의 법적성질	41
3. 법사회학적·법사학적 고찰	47
제 3 장 外國法制動向	53
제 1 절 英國法制	53
1. 수산정책의 개관	53
2. 법제의 구조 및 변화	57
제 2 절 日本의 政策과 法制動向	64
1. 수산기본정책의 대강	64
2. 어업법 개관	71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법제	73
4.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	75
5. 수산기본법	87
제 3 절 美國法制	95
1. 서 설	95
2.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 및 법제	97
3. 수산보존 및 관리법(지속가능 수산업법)	102
4. 지역수산위원회와 수산관리계획(FMP)	114
제 4 장 部門別 爭點分析 및 立法事項	123
제 1 절 水産業法制	123
1. 총 칙	123
2. 면허어업	128
3. 허가 및 신고어업	137
4.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141
5. 어업질서의 유지등	142
6. 보상 및 보조	147
7. 수산조정위원회	150
8. 보 칙	152

9. 벌 칙	155
제 2 절 水産資源管理法制	157
1. 총 칙	157
2.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58
3. 수면의 지정 및 관리	159
4. 자원의 보호와 관리	160
5. 어획노력량의 관리	161
6. 어획량의 관리	163
7. 자원의 조성	163
8.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	164
9. 보 칙	165
10. 벌 칙	165
제 5 장 裁量行爲 透明化	167
제 1 절 裁量권행사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67
1. 요건규정에 관한 정비기준	167
2. 행위(효과)규정의 불명확성에 관한 정비기준	176
3. 인·허가 취소·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78
제 2 절 불명확한 경제적 제재의 정비기준	183
1. 벌 금	183
2. 과징금	184
3. 과태료 및 부담금	188
제 6 장 水産業法 改正案	189
제 7 장 水産資源管理法 制定案	275
參 考 文 獻	347

◆ 參考資料 1

水產法制 聯關分析表 353

◆ 參考資料 2

韓·日 水產業法 對照表 367

研究概要

1. 연구배경

수산업계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변화와 유통구조의 혁신과 같은 기회요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약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어장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조업과 경영 그리고 기술개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현행 수산관계 법제는 정부와 사계의 노력에 의하여 부분적인 정비들이 계속되어 왔지만, 변화된 여건과 새로운 법률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대외적으로는 WTO / FTA 체제에 적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어장 환경의 악화와 어업 기술의 발전 및 어업경영 여건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체계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2.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1) 법제현황

- ◇ 기본체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제25조(수산업의 육성)
 - 제26조(수산기술개발촉진)
- ◇ 모법체계 : 수산업법
 - 대통령 4개
 - 부령 15개
- ◇ 주요하위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과절차에관한규칙

2) 과제

- ◇ 기본법의 지도력 미비
수산업제에 대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규범력 미비
(가칭)수산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부각
- ◇ 법제의 분화발전에 따른 정합성 결여
수산업법의 종합법으로서의 기능 쇠퇴
어장관리법 · 기르는어업육성법 · 수산물품질관리법과의 관계
- ◇ 상하법령간 법적안정성 미비
수산자원관리령 : 권리의무 관계를 직접제약 → 입법한계 이탈
상위 “법률”들의 변화에 따른 하위 “법령”의 지원체계 미흡

3. 연구목표

1) 법령정비의 방향정립

OK21등 장기발전 정책의 반영
해양수산법제의 장기 발전틀 고려
법령의 분화발전에 따른 체계적 정합성의 조정
상위 “법률”의 정비에 따른 하위 “법령”들의 정비방향 제시

2) 주요쟁점정리

(가칭)수산기본법의 분화 방안
규제와 육성의 조화
수산자원조성과 수산업촉진의 병행
공간[수면]계획과 시설[어장]계획의 접점 모색
어업인의 “어업경영” 능력의 함양

3) 기존법의 개정 : 수산업법 전문개정안

어업권의 개념과 범주 조정
어업허가의 정수 · 어기 · 어장의 규율

수산업과 어업활동의 관계정립
업종의 단순화
어업의 자율적 관리

4) 신법의 제정 : (가칭)수산자원보호법 제정안

수산자원의 법적 성격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규율
보호수면의 지정·관리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소하성 어류의 보호·관리

4. 연구범위

1) 기본방향

- 수산업법이 수산분야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산업제도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수산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
-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2) 수산업법 전문개정에 따른 수산업법 개정법률안 마련

- 수산업법을 수산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
- 용어 정의 및 정리(→ 일부 용어를 보편적 용어로 조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어업생산 관리 및 정책(권한과 책임)
- 면허, 허가, 신고어업제도에 관한 사항
- 어업생산의 주체인 어업인(어업권자)의 권리와 의무
- 어업의 구분, 어업의 종류, 어업별 어구·어법정의 근거 설정

※ 어업의 종류, 어선 및 漁法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에 반영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漁具(어구의 규격, 치수, 사용량 등 물리적 조건)에 관한 사항은 가칭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 추진

- 어업허가의 정수·조업구역 및 조업어장·어기의 규율
 - 어업생산수단(어선 : 규모, 선복량, 마력수 등)의 관리
 - 면허, 허가어업의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
 - 어선의 감척, 휴어 등 실효성 있는 어획노력량 감축에 관한 사항
 -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 재검토 필요(→구체화, 명확화)
 - 육성수면·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근거 설정
 -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어업분쟁 및 조정 등)
 - 어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수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수산회 등 단체·협회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어업 및 어업인의 지원 등 수산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필요한 사항 등
- ※ 「수산자원보호령」을 폐지하고, 그중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함이 곤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 반영
- ※ 「수면어업법」을 폐지하고 그를 새로운 「수산업법」에 반영하는 방안검토

3) 가칭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법률안 마련

- 수산자원관리(수산자원의 보호, 이용, 개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 수산자원보호령 폐지에 따른 수산업법 제79조와 관련된 사항 및 기타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 등을 검토하여 반영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수산자원의 회복, 보호, 적정이용, 적극적 조성, 과학적 관리시스템 등)
- 수산자원 보호·관리의 주체(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어업인의 책임·역할 등)
- 수산자원의 보호·보존(수산생물의 포획·채취 제한(품종, 체장, 기간, 지역 등), 그물코의 규격제한, 어구의 제한, 어구사용금지 구역과 기간, 보호수면 또는 보호구역, 특정 수산생물의 보호 등)
- 수산자원의 적정 이용(TAC제도와 관련된 사항)
- 수산자원의 개발·조성(인공어초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의 회복계획)

※ 기르는어업육성법에 있는 수산자원조성분야의 이관 필요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이의 인프라 구축(수산 자원의 조사·평가 및 백서 발간, 해양생태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제공,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운영)
- 수산자원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기구 등 수산자원관리분야 국제협력 등
- 소하성 어류의 보호·관리
- 조업 금지구역 지정 근거 설정 등

4) 새로운 수산업법 및 가칭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의 하위 법령 제·개정방향 제시

- 하위법령 동폐합 및 정비의 방향
- 법령별 총칙 및 각 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타 법령검토 등

- 기르는어업육성법 : 수산자원조성에 관한사항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함
- 내수면어업법 :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수산업법의 ‘장’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제3장 수산업의 육성, 제4장 수산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산업법으로 통일시켜야 하는지 여부 검토
- 수산자원보호령 : 수산자원관리를 제외한 어업조정, 제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은 새로운 수산업법에 반영하고, 수산자원관리와 직접관련되는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
- 수산업법에 속한 부령, 관련 고시 및 규정 : 법률 개편에 따른 내용의 검토 및 재조정
- 미국·일본·EU 등의 어업정책 및 자원관리 제도의 분석을 통한 수산관계 법령의 정비방향 정립

- 상기 의견 외에도 어업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향후 협의를 통해 반영 추진

5. 추진일정 및 방법

1) 기초연구 : 2004년 4월~9월

선행 연구결과의 분석 및 관련 정책·계획의 분석
현행법령 체계 및 연관분석
국내 법집행실태 및 입법수요조사
외국 법제 및 법집행 기반의 차이 연구

2) 응용연구 : 2004년 10월~2005년 3월

기본법리 정립 및 주요쟁점 정리
법안(개정안/제정안) 작성 및 유관기관 검토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보고서 제출 및 입법화 지원

3) 참고자료(선행 연구보고서)

-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 및 읍저버 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2002. 9) 중 제4편
- 수산관계법령의 체계적정비 및 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2002. 2)
-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체계 정비, 개선방안연구(해양수산부/2002.10)
- 환경어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해양수산부/1997.10)
- 農林漁業政策の新方向(日本 農林統計協會/2002.3)
- Integrated Assessment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rade-Related Policies : A Country Study on the Argentina Fisheries Sector (UNEP/2002)
- Fisheries and the Environment vol.1,2 (UNEP/2003.4,5)

제 1 장 연구배경 및 현행법제

제 1 절 문제제기

1. 수산업 여건의 변화

1953년 9월에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당시 상공부 소관]이 제정된 이래 반세기가 흘렀다. 그 동안 수산업법은 “수면의 통합적 이용으로 어민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입법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였다. 그러나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국제적으로는 유엔해양법조약에 기초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의 출현으로 우리의 수산정책은 200해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사회의 구조가 많이 바뀌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세계적으로 농수산물의 수급상황은 인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등에 의하여 수요가 증대하는 반면에, 토양의 열악화와 사막화의 진행 등으로 공급의 불안정 요인이 있어, 각국이 장기적으로는 식료품 수급을 압박받는 사태가 예상된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여 국내 공급력을 유지·확보할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민생활상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토대를 형성하는 다면적 측면을 안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어업인의 일상적 생산활동이나 지역에서의 노력을 토대로 하지만, 국민의식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요구된다.

국내 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은 과잉어획과 해양환경의 악화로부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처해 있으며, 어업생산은 감소추세를 보인다.¹⁾ 또한 어업인의 감소·고령화의 진행이 현저하고 장래에 걸쳐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적·인적 기반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에도 사정이 비슷하다.²⁾ 또한 금융 자유화·국제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있어 한국 어업은 고비용화가 초래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과거의 과잉투자와 오랜 경기부진의 영향등으로 인하여 어업의 경영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 한국수산회, 『수산자원회복계획 초안작성을 위한 Working Group 운영』, (해양수산부 : 2004.12), p.1

2) 金田禎之, 『漁業法のここが知りたい』, (東京都, 成山堂 : 2003), p.201

2. 수산정책의 미래

1)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

국내 수산업은 재생산 가능한 천연자원을 식탁에 공급하는 유일한 산업이며,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를 추진하는 일은 수산업의 중대한 책무이다. 해양법 체계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산자원의 관리와 지속적 이용이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변수역의 심각한 자원상황으로 보아, 우선은 자원회복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하여 해역마다 어업인을 비롯하여 관계자의 적극적 참가로 자원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어획노력량의 감소 그 밖의 자원회복에 이바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식어업의 추진으로 적극적인 자원증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의 관리·증식에 있어 불가결의 전제인 양호한 어장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양어업은, 세계의 어업과 자원의 조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가야 한다. 수산업법 등 수산업 법제에 관해서는, 어업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자원의 지속적 이용체제의 확립, 어업경영의 효율화 등의 관점으로부터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자립어업 경영기반의 확립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하는 중에 경영에 활력을 주는 담당자의 육성·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기에 ‘의욕과 능력있는 경영체’를 주체로 하는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이러한 경영체에 대한 시책의 집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어촌계나 수산업협동조합등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통한 경영기반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중소어업의 경영은 자원악화 등에 의한 생산의 감소와 과잉투자, 경기후퇴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로 현저하게 악화하고 있다. 이후 수산물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또한 당면 자원의 회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자원 등에 따른 어업의 생산구조의 재편과 효율적인 경영에의 전환이 불가결하다.

3) 수산물 유통·가공의 합리화와 소비자 욕구의 반영

수산물유통은 최근, 대규모 편의점 등의 영향력 강화와 수입 수산물의 증대 등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이에

적확하게 대응한 시책의 전개를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자의 측면에서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산지기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물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품질·위생관리의 강화가 세계적인 조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일관된 품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산물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원산지 등 표시의 추진으로 수산물소비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수산업 지역의 진흥과 수산기반 정비의 재검토

수산자원과 담당인력의 감소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의 정체와 지역의 활력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산업지역의 진흥을 도모하며, 새로운 담당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어 스스로 지혜를 모아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열린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산자원과 수산업·어촌의 현상을 고려하여 수산기반 정비에 대한 요구를 통찰하고 지방의 자주성에도 배려하여 새로운 이념과 구성에 의거하여 수산기반 정비의 방향을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수산업법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1) 수산업법의 역사적 평가

1953년의 수산업법은 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자원관리라는 측면도 안고 있었지만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산업 자체의 진흥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 동안 수산업법은 어획량의 증대, 어업자소득향상 등 일정한 성과를 올렸지만, 본격적인 200해리시대를 맞이하여 수산업의 진흥이라는 전통적 노선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자원관리와 지속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와의 사이에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자원의 관리와 지속적 이용의 도모를 수산정책의 우선과제로 정초시키는 한편 어업의 새로운 구분, 소비자를 고려한 정책의 전개, 수산업의 진흥을 핵심으로 하는 어업지역의 진흥 등 수산업법 제정 당시에는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1953년의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통합적 이용으로 어민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심은 생산성향상 등을 통한 ‘어업등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지위향상’이다. 수산업법 제정 이후 어업의 외연적인 전개에 기인한 원양어업의 발전, 어구·어법의 개량 등으로 인한 어업의 생산성 향상, 양식업의 보급 등으로 어획량은 증대하고 어업자의 소득수준도 향상하는 등 수산업법은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입법후 반세기가 경과한 지금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총허용어획량(TAC)의 도입과 같은 변화된 여건 속에서 한반도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속적 이용을 도모함이 수산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어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지위향상이라는 목표가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2) 새로운 정책과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급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를 도모하고, 한반도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 이용을 도모함이 수산정책의 핵심과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수산업법은 국민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장 환경·생태계를 양호하게 보전하며 적극적인 어획노력량의 삭감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1953년 이래 수산업법은 “면허어업”을 어장과 어업권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면허어업인들에게 과도한 권리의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세대들의 “어장” 진입을 가로막는 반면에,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을 “어장”이라는 공간과 “어업권”이라는 권리의 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논리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아울러 종래 허가어업을 어선 운영자의 활동범위나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 시도지사 허가어업 및 구획어업으로만 구분함으로써 200해리 시대에 부적합한 어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수산자원관리를 도모하면서 의욕과 능력있는 경영체를 육성·확보함에 있어 종래의 어장과 어업 및 어업권의 개념과 범주를 혁신시켜 배타적 경

제수역의 안과 밖을 새로운 활동무대와 기준으로 삼는 개념과 범주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법에는 수산업의 생산면에 착안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왔지만, 소비자에게 착안한 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어촌은 어업인이 정주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는 곳으로서 아름다운 어촌의 경관의 유지, 다양한 지역문화의 승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의 다양한 유형·무형자원들을 활용하여 수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4. 법리와 법의식의 괴리

1) 수산자원의 개인성과 공공성

제헌헌법 이래 수산자원은 특허의 대상이었다. 즉 “수산자원은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1987년의 헌법 제120조제1항). 지하자원과 함께 수산자원이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되었음은 이들 자원이 사적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법률에 승계되었다.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은 바다와 바닷가를 “공유수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공유수면은 사적소유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매립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수산업법이 어업활동에 대하여 면허주의(제8조) 내지 허가주의(제41조)를 취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장관리법이 적용되는 어장 [면허어장 및 허가어장]도 공유수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적소유권이 배제된다.

공유수면 그리고 어장이라는 공간과 어업권 등이 모두 실정법상 특허(면허)의 대상이라면, 어장관리와 어업권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민간 상호간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희박하다. 그럼에도 어장 및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현존한다. 이는 공유수면으로서의 “어장”에 대한 법률관계와 공유수면 안에서 어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실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래 수산업법(제15조제2항)은 면허어업권을 물권으로 보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어업권은 공유수면 자체에 대한 권리와 관계없이 어장 등의 공유수면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이용권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 많은 어민들의 법의식은 어업권을 마치 사적소유의 대상으로 여긴다.

2) 토지 중심의 법률관

실정법의 태도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법의식의 이면에는 공유수면 자체도 매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개발행위에 의하여 어업권이 피해를 볼 경우에 보상을 받는다는 경험의 깔려 있다. 또한 1953년의 수산업법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관습상입어권”(제40조)도 어업권에 대한 법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 시대 “공공용물” 등을 둘러싼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의 공존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은 어장과 어업권등에 대한 전면 국가관리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면허 또는 허가의 시행에 있어서 사적소유권 의식에 의한 저항에 직면한다.

실정법 규정과 달리 움직이는 이러한 실체관계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저해한다.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규범과 사실의 간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수산업법이 어업권을 물권으로 보고 어업권에 대하여 민법상 토지 관련 규정을 준용함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어업인이 주인공인 수산업법에서 토지 중심의 법적 사고를 유추하고 있음은 중대 관건이다. 어업권을 물권으로 봄으로써 발생하는 법률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 2 절 관련법제의 구조

1. 해양수산부 출범전의 수산관련법제

종래의 수산자원 관련법제는 내수면어업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어항법 및 낚시어선업법 등을 망라한다.

1) 수산업법

1953년 9월에 제정된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상공부 소관)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통합적 이용으로 어민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보

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³⁾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제3조제1항).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사유수면]이 공공수면과 연결하여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였다(제3조제2항). 면허어업인 양식어업·정치어업·정소인망어업·정소(定所)부예망(敷曳網)어업·정소집어어업·공동어업은 지방장관의 면허사항으로 하고(제8조), 허가어업인 포경어업·트롤어업·공선어업·기선저인망어업·기선건축망어업·잠수기어업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였다(제11조). 어업의 면허기간은 5년 내지 10년 이내로 하였고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되 질권의 목적은 될 수 없도록 하였다(제24조). 1953년의 법은 조선어업령(다만, 제6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시까지 존속) 및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였다.

1971년의 수산업법개정법(법률 제2300호 : 소관 농림부)은 새로운 어구·어업방법 또는 어장의 개발, 원양어업세력의 신장과 해외진출, 수족자원보호 등을 위한 내수면어업의 중요성 등으로 인한 허가어업과 원양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이어 1995년의 개정법은 양식어업을 종전에는 제1종양식어업, 제2종양식어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식대상품종별로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으로 구분하고, 공동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어업을 자연산 패류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어업과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양식업으로 변경하였다. 어촌계등이 어장관리등에 필요한 규약을 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어업분쟁의 조정등을 추가하고, 어업면허권한등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어업자원보호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법제화한 1953년의 어업자원보호법(법률 제298호 : 소관 상공부)는 해양주권선의 법적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수역내의 어업자원을

3) 1953년의 수산업법에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이라 함은 사유수면을 말한다. 同法 제4조(어업과 私有水面), 참조

보호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은 물론 그밖의 일정 수역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으로 정하였다. 1962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3) 어항법

1969년의 어항법(법률 제2106호 : 소관 농림부)은 어항의 시설·수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업무의 적정을 기하고, 어로작업의 안전과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3종어항은 수산청장이 그리고 제2종어항은 관할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도록 관할권을 정하였다. 해양수산부로 이관후 1997년의 개정법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1997년의 법은 어항을 어촌지역사회 발전의 중심핵이 될 수 있도록 어항의 기능을 관광·교통·유통등으로 다양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외의 자(비관리청)가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된 토지중 비관리청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어항시설사업의 민자유치를 크게 제약하고 있던 점을 개선하여 방과제·물양장등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일부 기능시설, 문화·복지시설, 관광·휴게시설용 부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4) 내수면어업법

1975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법률 제2835호 : 소관 농수산부)은 유향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내수면의 적극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다원적인 수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획기적인 개발촉진에 상응하는 어업제도와 개발정책수행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내수면을 광의의 식량공급권으로 개발한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 법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2000년 1월에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었다. 2000년의 개정법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내수면개발지역 지정 및 내수면개발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였다.

5) 낚시어선업법

1995년의 낚시어선업법(법률 제5078호: 소관 농림수산부)은 낚시어선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창설하였다. 이 법에 따라 낚시객을 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등의 낚시어선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어선법에 의한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사고시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시켰다.

2. 해양수산부 출범후의 수산관련법제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1996년에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법률 제5152호: 소관 해양수산부)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발효(1994.11.16)에 따른 국제해양질서와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어업활동을 규제한다.

2) 기르는어업육성법

2002년 1월의 기르는어업육성법(법률 제6611호: 시행일 2003.7.15)은 “잡는 어업”을 넘어 수산자원조성 개념을 담고 있다. “바다목장”(제2조제3호)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기르는어업육성법은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일본의 지속적양식생산확보

법(1999년법)등의 영향을 받았다.

3) 어장관리법

2000년 1월의 어장관리법(법률 제6257호 해양수산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동시갱신 등 어장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중 특히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의 실시나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한다(법 제5조 및 제7조).

수산자원관계 법령일람표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 수산물검사법 ○ 수산업법 ○ 어장관리법 ○ 어업협정 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검사법시행령 ○ 수산업법시행령 ○ 어업등록령 ○ 수산자원보호령 ○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선박안전조업규칙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 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 관한규칙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 어획물운반업허가에관한규칙 ○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 수 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용자에 관한규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 어업자원보호법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어항법	○ 어항법시행령	○ 어항법시행규칙
○ 낚시어선업법	○ 낚시어선업법시행령	○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자 료: 해양수산백서(2002),재구성

3. UN해양법협약과 우리 나라 수산법제

1)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의 배경

UN해양법협약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문제일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이다. 체약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특히 수산업 등에서 중요한 사항은 연안국이 200해리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 경우,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어획가능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결정함과 동시에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UN협약 제61조).

이 규정에 의하면, 협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경우에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조약상 어획가능량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체약국의 영해 이외 즉 12해리에서 200해리의 해역은 원칙적으로 공해로서 취급되어, 이 해역에서의 생물자원이나 광물자원의 관할권도 잃게 되기 때문에 외국의 대형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체약국으로서는 이러한 선택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약국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협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이 협약이 정한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무의 이행을 적확하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등의 입장에서 어획가능량을 정하고,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다.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1조(생물자원의 보존) ①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어획가능량을 결정한다.

②연안국은 자국이 입수할 수 있는 최량을 과학적 증거에 의해 고려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위협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존조치 및 관리조치를 통하여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적당한 경우에는 연안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관(소지역적인 것, 지역적 것 또는 세계적인 것을 묻지 아니한다)과 협력한다.

4) 金田禎之 : pp.147~149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는 환경 및 경제상의 관련요인(연안어업회사의 경제상의 요구 및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청을 포함한다)을 감안하고 동시에 어획의 태양, 자원간의 상호의존관계 및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적인 최저한도의 기준(소지역적인 것, 지역적 것 또는 세계적인 것을 묻지 아니한다)을 고려하여 최대지속생산량을 실현하는 가능한 수준으로 어획되는 종의 자원량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연안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어획되는 종, 또는 의존하는 종의 자원량을 그 재생산이 현저하게 위협되어지는 수준보다도 높게 유지하고, 또한 회복하기 위하여 당해 관련하여 의존하는 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⑤입수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에 관한 통계 기타 어류보존에 관련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적당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관(소지역적인 것, 지역적 것 또는 세계적인 것을 묻지 아니한다)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관계국(그 국민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을 인정받은 국가를 포함한다)의 참가를 얻어 정기적으로 제공 및 교환한다.

2)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역할분담

종전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관리를 위하여 수산업법등에 의거하여 어선의 허가정수(척수), 선복량, 기관출력(마력수), 어구·어법, 조업구역, 조업수역, 조업기간 등의 어획능력을 규제하는 방법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어선능력과 어구 등의 향상이 현저하여 현행 법령에 의한 어획능력의 규제로서는 이를 따라 잡을 수가 없고, 자원량의 유지가 어렵다. 여기에서 어종별로 필요한 것부터 어획가능량제도를 도입하여 어획량 자체를 직접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어업관리 개념이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수산업법 등에 의한 어획능력의 규제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관리를 행하는 방법을 이른바 '입구규제'라 하고, 어획가능량 제도에 의하여 어획량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출구규제'라고 한다. 이 어획가능량 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실시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유럽등지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량의 변동이 격심하고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추정 자원량에 상당한 폭이 있을 수 있는 어종에 대하여는 TAC를 설정하는 관리가 반드시 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어획노력량의 삭감은 TAC의 설정과 비교하면 어획압력을 삭감하는 방법으로서는 정밀도를

갖추는 것이지만, 추정 자원량에 상당한 폭이 있는 어종에 대하여는 TAC의 설정보다 오차가 적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종에 대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획노력량을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 현행 수산업법등의 규정에 기하여 어획노력량을 구성하는 어선의 척수, 조업기간 등의 삭감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⁵⁾

그러나 수산업법은 어업·어구 종류 마다의 관리를 기본으로 하며, 수산자원에 주목하는 경우에 동일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의 종류를 관리하는 행정청은 해양수산부장관에서부터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까지 이른다. 따라서 특정의 수산자원에 주목하여 어획노력량의 삭감을 행하는 경우에 관리 주체가 상이함을 초월하여 복수의 어업·어구의 종류에 따라 일체적인 어획노력량의 삭감을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일괄하여 어획노력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⁶⁾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은 이러한 변화에 당면하여 종래 총허용어획량 제도(제54조의2)를 도입하였다. 수산자원보호령은 이를 받아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제27조의2) 내지 총어용어획량의 관리(제27조의3)를 규정하였다. 이어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도단속(제10조), 배분량의 할당(제12조), 포획량등의 공포(제9조) 및 포획·채취실적보고(제15조)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법령 체계로 수산업법 체계에 의한 어획량을 관리한다는 것은 입법체계상 곤란하다.

다른 한편 어획노력량의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정수등의 결정(제54조)을 규정한다. 수산업법(제52조)의 어업조정명령은 선복량의 제한을 포함하고 수산자원보호령(제23조의3)도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한다. 그러나 수산업법상의 허가정수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선복량 제한은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할 뿐 2004년 12월말까지 연안어업에 효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현행 법제는 어획노력량을 형성하는 기관출력이나 어구의 규모(크기와 사용량)를 제한하는 적당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차선책으로 어업허가및신고등에

5) 金田禎之, 前掲書 : pp.149~151

6) 일본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2001년 6월 29일에 공포(2001년 11월 1일 시행)하여 총허용어획량 제도에 추가하여 새롭게 어획노력량의 총량관리제도(TAE: Total Allowable Effort 어획노력가능량제도)가 창설되었다.

관한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선복량, 기관출력 및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실시한다. 그러나 상위법률의 정비 없이 해당 규칙의 개정을 통한 규제는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질곡 상황은 수산물 생산량 자체를 증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법”에 해당하는 수산업법에 어획노력량 규제체계를 결부시켜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호 모순될 수밖에 없는 자원관리와 산업(어업)육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유엔해양법 협약의 국내 이행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서는 수산업법과 하위법령에 기초한 총허용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관리제도를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체계에 담아야 할 것이다.

제 2 장 법제정비의 범위와 방향

제 1 절 법제정비의 범위

1. 관련법제의 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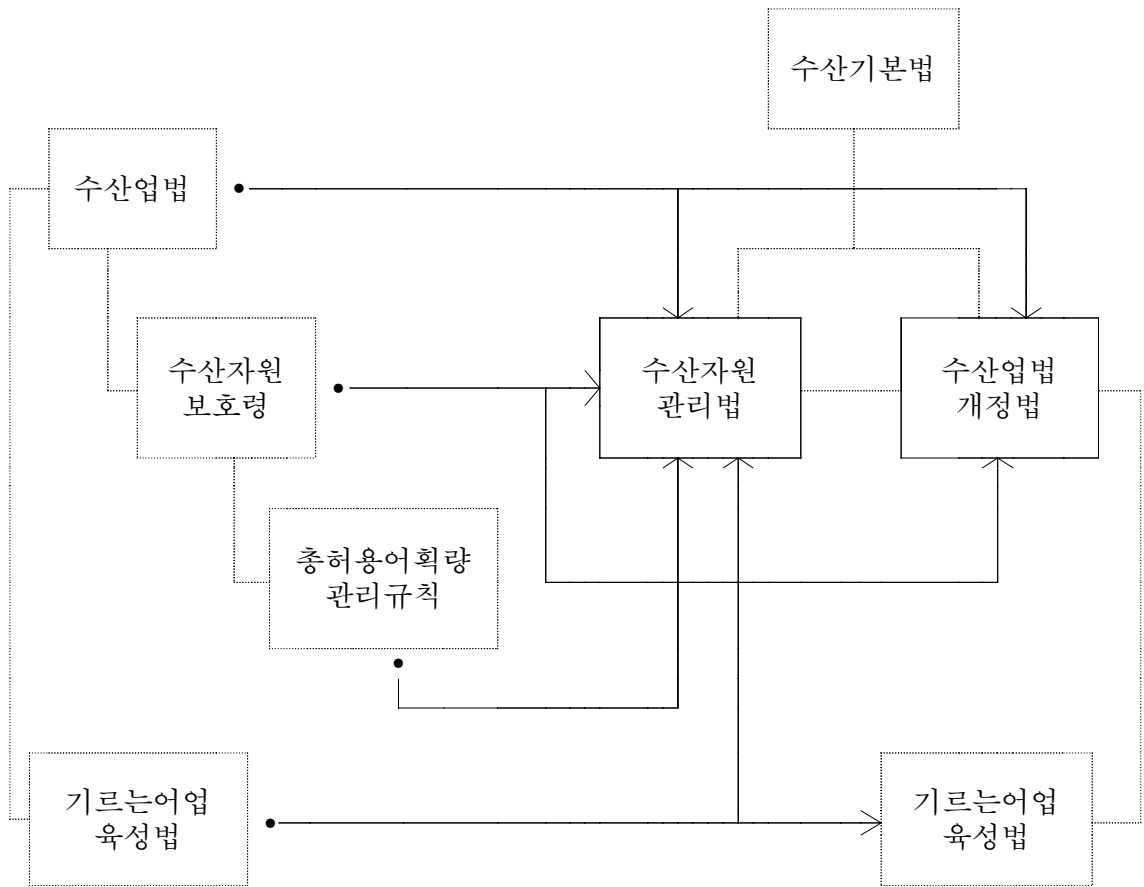
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3조). 그러나 현행 수산업법은 변모된 여건으로 인하여 법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기 어렵다.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의 정착과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한·중어업협정의 체결 및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보조금 삭감 논의 시작 등 우리나라 수산업은 전례 없는 격동기를 맞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산관계법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요청된다.

이미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분리하여 어장관리법,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제정되었고, (가칭)수산자원관리법등의 제정이 모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이 분리된 기존의 수산업법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산관계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관계법을 총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 제정된 2002년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수산에 대하여 너무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장기적으로는 (가칭)수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에 농업분야에서 농업기본법을 확대개편하여 1999년 2월에 농업·농촌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일본은 2001년 6월에 수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가칭)수산기본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법리 정립, 어업권의 개념 분화, 수산업과 어업의 범주분류 등 수산업 및 어업활동

등에 관한 원칙과 대강이 망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수산업법은 그 명칭과 적용범위를 축소시키고 “산업”관계법 내지 “사업자의 법”[예컨대, 어업법]으로 특화시키는 한편 기술적·세부적 규정들은 다른 관련 법령들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수산업법 정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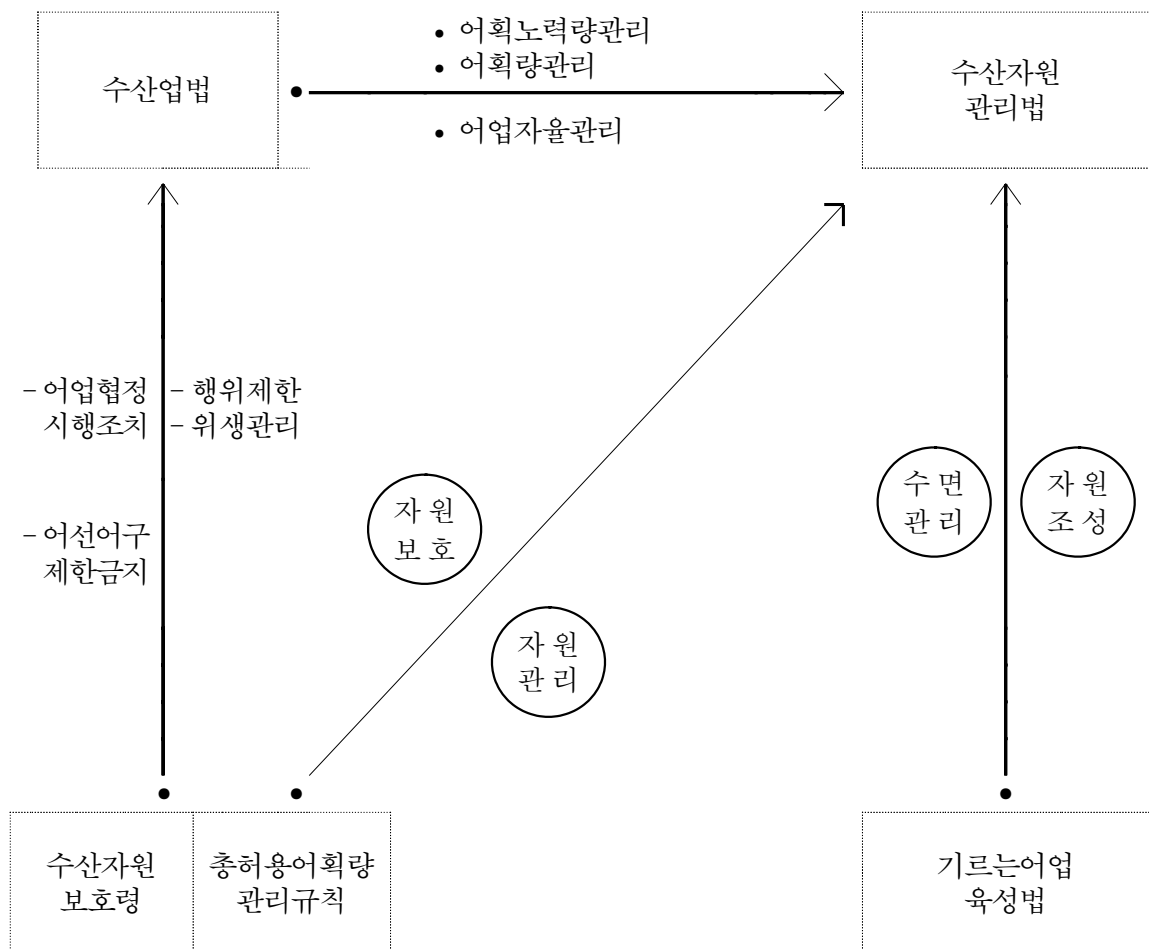


2.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영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통합하여 단행법을 제정하고, 추가로 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체도를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계에서는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수산자원”이라는 용어보다 “어업자원”이라는 용어가 더 구체적이지만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업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보호령,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중에서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관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안은 되도록 단일 조항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법령간 이관원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적인 어업관리제도와 함께 규정하는 것과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어업관리에 더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아직 심도있게 연구된 바는 없다. 미국, 캐나다 및 EU 등에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가 내부적 원리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허용어획량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어업관리제도와 총허용어획량제도는 관리 방법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자는 입법의견도 있다.⁷⁾ 물론 총허용어획량관리는 명백한 규제법이며 감시자의 법이기 때문에 법의 기능만을 강조하자면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등의 기초작업이 부족하며 전통적인 어업관리제도를 고려하면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을 보강하거나 (가칭)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률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및 제79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어업인 등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이 영과 관련하여 위임범위 등에 관한 위헌시비가 일고 있다. 위헌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단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논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어업자원보호법과의 역할분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어업자원보호법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킬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어업자원보호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은 법령 성격 등이 상이하지만 어업자원과 수산자원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체계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차제에 '수산자원'과 '어업자원'의 개념정의 및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법적 안정성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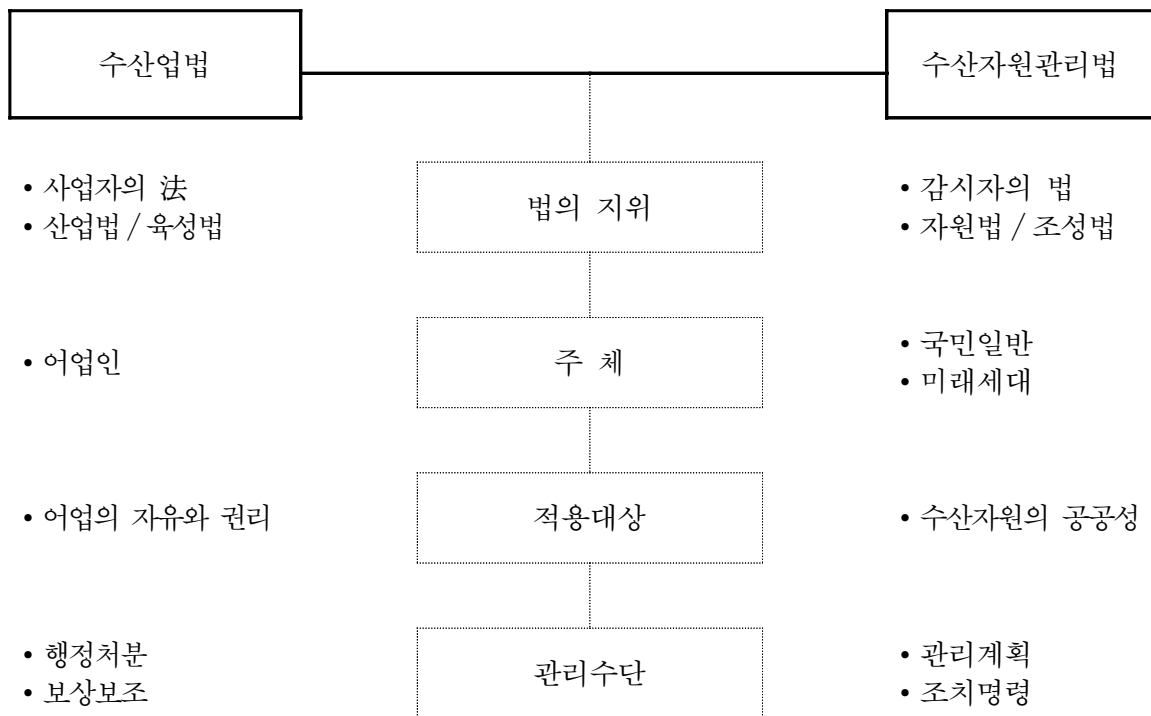
1. 법개념의 명료화

법령문언상 수사적 규정들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내 단위 부서들의 명칭과 수산업법상의 개념정의들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산업 내지 어업에 관한 실정법상 개념이 정치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산업”은 어업과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을 포함한다(법 제2조제1호). 여기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

7) 부경대학교, 2002 : 185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배타적경제 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도 수 산업법과 같이 “어업”을 정의한다. 한편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현행법체계상 “어업”은 수산업의 핵심이며 양식은 어업에 속한다[水産業 > 漁業 > 養殖].

신규 입법체계



이러한 관계는 수산정책과 어업정책이 서로 다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의 직제는 수산정책과 어업자원정책을 두 개의 부서[수산정책국·어업자원국]에서 관장한다. 물론 내부직제상 어업자원국은 어로·양식 등 주로 1차산업과 관련한 분야를 담당하고 수산정책국은 유통·가공, 어항·어촌 등의 기능인 2~3차 산업과 관련한 업무와 어업기반시설 및 어업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업자원국 및 수산정책국의 직제와 기능 및 소관법령들은 중첩의 소지를 안고 있다. 수산자원의 관리와 수산업의 진흥이라는 서로 다른 법체계가 분화되는 길목에서 관련 행정조직의 기능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불법어업의 예방

불법어업의 문제는 단순히 준법정신의 문제 또는 도덕적 문제로서만 다루어질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또는 육상에서 어업단속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⁸⁾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것은 대다수 영세한 어업인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어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규모가 영세하고, 어업에 대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자와 어업종사자간의 도급 계약적 고용계약 등 많은 복합적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에서부터 어업허가제도와 더불어 자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도의 내재적 문제 즉 전체 어획량의 상한을 규제하지 않고, 대상어종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자의 경쟁적 조업과 무차별적 자원이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연근해 수산자원은 과도하게 개발되어 고갈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원감소로 인한 허가어업만으로는 어업경영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어업을 자행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수산물의 증산정책이 198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자원관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업자의 입장에서 실행됨으로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불법어업이 성행하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⁹⁾ 그러나 불법어업은 산란장과 치어의 성육장을 파괴하기도 하고, 치·자어를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자원 전체의 번식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불법어업은 어장과 자원이용을 둘러싸고 허가받은 어업자와 조업분쟁을 야기하며, 주변국 EEZ를 침범하여 국위를 실추시키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TAC관리제도는¹⁰⁾ 어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이 어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8) 정도훈, 2002 : 73

9) 내국인 어업인간의 영역침해 문제도 불법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붉은대게, 꽃게, 고등어, 정어리 또는 키조개등 몇몇 어종을 제외하고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대상 어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10) 총허용어획량(TAC)제도는 수산자원관리의 주요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근해의 어종들에 대한 과학적 자원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여 현재 약20% 정도의 어종에 대하여서만 TAC 제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어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참여와 이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3. 명목적 법률의 정비

어업자원보호법은 우리 연안에서 일본 어선들의 조업을 금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선포한 이승만라인(평화선)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 법에는 평화선 내측수역(관할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의 면허증, 허가증, 신고 필증에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병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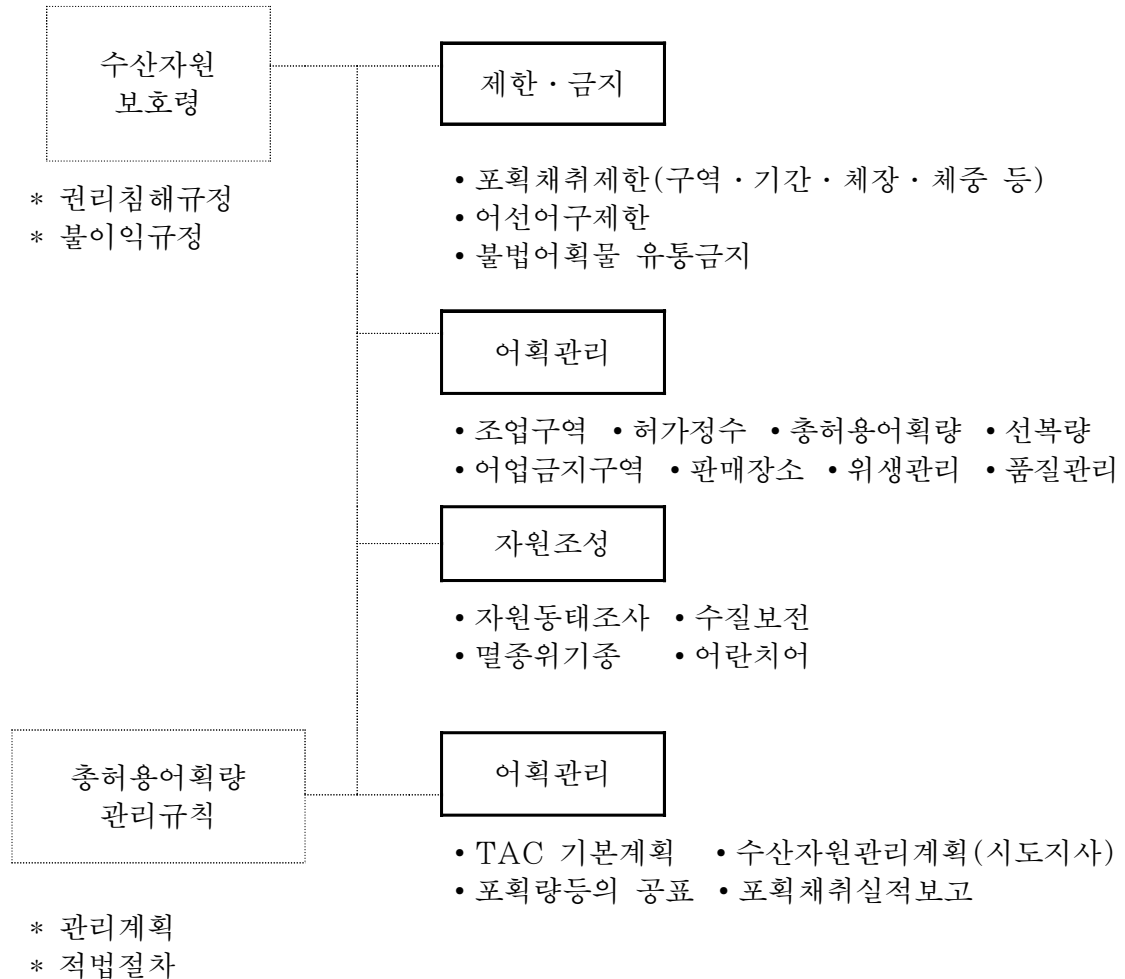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UN해양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한·중·일 3국간에 상호 어업협정도 체결되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에 앞서 주변국간 어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안된 것이다.

존폐 여부가 문제되는 어업자원보호법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재에는 그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업자원보호법은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시 해역관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국가간 협상 결과에 따라 법의 추급효가 살아 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될 경우에는 어업자원보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4. 하위법령들의 정비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사이의 긴장관계는 행정법의 오래된 과제이다.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들 중에는 법규명령성이 문제되는 것들이 일부 존재한다.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고시와 예규 또는 지침등의 행정규칙들을 모두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당장의 과제로 추진하기 어렵고 관계 부서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위법령 상위법화 기준



한편,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에 속하지만 ‘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규들이 상당수 있다.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그리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등이 같은 예에 속한다.11)

이러한 규칙들은 대체적으로 어업면허, 어업허가 내지 어업신고등에 관한 내용들을 규율한다. 법규명령들을 행정조직 단위로 분산시키면 책임의 소재가

11) 부경대학교, 2002 : 134

명확하고 행정상 편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분산된 규범은 일반 수범자들의 접근 가능성은 떨어뜨린다. 이론상으로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법규명령들을 여러 개의 규칙으로 위임·재위임을 거듭하기보다는 수산업법시행령 또는 수산업법시행규칙 등에 통일적으로 편제함이 바람직스럽다. 해양수산업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통합규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5. 행정규제의 개혁

1) 담보제한의 완화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약자인 어업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시작할 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되는데, 어업권의 양도와 담보의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어업을 영위하다가 어업경영자금의 문제 또는 기타 이유로 어업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어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우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에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수산업법 제19조에서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 이외 개인·공유·영어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서는 마을어업권을 제외하고는 어업권의 양도가 가능(어업권 등록후 어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하도록 규정하는 등 어업권의 양도 및 담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어촌계 또는 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에 담보설정을 금지함은 행사계약을 통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조합원과 어촌계원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생존권을 배려하려는 취지 아래 담보제공 등으로 입게 될 불안요소(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처분)를 배제하여 어업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어업권의 담보나 양도등의 문제는 어업인의 공동이익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엄격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논의의 소지가 있다.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보유하는 어업권에 대하여 공익보호를 이유로 담보

제공을 제한하는 이면에는 이들 조직의 독자성·단체성이 아직 충분하지 성숙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들 조직의 행위능력을 충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촌계는 어촌 사회의 근간이며 관습법에 연원하는 전통적 조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촌계가 독자적인 공동체성[權利能力]과 거래적격[行爲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들에 대하여 담보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각 어촌계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시키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인과 규제의 조화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및 별표3은 근해·연안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등의 기준을 규정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허가기준 톤수를 하향조정하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편성하되 어느 수준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현행 수산업법 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는 어업허가의 정수 등을 결정할 때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허가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허가정수를 감척사업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감척은 자원에 대한 영향이 큰 업종부터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할 경우, 허가요건으로서 어업활동실적(출어실적, 어획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업자는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업종별 허가정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산업법의 위반이 만연하고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관련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는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차 수산관계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어업허가 퇴출제를 도입하여 법규의 위반회수에 따라 어업의 제한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반의 정도가 극히 심한 자는 어업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때에는

연안 어업인들의 생계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기초법리의 정립

1. 어업권의 본질

수산자원 내지 어업자원에 대한 “권리성”에 관하여 법리와 실무 사이에 적지 아니한 격차가 존재한다. 권리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기 때문에 수산자원을 포함하여 자연자원 일반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法益〕은 법률로 보호받을 경우에 “권리”로 전환된다. 특정한 법익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방식은 특허에만 의존하지 아니한다. 특례법제 내지 규제개혁법제 등에서 원용되는 각종 인가 및 허가의 “의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가와 허가에 의하여서도 권리가 창설될 수 있다. 현행 수산관계법은 “특허”라는 법률용어 대신에 “면허”라는 용어를 구사하며 실무에서는 “면허”에 기하여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免許漁業權〕만을 “어업권”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허가나 신고에 기초하여 어업〔許可漁業·申告漁業〕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그리고 신고어업에서 구사하는 ‘면허’와 ‘허가’ 그리고 ‘신고’라는 개념들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관행상의 용례일 뿐이며 해당 “어업”들에 대한 행정규제의 본질 또는 한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예컨대, 법리상의 ‘특허’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창설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면허”(licence)는 이러한 특허에 해당한다. 실정법상 마을어업 면허는 그 대상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어민들에게 부여된 물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실상은 관습상의 권리를 국가가 접수하고 이를 다시 어민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의 인위적 창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어업자원의 법적성질

수산업법은 사회통념과 달리 어업권을 협의로 정의한다. 즉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조제6호).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수산업법 제15조제3항). 어업권의 대상인 어업자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1) 무주물설

어업 자원은 자연적 재생산성과 산란이나 먹이 섭취를 위한 회유성이라는 생태적 특성, 통제 불능성, 서식 환경적 특성을 가진 천연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무주물(res nullis)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무주물인 어업 자원은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어업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제한 조건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어업 자원을 누구보다 먼저 채취하면 그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도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하나(동법 제252조제2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냥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2조제3항). 무주물이란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며, 누구나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동법 제252조제1항), 포획이나 어획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포획·채취하면 일단 무주물 선점은 성립한다¹³⁾. 이러한 선점은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고 하는 규정과 수산업법 제57조의 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어업 이외의 어업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 동식물은 소유 또는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들은 어업 자원의 어획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는 하지만, 선점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 그리고 어업자가 얼마를 잡더라도 어업 자원을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업 자원을 무주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⁴⁾

12) 崔宗和, “經濟水域時代의 漁業管理制度 改革方向”, 『國際法學會論叢』, 제42권제1호, 1997, 263쪽.

13) 鑛業法에서는 일반인의 선점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금지하고 광업권자에게 독점적 선점권을 인정하고 있다(鑛業法 제2조, 제7조).

14) 山本 忠·李承來譯, “最近 EC 共同漁業政策의 動向”, 漁政研究포럼 제2회 發表論文, 1994, 40面.

이와 같이 무주물은 법률상 선점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은 어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업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 노력이 과잉 투입되면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고갈 문제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어업 자원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업자의 자유 조업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 나라 어업 허가 제도는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제한할 뿐 어업 허가를 취득한 자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원 이용의 범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업 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¹⁵⁾

2) 공유물설

유엔 해양법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엔 총회 의장이었던 파르도(Pardo) 박사가 「해양은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human)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해양과 해양 자원을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공유물설에 의하면 해양의 어업 자원은 누구나 이용권을 갖는 인류 공동의 소유 자원(public property)으로 어업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느 누구도 누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러한 구미의 사고 방식에 비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어업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원 관리형 어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 자원이 어업인 전체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고 방식도 등장하였다.¹⁶⁾

민법상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다수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하고(민법 제262조), 공유물이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¹⁷⁾가 있다. 이 입장에서는 어업 자원이 하나의 인류의 공동 상속 재산이

15) 차철표, 1998 : 61-62

16) 山本 忠, “20海里時代以降の世界の漁業管理の流れ”, 『世界の漁業管理(上)』(東京: 國際漁業研究會, 1994), 48面.

17) 民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가 성립되는 경우는 1) 타인의 물건 속에서 발견된 매장물(동법 제254조),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이 附合 또는 혼합된 동산(동법 제257조, 258조), 3) 건물의 구분 소유에 있어서의 공용 부분(동법 제215조), 공동 상속 재산(동법 제1006조)과 공동 包括受遺遺產(동법 제1078조) 등이 있다.

므로 공유가 성립한다고 본다. 공유물이란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물건¹⁸⁾이기 때문에 그 이용권은 구성원에게 귀속되고, 단체가 그 이용 방법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면서 이용 자체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행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본래부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바다의 생물 자원이 자원 이용 기술의 발달이나 또는 사용자의 증가 및 자원량의 한계로 상호간에 경쟁을 유발하여 급기야 자원 이용의 감소 또는 고갈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공유 자원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그 제한 조치의 하나는 자원을 분배하여 사용자에게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위 공유 자원을 점유(enclosing the commons)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관심있는 사용자들이 서로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¹⁹⁾ 어떤 어업 자원이 공해에 서식하고 있으면 그것은 국제 공동 자원으로 국제 사회 전체의 공동 관리 대상이 되고, 어느 연안국 내에 분포하고 있으면 연안국이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연안국은 자국의 어업자들에게 허가 또는 자원의 분배를 통하여 어업자들로 하여금 개발·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²⁰⁾

어업 자원에 대한 법적 성질을 공동 자원(common resources) 내지는 공동 재산(common property)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여기서 공동이란 공유·합유·총유와 같은 공동 소유의 개념도 아니고, 햇빛이나 공기와 같은 공유의 개념도 아니며, 아무에게나 이용이 개방되는 공공의 개념도 아닌 그야말로 취득과 처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반적인 소유의 개념을 배제한 자원 이용상의 권리와 보존에 관한 책임의 공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²¹⁾도 있다. 이 학설에 의한 어업 자원 관리 방식은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제한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이용 한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 구체적인 어업 자원 관리 방식은 어기 규제, 어장 규제,

18) 公有物이란 행정법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물건”을 말하나, 이 보고서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등에서 의미하는 “공유” 즉 “공공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물건”의 뜻으로 사용한다. 이때의 “공공”(公共)은 보는 관점에 따라 民(people)→野生(wild life)→自然(nature)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民을 공공의 실체로 설정한다.

19) Per M. Wijkman, “Managing the Global Comm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36.3, summer, 1982, p. 512.

20) 차철표, 1998 : 63~64

21) Luc Cuyvers, Ocean Use and Their Regul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4, pp. 40~46.

어구 규제와 같은 간접적 규제 방법과 자원의 과도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총 어획량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²²⁾.

3) 국가소유설

국가 소유설은 어업 자원을 국가가 관할·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업인에게 어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의 허가나 면허를 하는 것이라는 이론으로 동남 아시아 제국에서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다.²³⁾ 어업 자원을 국가 소유로 하는 근거는 첫째,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수산 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1조1항의 규정, 둘째, 어족 자원과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획업은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제2조의 규정, 셋째 연안국으로 하여금 그 수역내에서 생물 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유엔 해양법협약 제61조 등이다. 물론 수중에 서식하는 생물 자원은 인위적인 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상 국가의 관할권이란 경제 수역 내의 모든 범위까지 미치는 것을 인정하고 일부 어종을 제외한 어업 자원에 대하여 연안국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²⁴⁾

이 설에 의하면 헌법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누구든지 어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어업을 자유로이 방임하면 궁극적으로 자원 고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업 허가 제도로서 그 이용을 제한한다. 그리고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허가는 그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경찰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그 허가의 효과는 어업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²⁵⁾. 그러나 어업의 행위는 수면의 이용 행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천연 자원을 이용 개발해서 인류 생활상 수요되는 재화를 생산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이에 관해서 산업 정책상, 공익상 또는 자원의 번식 보호상 필요한 간섭을 한

22) 山本 忠, 前掲論文, 48面.

23) 上掲論文, 48面.

24) 차철표, 1998 : 64

25) 大法院判例 1963. 8.22. 63누97.

다는 것이다. 이 학설에 의한 어업 자원 관리 방식은 자원이 과도 어획되지 않도록 조업선의 수를 규제하는 방식과, 어업할 권리를 어업인 단체 또는 어촌에 부여하여 특정 어업인만이 자원을 이용하도록 허가하는 방식 등이 있다.²⁶⁾

4) 소 결

무주물설에 의하면 어업 자원은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어업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제한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자연 자원을 아무나 개발토록 허용하는 것은 자원이 국민 전체의 공공 복리를 위하여 개발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²⁷⁾

모든 재산 특히 토지 기타 천연 자원, 공장 등의 생산 시설을 개인의 소유로 하고, 국법으로써 이것을 보호하며,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 처분을 인정하는 사유 재산 제도를 우리 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33조). 그렇지만 천연자원이나 독점적인 기업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당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현저하여 특수한 것에 관하여 국유 내지는 국가 관리로 하거나 또는 적당한 제한을 가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업 자원을 국가 관리 자원으로 하며, 국가는 어업 자원이 위태롭지 않게 보존 관리할 책무를 가지고 어업 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그 이용자를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어업 자원 관리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업선 수 규제 방식과 특정 어업인만이 자원을 이용하도록 허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어획량 규제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²⁸⁾

공유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공유설에 의하면, 국가가 어업 자원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취득과 처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반적인 소유의 개념을 배제한 자원 이용상의 권리와 보존에 관한 책임의 공동성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권력으로 자원 이용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에 대한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어 해양 이용으로부터의 편익이 연안 국가에게 귀속되고 있는데도

26) 山本 忠, 前掲論文, 48面.

27) 차철표, 1998 : 65

28) 차철표, 1998 : 66

그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 자원의 소유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엄격한 의미의 공유물은 각 공유자들이 고유한 물적 지배권 즉 지분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지분 처분의 자유), 또 언제라도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 소유 관계를 폐지할 수 있다(분할 청구의 자유).²⁹⁾ 이 경우에 지금의 허가제를 시행할 명분이 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유에 대한 개념의 혼란에서 비롯한다.

유럽에서는 적어도 1609년이후 문서와 법에 의한 제도화가 두드러진다. 유럽세계에서는 적어도 1609년에 Grotius에 의하여 해양자유 원칙(Mare Liberum)이 선언된 이후 바다의 자원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1635년에는 Selden이 고대 로마에 수역(水域)이 사유화되어 있었던 예를 인용하여 해양자유 원칙은 자원고갈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Grotius의 학설은 그 후 유럽의 주류를 형성하였다.³⁰⁾

일본 각지에는 적어도 근세 이후 관습에 따른 어업제도가 존속해 왔다(三野瓶, 1981). 현재, 어업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동어업권 어업의 형태도 메이지시대와 더욱 오래된 근세·중세의 어장 이용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Ruddle and Akimichi, 1989). 전국에 산재하는 방대한 양의 포방문서(浦方文書)와 어장 이용을 둘러싼 분쟁기록은 어업권을 둘러싼 긴 역사가 일본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안해안은 마을 소유, 먼바다는 공동입어'가 18세기 법령에 있는 것처럼 바다는 마을 소유의 연안해역과 공동입어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이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 거기에다 문서와 법으로 정비되어 제도화가 두드러진다.³¹⁾

3. 법사회학적·법사학적 고찰

1) 사회통념상의 어업권

허가의 대상이 되는 어로활동이라고 하여 권리성이 부정될 수 없다.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주된 차이는 어로방법·어종 및 장소성(placity)이다. 어로

29) 金容漢, 『物權法論』(서울: 博英社, 1990), 316쪽.

30) 秋道智彌, 『海洋人類學』: p.260

31) 秋道智彌, 『前掲書』: p.259

방법의 차이는 허가의 권리성을 부인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환경규제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종이 다르다고 하여 권리의 존부에 차등을 두기는 어렵다. 장소성에 따라 법률상 보호법익이 있다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장소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면허어업에서 인정되는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호받을 법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면허와 허가를 구분짓는 결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허가의 대상이라고 하여 권리성이 부정될 수도 없다. 또한 실정법은 면허·인가·허가·신고 등의 법률용어를 그 본질개념에 따라 정치하게 구분하여 쓰지 아니한다. 어업권의 범주에 어업면허만 포함시키고 어업허가 내지 어업신고에 대하여서는 권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은 실제 어민들이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컨대, “면허어업권”과 “허가어업권”은 물권성의 여부 즉 권리의 강약·광협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특정 어업권에 대한 물권성의 존부 및 민법상 토지 관련 규정들의 준용은 입법정책적인 선택일 뿐 해당 권리의 연혁이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변화된 실체[사회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업에 관한 자유와 권리의 근본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2) 법사학적 고찰

바다의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소유(ownership)에 관하여서는, ①자원 자체, ②어구·어법, ③바다[漁場]라는 3가지 요인으로 구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秋道, 1994e). 자원 자체의 소유에 대한 논의는 파푸아뉴기니 포남 섬에서 조사한 캐리어Carrier에 의해 가다랭이·참다랑어, 송어, 정어리 등이 특정 쿠란에 의해 소유되는 예가 제시되어 있다(Carrier, 1980, 1987). 인간에 의해 포획되기 전부터 자유유영하는 특정자원이 소유된다고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예가 거의 없다. 캐리어(Carrier)가 지적하는 예는 현 시점에서는 어획 후의 우선적인 분배관행으로 생각해 두기로 한다. 어구·어법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에 의한 경우에서 가족, 특정의 소집단과 쿠란에 의한 경우, 왕과 특정계급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가 있다(Sudo, 1984).

어장의 소유는 육상의 토지제도land tenure와 대비시켜 sea tenure이라는 범주로서 다루어졌다(Alexander 1976 ; Cordell, 1977, 1989; Crocombe,

1987). 해면의 소유 형태에는 뒤에 언급하는 하나의 사회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연구상, 가장 중요한 테마로 되어 있다(河野, 1962; 西村, 1979; Polunin, 1985). 그리고 권리상의 소유de jure와 사실상의 소유de facto를 구별하는 논의(Carrier, 1980)와 사유, 公有 내지는 共有, 그리고 국유라는 구별에 관한 논의(McCay and Acheson, 1987; Ostrom, 1990)가 이루어져 왔다.³²⁾

전근대 사회에서는, 토지·산림·원야·하천 등에 대한 각각의 「물(物)」의 성질·효용에 따라, 또 각각의 주체에 따라, 한정된 다른 내용의 권리가 성립되었으며(예컨대, 경지에 대해서는, 甲은 경작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지대 지급 의무를 지니며, 乙은 경작자로부터 지대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그리고 이들의 권리는 말하자면 병렬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소유」로 불리고 있다(예컨대, 지대징수권자는 상급소유권 'Obereigentum' 혹은 직접소유권 'dominium directum'을 지니고, 지대를 지불하는 경작권자는 하급소유권 'Untereigentum' 혹은 이용적 소유권 'dominium utile'을 가진다는 등).³³⁾ 따라서, 하나의 물(物) 위에 중첩하여 몇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것은 현대의 「사적 소유권」제도 하에 있어서는 하나의 물건상에서는 전포괄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단 하나의 「소유권」밖에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특색적이다.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의 특질은 그 존재나 내용이 관념적·이론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관습에 기초한 바닷가나 갯바위 또는 갯벌을 둘러싼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서는 근대법적 관념이 그대로 통용되기 어려우며 실정법상의 추상적 선언과 관계없이 실제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³⁴⁾ 소유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래적인 의식의 사회적 배경 내지 기반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관념성이 두드러지지 아니하였다. 중세에서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소유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권리자가 물건에 대해

32) 秋道智彌, 前掲書 : pp.273~274

33)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岩波新書 A43 : 1967·1990), p.64

34) 韓國의 社會構成體 論爭에 관하여서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 한국사회는 근대 시민사회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중세 封建性과 現代性이 공존한다. 採取 經濟로 표상되는 어촌사회는 이러한 양면성이 특히 현저한 곳이다. 이 글에서는, 어패류와 해초류의 生産·利用·勞動 關係에 관한 한, 한국의 어촌사회가 前近代社會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현실에 어떠한 지배행위를 하고 있는가(혹은, 하고 있었는가?)와 관련지어 결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축이라든가 곡물 등 주변의 동산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동산에 대한 소유는 소유자가 동산을 현실에서 지배하고 있는 한(즉,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소유자가 현실지배를 잃은 경우에는 한정된 조건하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밖에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³⁵⁾

근대법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존재는 소유권의 내용인 물의 지배행위라는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승인된다. 그래서 적어도 소유권의 존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항상 일체의 지배행위를 포함하는 전포괄적·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근대법에 있어서는 소유권이라는 법률상의 「존재할 만한 상황」과 「존재하는 상황」(사실상의 지배행위)은 완전하게 분리되고 과거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배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권리자는 관념적·논리적으로 판단되는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의 지배행위를 보호하는 - 예컨대, 제3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물건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한다 - 것이 가능(그것이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다) 하며, 여기에서는 「당위」와 「존재」의 분리[이율배반]라는 원리가 고도로 관철되고 있다.³⁶⁾ 즉 근대법의 소유권은 중세법적 관념과 다르다. 그러나 한국 어촌사회의 소유권은 중세법적 관념에 더 가깝다.³⁷⁾

인도네시아 동부에는 다양한 관습과 이용의 관행이 발달해 있다. 그 중에서 바다의 이용에 관한 관습은 “사시”(Sasi)라고 부른다(Cooley, 1962). 사시는 본래 ‘목적하다’는 의미로 연안의 자원과 육상의 자원 이용을 공동체 전체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Bailey and Zeuner, 1992). 사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연안자원의 해삼, 조개, 야광패 등의 저서성 자원과 전갱이와 능성어 등의 어류이다. 한편, 육상의 자원에 대해서도 사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그 중에는 코코야자, 아몬드, 레몬 등의 수목과 바다제비둥지, 극락조가 서식하는 수목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저서성 자원뿐만 아니고 어류와 육상의 수목, 조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자원관리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저서성 자원뿐만 아니고 어류와 육상

35) 川島武宜, 前掲書 : p.67

36) 川島武宜, 前掲書 : pp.69~70

37)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한국법제연구원:1998), 33~34쪽

의 수목, 조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자원관리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다. 사시의 특징은 이용 규제 대상이 되는 자원의 종류와 그 규제방법과 시기 등이 촌락별로 독립해서 정해진다는 점이다. 즉 사시는 마을별로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시의 관행이 보이는 것은 대체로 인도네시아 동부 일원의 몰루카 제도와 이리안·자야 일부이고 사시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종류가 마을별 혹은 지역별로 다르고 그 운용방법도 다양하다.³⁸⁾

3) 자연상태의 수산자원의 법적성질 : 공공용물

자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개념과 법적 개념이 때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소유의 법적 형식이 다의적이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소유와 이용을 명료하게 개념짓기가 어렵다. 자연자원을 국가소유라고 규정한다면, 국가는 국가 성립과 동시에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다른 주체들의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다는 법적 선언이 필요한데 실제 이러한 선언은 그 실례를 찾기가 어렵다. 수산자원의 국가소유설은 1987년의 헌법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1987년의 헌법(제120조제1항)은 수산자원에 대하여 국가가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특허할 수 있다”는 수권조항이 바로 국가소유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천이성이 있어 특징이 어려운 자연자원 내지 수산자원은 이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다. 자연자원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채집·채취된 자연자원은 물론 정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집·채취 이전의 자연자원을 민법적 개념에 입각하여 좁은 의미의 공유물로 파악하거나 이를 비판함은 부적절하다. 자연자원을 소유의 관념으로 접근함은 근대 민법의 사고에는 어울리나 자연자원은 민법의 범주를 넘는다.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특허는 국가소유권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관리권의 표현이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로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1987년의 헌법 제120조제2항, 참조).

한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복리”(헌법 제23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공공필요”(헌법 제23조제3항)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공공”(公共)이라

38) 秋道智彌, 海洋人類學 : p.266~267

함은 집합명사로서의 “국민”일반을 지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은 배타적 지배의 객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국유로 파악하거나 민법 또는 행정법상의 공유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수산자원은 경제학적으로는 공유재(common goods)에 해당하지만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공유와 민법·행정법에서 의미하는 공유는 다른 개념이다. 채집·채취 이전의 수산자원은 -“공유물”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유의 객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용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외국법제동향

제 1 절 영국법제

1. 수산정책의 개관³⁹⁾

1) EU어업정책(CFP)

유럽은 40여 어종으로 구성된 180가지 이상의 어류를 규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산업 체계중의 하나에 속한다. 유럽권의 어류들은 대부분 각국의 영토 경계와 관계 없이 대규모로 회유한다. 영국은 130가지 어류들에 걸쳐 16개 이상의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공동체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과 같은 국제적 체계가 없었더라면 영국은 어업인들에게나 또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어류들에게도 불리한 혼란스럽고 성가신 양자협상 체제를 가졌어야 하였을 것이다.

관련 어류들의 할당방법을 합의하고 적시에 집행가능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유럽공동체어업정책(CFP)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이다. 예컨대, 공동체정책(CFP)이 발효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는 영국은 북해의 청어(herring)를 심각하게 고갈시키는 어업을 중단하였다. 이 보호를 합의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 마침내 청어의 자원량은 회복되었다. 1996년에 청어자원은 다시 애로를 겪는 듯이 보였지만 이 번에는 공동체 정책에 기초하여 청어자원은 수개월 동안 보호를 받았고 현재는 풍부한 어류자원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어업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어류자원을 보존하거나 건강한 수산업을 지속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였다. 공동체어업정책에 대한 2002년의 평가는 대단히 긴요하며 개혁합의는 다음과 같은 영국의 협상 목표들을 강력하게 반영하였다.

- *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을 관통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협약(enforcement arrangements)을 개발하고 있다.
- * 선박건조에 사용될 다른 나라들의 보조금은 2004년에 종료될 것이다.

39) Interview(Friday 25 February 2005) with Sean Ryan & Ed Dyson, Fisheries Directorate, DEFRA by Dr. Chun Jae-kyong and Briefing for Interview(Thursday 18 March 2004) with "World Fishing" Magazine by DEFRA

- * 영국은 (예컨대, 민감한 어류서식처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보전조치들을 보다 훌륭하게 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압박 때문에 유럽연합은 “상어지느러미채취”(shark finning)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영국 해협(the Channel)에서 우발적으로 어업용 그물에 걸리는 돌고래(dolphin)들을 잡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였다.
- * 수산과학은 산업계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고 해양생태계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 요소들을 고려할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 * 영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지역자문회의(Regional Advisory Council : RAC)들을 창설하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자문회의들은 어업인, 과학자 그리고 어업자들과 그 이용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 * 영국은 화폐가치를 향상시키고 개발과 환경 목표들의 정합성(coherence)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어업기구(Regional Fisheries Organisation)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국 협약(third country agreement)들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 수산업 / 공동체들의 현황

한국의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포함하는 영국의 환경·식품 및 지역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DEFRA)는 2004년 3월 25일자 수상의 전략기획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⁴⁰⁾ 전략기획단은 수산업과 공동체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1년을 소모하였다. 전략기획단의 최종결론은 2003년 10월에 전략기획단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확정된 결론을 담고 있다. 잠정 결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잘 관리된 수산업은 6억4천만 파운드의 값어치가 있다.
- * 백어(whitefish) 부문에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약간의 감축이 필요하다.
- * 취약한 어업에 대한 공동체의 의존도는 정책적 개입으로 감소될 수 있지만 어획부문의 고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40)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Executive Summary, 『Net Benefits : A Sustainable and Profitable Future for UK Fishing』 (Cabinet Office : March 2004), pp.7~15

- * 영국의 어선들은 정책개혁, 권리배분의 투명성 및 일부 어선들의 개조를 통하여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 * 영국은 EU어업정책(CFP)의 개혁에 대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EU어업정책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 어업관리는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해양 환경체계(marine environment framework)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3) 대응전략

전략기획단의 보고서는 각종 어업 관련 부서들에 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EU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위하여 그리고 어업과 관련 부문들에 의한 계획을 위하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 DEFRA는 이해관계자들, 다른 정부 부서들 및 관련 행정당국들과 협력하여 이행계획을 개발하도록 위임받았다. DEFRA는 보고서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단을 구성하였다. DEFRA는 달성 가능한 공동의 의사가 무엇인가를 결정짓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

4) 총허용어획량(TAC)의 할당

규제 대상자원에 대하여 어로를 통제하고 EU에서의 어로 기회를 할당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부터의 과학적 자문을 감안하고 예정된 조치들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자원단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es)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갈된 자원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계획을 더 훌륭하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어업정책(CFP)은 복합적 연간접근법을 채택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복합적 접근법은 대구(cod)회복 계획을 토대로 개발되고 있다. 회복계획(recovery plan)⁴¹⁾ 어획노력(fishing effort)에 대한 규제와 복합적 연간 총허용어획량(multi-annual TACs)의 설정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총허용어획량은 회원국가들 상호간에 (대부분 1983년에 설정된) 일정비율을 기초로 하여 공유된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어선들은 허용대상 자원에 관하여

41) 자회복에 관한 EU규정은, Council Regulation(EC) No 2371/2002 of 20 December 2002,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under the Common Fisheries Policy, Article 5(Recovery Plans), 참조

자국의 과거 어획실적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비율을 보장받는다.

영국의 할당량(UK quota allocations)은 19개의 생산자(producer) 조직을 포함하는 23개 어업인 집단 사이에 공유된다. 대상 자원당 할당량의 배정은 각 집단의 구성원들의 어선들이 그 면허에 부착한 고정할당량(fixed quota allocation:FQA) 단위들(units)의 숫자들을 기초로 한다.

생산자 조직들은 매년 그들의 할당량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10m 미만의 어선들은 어업 행정당국들에 의하여 직접 관리된다. 몇몇 포획 사례들에서는 (예컨대 북해와 영국해협에서 대구를 잡는 선박들과 같이) 10m 미만의 어선들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할당량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상한(limits)이 설정된다.

10m 미만 어선들의 상당수는 영국의 국가 할당량이 줄어들어 소규모 어선들의 몫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가할당량 감소와 관계없이 그들의 개시할당(opening allocation)에서 최저지분(minimum share)을 보장받는다. 어업인들은 국내적 및 국제적 할당량교환(swaps)을 통하여 추가할당(additional quota)을 받을 수 있다.

5) 원양어업

2002년 12월에 관할 위원회는 총허용어획량과 할당 및 원양(deep sea) 어종들에 관한 어획노력의 상한(effort limitation)을 설정하는 합의각서(presidency compromise paper)를 채택하였다. 이 각서는 2003년과 2004년의 할당과 노력량도 설정하였다.

영국은 이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합의안이 대상 어종들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해당 어업과 노력량의 상한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과학적 조연을 따라 노력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영국은 당해 총허용어획량 및 할당에 반대하였다. 과학적 조연은 해당 노력량을 현저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EU는 국제지역어업기구들에 대하여 국제 수면들에서 같은 취지의 제약들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004년 5월, 런던에서 이러한 쟁점(NEAFC framework)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종래 과도하게 이용된 어종들에 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6) 양식업

수산양식(aquaculture)에 관한 정부 정책은, 양식이 축양(farmed) 및 야생 자원들의 건강과 상생(welfare)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활로(viable)와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들의 개발을 장려한다. DEFRA는 어류와 패류의 건강과 양식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주요 양식(fish farming) 어종으로서는 연어와 무지개 송어가 있다. 대구와 가자미(turbot) 및 농어(bass)와 같은 일부 어종들에 대하여서도 양식의 다각화가 모색되고 있다. 연어들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의 서쪽 해안과 외곽의 섬들에서 생산된다. 패류 부문에서는 홍합(mussel)이 주요 생산물이고 굴(oyster)과 대합조개(clam)가 약간 양식된다.

양식장(farm gate)에서 바로 출하되거나 제2차 가공을 거쳐 출하되는 수산 양식물의 가격(first sale value)은 5억 파운드를 초과한다. 이로 인하여 영국은 수산 양식자 연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류(finfish)와 패류(shellfish) 부문은 영국의 산업전략 전반에 걸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양식과 관련하여 오염을 퇴치하고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양한 창구들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다. 해양보호 보고서인 “우리 바다 지키기”(Safe-guarding Our Seas), 최근에 출범한 “스코틀랜드 수산양식을 위한 전략체계” 그리고 “유럽 수산양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U전략” 등이 같은 예에 해당한다.

DEFRA는 어패류에 관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뒷받침하고 양식 어종과 야생 어종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양식 어류가 개방된 수면(open water)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추구한다.

2. 법제의 구조 및 변화

1) 어업자원의 이용과 전통적 권리 및 허가증 휴대의무

1983년의 영국어선법(the British Fishing Boats Act 1983)은 영국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업자원의 이용이 어선원들의 국적(nationality)에

관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어선들에 한정됨을 확정하는 규정을 두었다.⁴²⁾ 1771년의 청어업법(the White Herring Fisheries Act 1771)은 1868년의 해양어업법(the Sea Fisheries Act 1868 제71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청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구나 부두의 회비(dues)이외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항구나 부두 또는 바닷가(foreshores)에서 그들의 어로를 행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여전히 발효하고 있다.⁴³⁾

1868년의 해양어업법은 한 때 해양어업을 규율하는 법률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그 규정들의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1868년법의 핵심규정은 동법 제26조[1995년의 해상법(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314조 제2항 별표13의 제2호에 의하여 대체]에 담겨져 있다. 이는 등록된 어선으로 하여금 (영국의 영해 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휴대하고 또 영국 영해 내에 위치하는 어선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문서들을 휴대할 것을 요구한다. 어선의 등록에 관한 1868년법의 규정들은 1995년의 해상법의 규정들[Halsbury 제39권 운송 및 항행 제2편]에 의하여 대체되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⁴⁴⁾

2) 어업공무원의 권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해양어업에 관한 규정들은 1883년의 해양어업법 및 1891년의 어업법[the Fisheries Act 1891, Pt I (ss 1-4,6)]에 담겨 있다. 1883년법(제2조, 부칙 제1조)은 영해(territorial waters) 바깥의 북해(North Sea)에서의 어업에 대한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제정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부여하였다. 같은 법은 또한 해양어로를 규율하는 협약 규정들에 대한 위반을 범죄로 처벌하고(제4조 및 제5조), 영국 어선들이 어디에 있든지 선량한 질서(good order)를 유지하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제3조), 영국 및 외국 해양어업 공무원들의 요건과 영국 해양어업

42)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48

43) Ibid., p.46

44)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2002 Reissue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530

공무원들의 권한을 열거하였다(제11조 및 제12조). 1883년법의 규정들은 1968년의 해양어업법(제22조제6항)에 의하여 대부분 대체되었다.⁴⁵⁾ 그러나 폐지된 규정들의 대부분은 폐지효력이 발휘되지 못하였고 1883년법의 잔여규정들은 1998년의 제정법(폐지)법[the SL(R) 1998]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폐기되었다.⁴⁶⁾

3) 해양어업구역과 지방어업조례 및 해양환경보전

해양어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정법들 중의 하나는 1966년의 해양어업규제제법(the Fisheries Regulation Act 1966)이다. 이 법은 1888년에서 1930년 사이의 해양어업규제법들과 해양어업에 관한 다른 제정법들을 통합시켰다. 이 법에 발효된 명령들에 기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연안 또는 근해의 해양어업구역(sea fishery districts)들이 창설되었고 이 구역들 안에서 수행되는 해양어업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지방어업위원회(local fishery committee)들이 설치되었다. 지방어업위원회들은 1966년법(제5조)에 기술된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하여 관할 구역들 안에서 준수되어야 할 조례(byelaw)들을 만들 수 있었다. 지방어업위원회는 조례를 집행할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는 어업공무원들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권한이 영국 어업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양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들을 집행할 제정법상의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제10조제1항).⁴⁷⁾ 1992년의 해양어업(야생보전)법[the Sea Fisheries (Wildlife Conservation) Act 1992]은 해당 부처의 장관들과 1966년의 법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어업위원회(또는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다른 기구)로 하여금 해양어업법상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해양의 동물상과 식물상(flora and fauna)의 보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⁴⁸⁾

45) 英國의 해양어업 公務員들과 그들의 권한에 관하여서는 특히 1951년의 해양수산업법(the Sea Fish Industry Act 1951) 제25조, 1962년의 해양수산업법(the Sea Fish Industry Act 1962) 제18조 및 1967년의 해양어류보전법(the Sea Fish(Conservation)Act 1967) 제15조, 참조.

46)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2002 Reissue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530

47)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47

48)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2002 Reissue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531

4) 수산자원보호법과 어패류법 및 어류허가심판소

1967년에는 해양어업에 관한 제정법들이 두 차례에 걸쳐 통합되었다. 1967년의 해양어업(패류)법[the Sea Fisheries(Shellfish) Act 1967]은 1868년까지 소급하여 패류어업 및 패류(shellfish)에 관한 제정법들을 통합하였다. 1967년의 해양어류(보전)법[the Sea Fish (Conservation) Act 1967]은 1933년까지 소급하여 해양어류의 상업적 이용과 조업 및 운반을 규율하고 해양자원(marine resources)의 증대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승인하는 제정법들을 통합시켰다. 특히 해양어류(보전)법은 어류의 체장, 그물 및 기타 어구의 규제, 어선의 면허, 국제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의 제한 및 어류의 운반에 관한 규제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특히 1968년의 해양어업법(the Sea Fisheries Act 1968)은 해양어로의 규율에 관한 중요한 규정(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4조)들을 담고 있다.⁴⁹⁾ 동법에 대한 1992년의 해양어류(보전)법[the Sea Fish (Conservation) Act 1992]에 의한 개정 조항들은 선박이 바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허가조건(licence condition)에 대한 불복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어류허가심판소(the Sea Fish Licence Tribunal)의 설치와 1967년의 법 제4조 및 제4A조에 기한 허가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담고 있다.⁵⁰⁾

5) 어로한계법 및 처벌방식의 변경

1976년의 어로한계법(the Fishery Limits Act 1976)은 영국의 새로운 어로한계를 규정한다. 새로운 어로한계는 영국본토(British), 샤넬아일랜드(Channel Islands) 및 아일오브맨(Isle of Man)의 영해기선(territorial sea baseline)들로부터 200해리까지 또는 각령(Order in Council)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는 다른 선까지 나아간다. 어로한계법은 또 외국어선들이 특정한 어류를 잡기 위하여 조업할 수 있는 영국(British) 어로한계 내에 속하는 구역들을 명령으로 지정함으로써 자국내조업(British fisheries)에 대

49)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47

50)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2002 Reissue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531

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외국 어선은 이러한 명령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당해 구역들에서 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로한계법은 또한 1966년의 해양어업규제법(the Fisheries Regulation Act 1966), 1967년의 해양어류(보전)법(the Sea Fish(Conservation) Act 1967) 및 1968년의 해양어업법(the Sea Fisheries Act 1968)에 기한 몇몇 범죄들에 대한 벌칙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벌금들의 상한은 약식 유죄결정(summary conviction)에 기하여 결정되며 일부 범죄들은 정식기소 재판(trial on indictment)에 붙여져 상한이 없는 벌금(unlimited fine)에 처하여질 수도 있다. 어로한계법은 북아일랜드 인근의 본토(British)어로한계와 아일랜드공화국의 어로한계 사이의 현재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어로한계와 관련하여 아일오브맨(Isle of Man) 및 샤넬아일랜드(Channel Islands)에 대하여 각령으로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⁵¹⁾

6) 수산청설치 · 어업진흥 · 수산물운송 · 어로조건

1981년의 어업법(the Fisheries Act 1981)은 송어청(the White Fish Authority) 및 청어산업위원회(the Herring Industry Board)를 폐지하고 이를 수산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으로 알려진 새로운 기구로 대체하였다. 1981년법은 또 수산청의 조직과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한다. 또 1981년법은 교부금(grants)이나 대부금(loans)의 방식에 의하여 수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권한들을 통합 · 확장하는 한편 영국 해양어업공무원들이 어류의 운송출하(trans-shipment)의 금지 또는 허가에 관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또 같은 법은 해양어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규약을 위반하여 영국 어로한계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처벌한다. 나아가 이 법은 각료들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적 기타의 지원을 행하고 어민들에 대한 특정한 조업규제를 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패류의 증식 또는 양식을 위한 구조물들에 대하여 조개층(shellfish beds)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한다.⁵²⁾

51)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47

52) Ibid., p.48

2000년의 해양어업교부금(부담금)법(the Sea Fishing Grants(Charges) Act 2000)은, 1981년법에 의하여 해양어업을 목적으로 한 특정한 교부금 체계(grant schemes)의 일환으로, 수산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에 의하여 부과되는 그리고 (1981년에 폐지되었으나 그 책무가 수산청으로 이관된) 종전의 청어산업위원회(the Herring Industry Board)에 의하여 부과되던 특정 부담금(charges)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한편 1983년의 영국어선법(the British Fishing Boats Act 1983)은 영국어선이 활용할 수 있는 어업자원의 이용이 어선원의 국적(nationality)에 관한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영국어선들에 한정됨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두었다.⁵³⁾

7) 연어 및 양식어류 질병대책

1891년의 어업법(the Fisheries Act 1891)의 규정(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6조)의 주된 목적은 북해의 어업에 관한 영국과 벨기에 사이의 선언을 확인하고 발효시키는 것이다. 1891년법의 제2장 및 제3장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제4장의 실제적 규정은 제13조인데, 이 조는 연어와 담수(freshwater) 어업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한다. 1937년의 어병법(the Diseases of Fish Act 1937)은 연어 및 담수어류들에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법은 연어류의 활어의 수입을 금지하고 살아 있는 담수어의 수입과 담수어류의 살아 있는 알 및 연어류 물고기의 알에 대하여 제약을 가한다. 1983년의 어병법에 의하여 1937년의 어병법은 바다양식어류와 장어(eel)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1937년법에 의하여 (잉글랜드에 관하여) 농어업식량부장관, (웨일즈에 관하여) 국무부장관 그리고 전국 하천청에게는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구역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고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구역내의 수면의 점유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들이 부과된다.⁵⁴⁾

53)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2002 Reissue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532

54)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48

8) 수산자원보호

1975년의 연어및담수어업법(the Salmon and Freshwater Fisheries Act 1975)은 1923년, 1929년, 1935년, 1965년 및 1972년의 연어및담수어업법들을 통합하였다. 1975년법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제 1조 내지 제5조)은 어류채포와 파괴의 금지를 규율한다. 제 II 장(제6조 내지 제18조)은 어류의 통행에 대한 방해를 규율한다. 제 III 장(제19조 내지 제24조)은 조업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어류의 매매와 수출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금어기(close season)를 규율한다. 제 IV 장(제25조 내지 제27조, 부칙 제 2조)는 어로면허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 V 장(제28조 내지 제37조, 부칙 제 3조 및 제4조)은 명령과 조례 그리고 물관리인 등의 권한에 의하여 어업을 규율하고 범죄의 소추와 처벌 및 법적 절차를 규율한다. 제 VI 장(제38조 내지 제 43조)은 Rivers Tweed, Esk and Severn 그리고 Solway Firth에 관한 지방규정(local provision)들과 몇 개의 보칙들을 담고 있다.⁵⁵⁾

9) 내수면 어장관리

1983년의 어병법(the Diseases of Fish Act)은 (잉글랜드와 그에 인접한 해수면에 관하여) 농어업식량부장관에게 그리고 (웨일즈와 그에 인접한 해수면에 관하여) 웨일즈 국무부장관에게 내수면어장(inland fish farm)을 등록하고 어장과 어류와 알 그리고 물고기 먹이에 관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1983년법은 상기 장관들에 의하여 수권을 받은 사람에게 구내에 들어가고 기록의 사본을 수집하며 당해 규정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나아가 같은 법은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비밀을 안 지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⁵⁶⁾

10) 연어조업과 활어의 규제

1986년의 연어법(대부분 스코트랜드에 적용)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관하여) 농업어업식량부장관에게 그리고 (스코트랜드에 관하여) 국무부장관에게

55) Ibid., p.48

56) Ibid., p.48

면허에 기하지 아니하고 연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연어를 다루는 사람을 처벌한다. 1986년법은 지방어업 위원회에 1966년의 해양어업규제법에 기하여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한 연어망 조업의 특성과 범위를 심사한다.⁵⁷⁾ 한편, 1980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활어수입법 [the Import of Live Fish(England and Wales) Act 1980]은 (잉글랜드에 관하여) 농어업식량부 장관에게 그리고 (웨일즈에 관하여) 웨일즈 국무부장관에게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어느 곳에서 외래 어류나 패류 또는 그 알의 수입, 보관 또는 방류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⁵⁸⁾

제 2 절 일본의 정책과 법제동향

1. 수산기본정책의 대강

1) 기본적인 구상

일본의 수산업은 중요한 단백질식품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스스로의 공급만으로 식량자급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200해리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주변수역에 있어 수산자원의 악화와 해외어장의 규제강화 등 어획량의 감소는 계속되고 수산물의 자급률도 저하되었다. 또한 어업경영의 악화와 어업을 담당하는 일손(이하 '담당자':역자)의 감소·고령화의 진행으로 어업지역의 활력도 떨어졌다.

이제까지의 수산행정은 1963년에 제정된 연안어업 등 진흥법에서 명시된 방향에 따라 어업의 근대화·생산성의 향상 등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온 바이지만, 이후 세계적으로 수산물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비롯하여 21세기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바라는 국민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수산정책을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하여 ① 200해리체제하에서 일본 주변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관리와 지속적 이용을 기본으로 새로운 틀(구조)을 구축하고, ② 어업뿐만 아니라 수산가공업,

57) Ibid., p.49

58) Ibid., p.48

유통산업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한 수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며, ③ 수산물의 안정공급과 어업지역의 활성화 등 국민적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구축하여, 장차 지향할 수산업·어업지역의 모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새로운 수산기본정책의 이념과 기본적인 시책의 방향은 기존의 수산정책의 구체적인 개혁의 전망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실태와 과제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제공을 하고,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 하에 기본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정책프로그램에 따라 실현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책개혁을 구체화한다. 이때 재정조치를 효율적·중점적으로 운용하고, 정기적인 정책효과의 검증·검토를 통하여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2) 수산자원의 적정관리와 지속적 이용을 기본으로 하는 식료의 안정공급

(1) 일본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의 유지·증대

수산자원은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공급의 기반이다. 특히 200해리체제 하에서 일본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을 적정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 과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은 수산식품의 자급률 향상, 나아가 일본의 식품안전보장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주변수역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일·한, 일·중 사이의 어업질서를 조속히 확립·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원양어장의 유지·개발과 적정한 수입의 확보 등

일본 주변수역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보완하고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한 수산물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원양어업의 개발 등으로 적정한 수입을 확보한다.

3) 어업관리 제도의 재검토

어업법 등 어업관리제도는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경영의 악화, 어업취업자의 감소·어업종사자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① 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 이

용체제의 확립, ② 어업경영의 효율화·안정화와 어업 담당자 확보, ③ 지역성의 반영[지방분권의 요청]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1) 어업권 관리의 재검토

어업권제도는 자원관리의 강화, 어업경영의 효율화, 지방분권, 어협[수협]의 광역합병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① 공동어업권에 관한 자원관리의 노력 강화, ② 양식업에 관한 특정구획어업권의 대상어업의 법정제 및 어협[수협] 자영 제한의 완화, ③ 정치어업권 및 구획어업권의 면허우선순위 및 어업권 존속기간의 연장, ④ 어협[수협]의 광역합병의 진전에 대응한 어업권관리구조를 재검토한다.

(2) 어업허가 제도의 재검토

어업허가제도는 자원관리의 강화 어업경영의 효율화 등의 요청을 고려하면서 ① 지정어업과 승인어업의 통합 등의 허가제도, ② 자원회복을 위한 장기휴어에 대응한 허가제도상의 조치, ③ 허가승계에 관한 제한완화, ④ 어업조업에 관한 규제, 양륙항의 제한, 선박의 톤수 계층구분, 선단구성 등의 규제에 대한 자원관리나 어업조정에 유의하면서 점검·완화, ⑤ 지사허가어업에 관한 자원관리 촉진 및 허가의 정수관리의 개선, ⑥ Flagging협정 등을 고려한 공해어업의 허가제도 등을 재검토한다.

(3) 내수면의 어장관리·증식사업의 방향에 재검토

내수면어협[수협]의 조합원의 감소·고령화의 진행, 외래어의 번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외래어대책과 질병대책을 고려한 증식사업, ② 내수면어협에 의한 관리를 보완하는 어장관리의 구조, ③ 내수면어협의 증식사업 등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을 재검토한다.

(4) 어선관리제도의 재검토

어선관리에 관한 절차를 신속화하고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제도 등을 고려하면서 ① 어선의 건조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확인제로 변경, ② 어업의 관리구분과 어선확인 권한 일치, ③ 어선의 등록표 등 검인기간의 연장, ④ 어선의 등록표 등의 검인을 위한 민간기관의 활용 등을 재검토한다.

(5) 어업단속의 강화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어선이나 밀어(密漁)의 단속을 강화한다. 관계성청과의 연계와 역할분담 하에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외국어선 등의 단속체제를 정비하고, 어업관리제도를 재검토해서 벌칙 강화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4) 어업담당자의 확보·육성

(1) 의욕과 능력 있는 어업담당자의 확보·육성

어업담당자의 감소·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변수역 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 이용,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계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산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의욕과 능력 있는 담당자의 명확화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신규취업자의 확보와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폭넓은 어업 담당자의 유지·확보에 노력한다.

(2)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어업인이 의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식계발과, 여성의 어협[수협] 정 조합원화, 여성임원 등용 등에 대한 목표 설정, 또한 여성이 어업에 취업하기에 적당한 환경 만들기 와 지역에서의 여성 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3) 고령어업자의 역할의 명확화와 복지정책의 추진

고령자가 현역으로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어촌에서의 고령자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보다 가벼운 노동에 이행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5) 어업경영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

(1) 경영자의 창의적 발상에 의한 어업경영의 발전

어업법에 의거한 어업권의 면허나 어업허가, 어선법에 의거한 어선의 건조허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검사 등 어업활동에 관한 제 규제의 자원관리는

관계성청과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경영전개 한다.

중소어업을 비롯한 현재의 어업경영상태의 악화 원인은 자원 감소 문제 이외에 과잉설비투자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구조의 개선 및 경영기반을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당면의 어업경영대책으로서 ① 자원관리형어업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자금을 정비하고, ② 실태에서 어업신용기금협회의 용자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을 한다. 또한 근본적인 경영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 경영개선대책을 재검토하여 담당자가 되어야 할 개별 경영체에 중점적으로 경영개선대책을 강구한다.

(2) 자원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경영안정대책 등의 실시

자원회복계획의 실시로 인해, 어업자가 자주적으로 감선이나 휴어 등 어획 노력량의 삭감을 실시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어업경영의 개선에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계어업자의 직접적인 경비부담이나 수입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며 자원회복계획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 지원의 구조를 구축한다.

(3) 어업보험 제도의 충실

어업보험 제도를 어업경영의 상태와 어업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신규어종의 공제대상 추가, 공제부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사고를 한정된 특약방식의 도입 등 공제제도의 현실화를 검토한다. 또 단체의 일원화 등 어업보험에 관하여 단체조직의 재검토를 한다.

6) 소비자의 시점을 중시한 수산식료의 안정공급체제의 확립

(1) 수산물유통의 효율화와 수산가공업의 경영체질의 강화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둘러싼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요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산지시장의 기능강화 등을 통한 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산가공업의 경영체질 강화를 도모한다.

(2)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의 확보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먹을거리에서 대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포함한 수산물의 식품으로서의 특성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하며, 소비자의 적절한 상품선택을 위하여 에코라벨 시스템 등 수산물의 표시 제도를 개선·강화한다.

(3) 수산물의 수급·가격의 안정 등

생산, 가공, 유통, 수입 등의 관계자 정보교환의 장의 설정, 수산물 수급 정보의 제공, 주요수산물의 조정보관사업의 실시, 질서 있는 수입의 확보 등 수산물 수급·가격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출능력이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실한 시장조사, 정보제공 등으로 원활한 수출을 도모한다. 한편 수산물에 관한 자급률의 목표 및 식생활지침은 식품·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하여 식량자급률목표 및 식생활지침 중에서 이를 정하여 국민에게 제시한다.

7) 어업지역의 활성화

(1) 어업지역의 정주환경의 개선

어업노동의 안전성 향상, 노동절감에 의한 일하기 쉬운 어업환경 만들기과 교통, 위생, 교육 등의 생활환경의 정비, 또한 재해에 강한 지역 만들기 등 어업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2) 국민에게 열린 어업지역 만들기

지역의 관계자가 지혜를 모아 지역 활성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장려하고,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을 위한 열린 어업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체험학습, 산지직판매 등으로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의 수익 증대의 기회를 도모한다.

(3) 수산업·어촌에 있는 다면적 기능의 이해증진과 적정한 평가

해난구조, 국가경계의 감시, 연안지역의 환경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다면적인 기능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이해되고,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등을 통한 정보제공과 보급 활동을 추진한다. 또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평가에 대하여 제 외국의 예도 참고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깊게 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향에 대하여 계속하여 검토한다.

8) 수산기반의 정비

이후의 수산정책의 과제에 적확하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수산기반의 정비를 행하기 위하여 수산기반정비의 기본방향을 ① 일본 200해리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물공급체제의 정비, ② 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창조, ③ 수산업의 진흥을 핵으로 양호한 생활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연안조정사업과 어항·어촌정비 사업을 일체적으로 실시한다. 수산기반정비의 일체적 실시는 ① 사업의 중점화·효율화, ② 시책목표의 명확화, ③ 사업효과의 종합적 발휘로 한다. 아울러 해안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과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한다.

9) 기술의 개발·보급

수산연구전략을 책정하여 이에 따라 기술개발시책의 중점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자원회복, 경영비용 삭감, 환경보전,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행한다.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독립행정법인, 도도부현, 민간 등과의 연계로 연구개발체제를 충실히 하고, 지역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기술의 보급·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10) 어업협동조합의 역할의 명확화와 사업·조직의 재검토

어협[수협]이 지역·사회의 중심적 조직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산지시장의 통합추진에 맞추어 합병을 보다 촉진한다. 또한 자원·어업관리를 비롯한 수산업의 새로운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농협 등과의 연계강화의 조건을 정비한다.

2. 어업법 개관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육지의 농지개혁에 이어 역사적인 바다의 어업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연합군의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 등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결국 1949년 12월 15일에 새로운 어업법이 성립·공포되었다. 이 어업법(昭和24年:1949년 법률 제267호)은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행하여 오던 연안어장의 전면적인 정리를 이룬 것으로 구 어업권 및 이것과 관련하는 권리관계들은 2년 이내에 모두 소멸시키고 새롭고 계획적인 신 어업권을 면허하고자 하였다. 이에 필요한 어업법시행법(昭和24年 : 1949년 법률 제268호)을 동시에 공포 시행하여 구 어업권자 및 이와 관련하는 권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서 당시 총178억 엔(당시의 공공사업을 포함한 수산청 전체 예산액은 약 16억 엔이었음)이 넘는 금액의 어업권증권이 교부되었다. 평상시였다면 어려웠을 과감한 개혁도 “미군점령 하”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 가능하였다. 이리하여 에도시대부터 오랫동안 관행으로 계속되어 온 권리관계들은 모두 보상을 거쳐 제도상으로는 일단 백지상태로 되돌려서 출발하였다.

어업법시행법(昭和24(1949)년 법률 제268호)에 의하면, 당시 현존하는 어업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즉, 어업법(昭和24(1949)년 법률 제267호, 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에 즈음하여 현재 존속하는 어업권(이하 단지 ‘어업권’이라 한다) 및 이에 관련한 현재 존속 또는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입어권(入漁權)은 동법 시행 후 2년간, 동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법(明治43(1910)년 법률 제58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신법 제67조의 규정 및 동조에 관련하는 벌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조).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입어권, 임대권 또는 사용임대에 의한 차주의 권리(이하 ‘어업권 등’이라 한다)를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어업권의 소멸 시에 권리자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교부한다(제9조).

1952년 7월 20일에 일본 수산청에서 발행한 팜플렛 ‘어업제도 개혁의 개요’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게재되어 있다 : “옛날 어업법 - 현행어업제도 - 에 근거한, 지금의 이용방법은 생산력을 정체시켜 어촌의 발전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어장을 통합하여도 소용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어업제도를 정해야 한다.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낡은 어업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어업이용의 질서를 전부 백지화하고 새로운 어업제도를 정하여, 어민 모두의 손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어장을 누가, 어떻게 이용할 지를 정하여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업권을 일단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어업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거나,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제2조제1항). “수산동식물”이라 함은 ‘수계(水界)를 생활환경으로 하는 생물의 일체’를 말하며, 이는 어류, 패류, 해조류는 물론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동물과 새우, 게 등의 갑각류, 고래 등의 해수류(海獸類) 등 넓은 범위에 이르고, 생물이 아닌 광물이나, 해수로부터 소금을 채취하는 제염업 등은 어업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현행 어업법에서의 어업권의 종류는 메이지 어업법에 있던 특별어업권 및 전용 어업권을 폐지하고, 종래 이것에 포함되었던 부어(浮魚)를 어업권의 내용에서 제외한 다음 그 밖의 어업권의 내용을 공동어업권에 이전하였다.

면허방법에 있어서는 메이지 어업법에서는 어업권은 옛날부터 관행대로 승계가 되었는데, 신규면허에 대해서는 선원주의(先願主義)에 의하여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 언제라도 면허를 주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것을 다시 도도부현(都道府縣)⁵⁹⁾의 지사가,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수면의 종합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조정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치(定置)어업권, 구획어업권은 5년에 1회, 공동어업권, 일부의 구획어업권에 대하여는 10년에 1회 주었으며, 일제히 새로운 어장계획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이러한 신청자 가운데 자격요건에 맞는 적격자 가운데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허하는 시스템, 이른바 어장계획제도를 새롭게 채택하였다.

어업권은 성격상 물권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사권으로서의 성격은 제한한다. 즉 메이지 어업법에 있어서 어업권은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현행 어업법에서의 임대는 절대 금지되고, 양도, 담보권설정 등도 극히 제한되었다.

59) 일본의 도도부현은 우리 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道 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어업권의 존속기간도 메이지 어업법에서는 20년간이었고, 게다가 신청에 의하여 그 갱신을 자유롭게 인정하였지만, 현행법은 5년 또는 10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어장계획제도에 의해 단순한 갱신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법제

1) 수산자원보호법

1951년의 수산자원보호법은 자원보호에 관한 구(舊) 어업법 등의 규정에 새롭고 적극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하였다. 1951년 2월 12일 당시 점령군 총사령부 천연자원국장은 일본정부에 '일본연안 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그 해결책으로서 5포인트 계획'이 권고되었다. 그 중에서 '각종 어종에 대하여 견실한 자원보호 법제를 정비할 것'이 지적되었다. 이를 받아들여 중의원 수산상임위원회에서 입안하고 제12회 국회에서 가결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에 있던 '수산자원고갈방지법'의 규정이 승계되고 또한 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문 중에서 '수산동식물채포제한 등에 관한 명령'(제4조), '어법의 제한'(제5조·제6조·제7조), '하천어류의 통로의 보호'(제22조·제23조·제24조)가 이전된 것 이외에 새롭게 자원의 적극적인 유지배양을 위한 '보호수면' 및 '연어·송어류의 국영 인공부화방류' 등에 관한 제 규정을 정하고, 이를 통합 일원화하여 수산자원의 보호배양에 관한 제도를 정하였다.⁶⁰⁾

그 후 수산동물의 종묘의 수입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외래병원체가 침입하여 일본의 양식업에 커다란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때마침 1994년 11월 16일 유엔 해양법조약이 발효되었고, 동 조약 제196조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 해양환경의 특정부분에 중대하고 유해한 변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외래종 또는 신종의 당해부분에의 침입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의 수입방역제도'를 창설하고, 1996년 6월 14일 '수산자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8(1996)년 법률 제78호)을 공포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60) 金田禎之 : pp.131 ~ 132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수산자원보호법(1951년 법률 제313호)에 기초하여⁶¹⁾ ① 수산동식물의 번식·육성에 적합한 수면 및 자원상황이 현저하게 악화하고 있으므로, 수산동식물이 서식·생육하고 있는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함과 함께 도현이 행하는 보호수면의 관리를 지원조성하고, ② 소형고래류(돌고래)의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혼획되거나 또는 좌초한 돌고래 등에 대한 구출의 적절한 대응을 행하기 위한 계발, 보급 등을 실시함과 더불어 ‘일본의 희소한 야생수생생물에 관한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종에 대하여 보호수면법의 검토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래의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조사, 증식보존시험 등을 실시하고, ③ 해양환경을 배려한 어업의 확립을 꾀하기 위하여 혼획방지기술의 개발과, ④ 상어류의 자원관리와 연승(延繩)어업에 있어서의 해조의 혼획삭감에 관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FAO)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행동계획에 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국별 행동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와 계획내용을 검토하고, 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배양과 지속적인 이용의 중요성에 관한 의식의 양성·정착을 꾀하기 위하여, 수산낚시학교 등 보급·계발활동을 지원·조성하고, ⑥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정점(定點)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변생물의 서식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계발·보급을 도모하며, ⑦ 야생 수생생물인 바다사자 등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한다.

2)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일본에서는 종래 자원관리형 어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①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1971년 법률 제60호)에 기초하여 어업자단체 등에 의한 수산자원의 자주적인 관리를 촉진하고, ② 자원관리형어업의 실천성과를 어업경영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어업종류 또는 복수의 어종에 대한 대책, 나아가서는 그들 대책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어업지출의 삭감, 어업수입의 증대 등의 대책을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지역의 어업실태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자원관리체제강화 실시추진사업을 실시하고, ③ 도도부현이 관찰 수산자원을 적절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도의 자원평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연수회 등을 실시하고, 난바다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61) 2001年 日本沿岸漁業等施策(第151會 國會 提出報告書) : 11~12

어업자의 합의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④ 자원관리형어업의 정착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채포(採捕)제한 등을 하고, 수산자원의 증식을 도모하는 어장시설의 정비, 즉 자원보호초(礁)의 정비 등 수산기반정비사업과, 둔치건설, 어장관리강화시설의 정비를 하는 연안어업어촌진흥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⑤ 자원의 감소가 현저하고, 어획능력이 자원수준에 비하여 명확히 과잉이며, 긴급하게 자원의 회복을 피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 관계어업자가 일체이 감선 등을 하고 경영의 안정에도 배려하면서, 자원의 회복을 긴급히 도모하는 기간어업긴급재편추진사업을 실시하고, ⑥ 유어분야에서의 자원관리 도입을 위하여, 유어선업단체가 행하는 자원관리 대책을 조성·지원하며, ⑦ 자원관리형어업의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경영자금 및 그 대책에 의하여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필요한 운전자금(어업경영 고도화 촉진지원 자금, 용자액 500억 엔)의 융통을 조치한다.⁶²⁾

4.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

1996년 6월 14일 법률 제77호로 제정되고 최근 2001년 6월 29일 법률 제91호로 개정된 일본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책정하고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어업법(昭和 24(1959)년 법률 제267호) 및 수산자원보호법(昭和 26(1951)년 법률 제313호)에 의한 조치 등과 더불어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의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여 이로써 어업의 발전과 수산물의 공급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률은 우리나라의 현행 수산자원보호령과 비슷한 구조를 취하지만,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도부현계획과 같은 계획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개념정의

이 법률은 법집행 실무상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의한다(제2조).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라 함

62) 같은 보고서 : 8

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및 내수(내수면을 제외한다) 및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平成 8(1996)년 법률 제74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륙붕을 말한다)을 말한다(제1호). 다음에 어획가능량과 어획노력량을 구분한다. “어획가능량”이라 함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채포할 수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종류마다의 연간 수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제2호). “어획노력량”이라 함은 해양생물자원을 채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작업의 양으로 채포의 종류별로 조업일수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지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제3호). 어획노력가능량의 개념은 새롭다. “어획노력가능량”이라 함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해양생물자원의 종류마다 그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 및 당해 채포의 종류에 관계되는 해역 및 기간을 정하여 어획노력량에 의하여 관리를 행하는 경우 해양생물자원의 종류마다 당해 채포의 종류에 관계되는 연간 어획노력량의 합계 최고한도를 말한다(제4호).

한편 같은 법은 “특정해양생물자원”(제5호)의 개념을 채용하고 이를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과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으로 구분한다.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어획가능량을 결정하는 등, 보존 및 관리를 행하는 것이 적당한 해양생물자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6호).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어획노력가능량을 결정하는 등, 보존 및 관리를 행하는 것이 적당한 해양생물자원으로써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농림수산대신은 이 두 가지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있어 그 입안을 하는 때에는 수산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8호).

2) 계획체계

(1) 기본계획

농림수산대신은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기본계획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제1호), 특정해양생물자원마다의 동향에 관한 사항(제2호),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마다의 어획가능량에 관한 사항(제3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어획가능량 중 어업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어업, 동법 제65조제1항 및 수산자원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농림수산성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허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어업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어업(이하 “지정어업 등”이라 한다)의 종류별로 정하는 수량에 관한 사항(제4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에 관하여 조업구역별 또는 조업기간별로 수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관한 사항(제5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어획가능량(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량 및 정령으로 정한 자가 행하는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에 관계되는 수량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해면이 그 구역 내에 존재하는 도도부현(이하 “도도부현”이라 한다)별로 정하는 수량에 관한 사항(제6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제5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 이하 “대신관리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사항(제7호),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마다 어획노력량에 의하여 관리의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 및 당해 채포의 종류에 관계되는 해역, 기간 및 어획노력가능량에 관한 사항(제8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어획노력가능량 중 지정어업 등의 종류(어획노력량에 의하여 관리의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에 한한다)별로 정하는 양(이하 “대신관리노력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제9호), 제8호에서 규정하는 어획노력가능량(대신관리노력량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도도부현별로 정하는 양에 관한 사항(제10호), 대신관리노력량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사항(제11호),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제12호)을 규정한다(제3조제2항).

제2항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최대지속생산량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특정해양생물자원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다른 해양생물자원과의 관계 등을 기초로 하여 특정해양생물자원에 관계되는 어업경영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제3항). 농림수산대신은 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정책심의회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항). 농림수산대신은 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량 또는 동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양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계부분에 대하여 관계되는 도도부현의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당해 수량 또는 양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계부분에 대하여 관계되는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통지한다(제5항). 농림수산대신은 기본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제6항). 농림수산대신은 특정해양생물자원마다의 동향, 특정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어업경영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매년 적어도 1회 기본계획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제7항).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검토를 행함에 있어 수산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8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제9항).

(2) 도도부현계획

도도부현의 지사는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량 또는 동항제10호에 규정하는 양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도도부현의 계획(이하 “도도부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도도부현계획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방침(제1호),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에 관한 사항(제2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에 관하여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의 종류별, 해역별 또는 기간별로 수량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에 관한 사항(제3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전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 제8조제2항에서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제4호),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양에 관한 사항(제5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양 중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의 종류(어획노력량에 의하여 관리의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로서 지정어업 등 이외의 것에 한한다)별로 정하는 양(이하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노력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제6호),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노력량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사항(제7호),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제8호)을 규정한다(제4조제2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도도부현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도도부현 계획(제2항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8항에서도 이와 같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조제4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도도부현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제5항). 농림수산대신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도도부현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도부현계획에 관계되는 도도부현의 지사에 대하여 당해 도도부현계획을 변경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제6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는 때에는 도도부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제4조제7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해양생물자원(제5조제1항의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 및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향,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어업경영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매년 적어도 1회 도도부현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제4조제8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8항의 검토를 행함에 있어 관계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조제9항).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제4조제10항).

지정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일환으로 도도부현의 지사는 특정해양생물자원이 아닌 해양생물자원 중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 있어 도도부현 어획한도량(지정해역에 있어 지정어업 등을 운영하는 자 및 제3조제2항제6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채포할 수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종류마다 연간 수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존 및 관리를 행하는 해양생물자원으로서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이하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이라 한다.)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한도량 {지정해역에 있어 해양생물자원의 종류마다 그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 및 당해 채포의 종류에 관계되는 해역 및 기간을 정하여 도도부현 어획노력량[해양생물자원을 채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작업(지정어업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관한 것은 제외한다)의 양으로써 채포의 종류별로 조업일수 기타 도도부현의 규칙으로 정하는 지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관리를 행하는 경우 해양생물자원의 종류마다 당해 채포의 종류에 관한 연간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의 합계 최고한도를 말한다}을 결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보존 및 관리를 행하는 해양생물자원으로서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이하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도부현계획에 있어 지정해양생물자원마다의 동향에 관한 사항(제1호),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마다의 도도부현 어획한도량에 관한 사항(제2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도도부

현 어획한도량에 대하여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의 종류별, 해역별 또는 기간별 수량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에 관한 사항(제3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 어획한도량(전호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 제8조제2항에서는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사항(제4호),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마다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에 의하여 관리의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 및 당해 채포의 종류에 관계되는 해역, 기간 및 도도부현 어획노력한도량에 관한 사항(제5호), 앞 호에서 규정하는 도도부현 어획노력한도량 중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의 종류(당해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에 의하여 관리의 대상이 되는 채포의 종류에 한한다)별로 정하는 양(이하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노력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제6호),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노력량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사항(제7호)을 정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최대지속생산량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정해양생물자원을 유지 또는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다른 해양생물자원과의 관계 등을 기초로 하여 지정해양생물자원에 관계되는 어업경영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제5조제2항). 제5조제1항의 해역 및 해양생물자원을 정하는 도도부현의 조례는 도도부현이 당해 도도부현의 지선(地先)수면(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한한다, 제17조제3항에서도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역에 있어 도도부현 어획한도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한도량을 결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특정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할 수 있다(제5조제3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도도부현계획(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한한다)의 실시효과가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계되는 도도부현의 지사에 대하여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계되는 도도부현의 지사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제6조).

(3) 기본계획 등의 달성을 위한 조치

농림수산대신은 기본계획(제3조제2항제6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의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의 지사는 도도부현계획의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치 이외에 어업법 제34조제1항

(동법 제6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 또는 제4항, 제39조제1항(동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또는 수산자원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제한 등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도도부현계획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2항 및 동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조제2항).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은 기본계획 등의 달성을 위하여 채포의 수량 또는 어획노력량 등을 공표한다. 농림수산대신은 대신관리량의 대상이 되는 채포의 수량이 당해 대신관리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이 당해 대신관리노력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채포수량 또는 어획노력량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한다(제8조제1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량 또는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량(이하 “지사관리량”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채포수량이 당해 지사관리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2종 특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노력량 또는 제2종 지정해양생물자원 지사관리노력량(이하 “지사관리노력량”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이 당해 지사관리노력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당해 채포수량, 어획노력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량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한다(제8조제2항).

행정관청의 조언, 지도 또는 권고도 기본계획 등의 달성에 이바지한다. 농림수산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한 후 대신관리량의 대상이 되는 채포수량이 당해 대신관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이 당해 대신관리노력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해 대신관리량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대신관리량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한 후 지사관리량의 대상이 되는 채포수량이 당해 지사관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이 당해 지사관리노력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당해 지사 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사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제9조제2항).

3) 어획량 등의 관리

(1) 채포정지 등

농림수산대신은 대신관리량의 대상이 되는 채포수량이 당해 대신관리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이 당해 대신관리노력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당해 대신관리량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신관리량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해양생물자원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포의 정지 기타 당해 특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지사관리량의 대상이 되는 채포수량이 당해 지사관리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이 당해 지사관리노력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의 규칙으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사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사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포의 정지 기타 당해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2) 할당에 의한 채포제한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어업 등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의 지사는 어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수산자원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의 규정 또는 어업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도도부현의 지사의 허가 기타 처분을 필요로 하는 어업(제18조제1항에서 “지사허가어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도부현 계획에 의거하여 채포를 행하는 자별로 대신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량에 관계되는 어획량 한도의 할당을 당해 대신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량에 의하여 관리의 대상이 되는 1년의 기간의 개시 전에 행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1항의 할당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채포를 행하는 자가 사용하는 선박의 척수 또는 총톤수(제1호)와 채포를 행하는 자의 채포의 상황(제2호)을 감안하여 할당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당을 하여야 한다(제11조제2항).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1조제2항제3호).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1조제2항제4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량 한도의 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할당에 관계되는 해역에서 할당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당해 할당에 관계되는 제1종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제2항제5호).

(3) 정박명령

농림수산대신은 대신관리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가 제10조제1항의 명령 또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당해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가 제10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당해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에 사용한 선박에 대하여 정박항 및 정박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선박의 정박을 명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지사관리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가 제10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전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당해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가 제10조제2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당해행위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에 사용한 선박에 대하여 정박항 및 정박기간을 지정하고 당해 선박의 정박을 명할 수 있다(제12조제2항).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平成 5(1993)년 법률 제88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의 구분에 관계없이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제12조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계되는 청문기일에 있어 심리는 공개로 행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4) 협정체결 등

대신관리량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는 당해 대신관리량 또는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특정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당해 협정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제13조제1항). 지사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는 당해 지사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당해협정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도도부현의 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제13조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협정에 있어서는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해역 및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 및 그 채포의 종류(제1호),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방법(제2호), 협정의 유효기간(제3호), 협정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제4호),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을 정하여야 한다(제3항).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은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협정인정 방식을 취한다.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신청이, 대신관리량·대신관리노력량·지사관리량 또는 지사관리노력량의 관리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협정내용(제1호),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한 협정내용(제2호),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의거하는 명령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 협정내용(제3호),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을 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 협정인정(협정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협정의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제14조제2항).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은 협정참가를 알선한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을 받은 협정(이하 “인정협정”이라 한다)에 참가하고 있는 자는 인정협정의 대상이 되는 해역서 인정협정의 대상이 되는 종류의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을 채포하는 자로서, 인정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참가를 구하는 경우, 그 참가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을 한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승낙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인정협정의 내용이 인정협정에 불참한 자에게 참가를 구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선을 하여야 한다(제15조제2항).

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법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업법 등에 의한 부대조치를 상정한다. 즉 인정협정에 참가하는 자는 그 수가 인정협정의 대상이 되는 해역에서 인정협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지정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채포를 행하는 자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에 대하여 인정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보호배양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신청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업법 제34조제1항(동법 제6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 또는 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수산자원법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포제한 등의 조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도도부현의 지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에 의거하여 어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해상구역어업조정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및 동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6조제3항). 전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청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어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제16조제4항).

(5) 채포수량 또는 어획노력량 등의 보고

지정어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있어 제1종 특정해양 생물자원을 채포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포수량 그 밖의 채포상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대신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는 당해 대신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에 관계되는 어로작업을 할 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 노력량 그 밖의 채포상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제2항). 지정어업 등을 운영하는 자 및 제3조제2항제6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 도도부현의 지선수면에 있어 제1종 특정해양생물 자원을 채포한 때, 또는 당해 도도부현의 지정해역에서 당해 도도부현의 제1종 지정해양생물자원을 채포한 때에는 도도부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포수량 그 밖의 채포상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제3항). 지사관리노력량에 관계되는 채포를 행하는 자는 당해 지사관리노력량의 대상이 되는 어획노력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량에 관계되는 어로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노력량 또는 도도부현 어획노력량 그 밖의 채포 상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제4항).

(6) 보고 및 출입검사

농림수산대신은 특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를 행하는 지정어업 등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도도부현의 지사는 특정해양생물자원 또는 당해 도도부현의 지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를 행하는 지사허가어업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포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구하고, 그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어장, 선박, 사업장, 사무소 또는 창고에 출입하게 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어획물,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제18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18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제3항).

(7) 수산정책심의회에 의한 보고징수 등

수산정책심의회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해양생물자원의 채포를 행하는 지정어업 등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출두를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그 위원 또는 그 사무에 종사한 자에게 어장, 선박,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시킬 수 있다(제19조).

5. 수산기본법

2001년에 제정·공포된 일본 수산기본법과 그 입법배경은 수산진흥 부문이 약한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래 일본의 수산업은 중요한 단백질식품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자체의 공급력으로 식량자급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수산업은 국제연합해양법조약의 체결과 한일·중일의 어업협정의 발효에 의한 본격적인 200해리체제 이행, 수산자원의 악화 등에 의한 어획량의 감소, 어업자의 감소·고령화 등 내외의 제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그 후, 세계적으로 수산물 수급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산업은 이후에도 국민의 중요한 수산식품 공급 산업으로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새로운 체계로 구축할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하여 1999년 12월 수산정책의 지침으로서 책정된 '수산 기본정책 대강·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부분에 있어서 시책의 구체화를 추진하였다.⁶³⁾ 또한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1963년에 제정된 연안어업 등 진흥법에 대체하여 새로운 수산정책 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한 수산기본법(안)을 제151회 국회에 제출하였다.⁶⁴⁾ 수산 기본 법안은 2001년 6월 29일에 법률 제89호로 제정되고 2002년 6월 19일에 법률 제73호로 개정되었다.

63) 같은 보고서 : 1

64) 같은 보고서 : 2

1) 총 설

(1) 입법목적

일본 수산기본법은 수산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여 수산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 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수산물의 안정공급(제2조)과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제3조)이라는 목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

수산물의 안정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수산물은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의 기초로서 중요한 것임에 비추어, 계속 양질의 수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제2조제1항). 수산물의 공급은, 수산자원이 생태계 구성요소에 한정된 것임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의 정확한 이행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는 물론이고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는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한다(제2항).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어서는 세계 수산물의 수급 및 무역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므로, 일본의 어업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여기에 수입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제3항).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인식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고도화·다양화한 국민의 수요에 맞는 어업생산과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며, 어업, 수산가공업 및 수산유통업의 연계 확보 및 어항, 어장 기타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제3조제1항).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어촌은 어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되도록 어촌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지향상에 의한 그 진흥을 도모한다(제2항).

(2) 주체들의 책무

국가는 법 제2조에 정한 수산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고 함)에 입각하여,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4조제1항). 국가는 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킨다(제2항).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수산에 관한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에 응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제5조). 한편, 수산업자 및 수산업에 관한 단체는 수산업 및 그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기본이념의 실현에 주체적으로 임한다(제6조제1항). 어업자이외의 자로서, 수산동식물의 채포(採捕) 및 그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수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한다(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수산업자 및 수산업에 관한 단체의 자주적인 노력에 최우선으로 지원한다(제7조). 아울러 소비자는 수산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수산물에 관한 소비생활의 향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제8조).

(3) 부수적 조치

법상의 기본시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제상의 조치(제9조)를 취하고 연차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수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차보고 등(제10조)의 조치를 강구한다. 정부는 매년, 국회에 수산동향 및 정부가 수산에 관한 시책 보고서를 제출한다(제10조제1항). 정부는 매년 전향의 보고에 관련된 수산 동향을 고려하여 시책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정부는 전향의 강구한 시책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산정책심의회 의견 청취한다(제3항).

(4) 행정의 합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함과 함께 행정조직의 정비, 행정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 향상에 노력한다(제33조). 국가는 기본이념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에 관한 단체의 효율적인 재편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34조).

2) 수산기본계획

수산기본법은 '기본법' 일반의 경향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한 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함)을 정한다(제11조제1항).

(1)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은 수산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 그리고 정부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의 강구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시킨다(제2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

정부는 기본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 수산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6항). 정부는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그것을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제7항). 정부는 수산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감안함과 아울러 수산에 관한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고려하여 대략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제8항).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서는 의견청취(제6항)와 공표절차(제7항)를 준용한다(제9항).

(3) 수산자급률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그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본의 어업생산 및 수산물의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어업자외의 관계자가 취하여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정한다(제3항). 수산물의 자급률 목표는 식품·농업·농촌기본법(1999년 법률 제106호) 제15조제2항제2호에 열거한 식량자급률의 목표와의 조화를 유지한다(제4항).

(4) 국토계획과의 조화

법은 수산업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 즉 국토계획과 이 법에 의한 기본계획 가운데 어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한다(제5항).

3) 수산물의 안정공급

식료인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2조).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등(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와 내수 및 대륙붕(배타적경제수역및 대륙붕에관한법률(1996년 법률 제74호) 제2조에 규정한 대륙붕을 말함)을

말한다)에서의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피하기 위하여 최대지속생산량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산자원을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하게 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의 관리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3조제1항). 국가는 전항에 규정한 시책이 어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항).

(1) 배타적경제수역이외의 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국가는 일본이 세계의 어업생산 및 수산물의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에 비추어, 배타적경제수역이외의 수역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국제기관 기타 국제적인 틀에의 협력, 일본 어업의 지도 및 감독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4조).

(2) 수산자원 조사 및 연구

국가는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5조).

(3) 종묘생산·방류 및 양식어장개선

국가는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의 추진을 피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의 종묘생산 및 방류의 추진, 양식어장의 개선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6조).

(4) 수질보전·번식지보호·산림보전

국가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 보전 및 개선을 피하기 위하여 수질보전, 수산 동식물의 번식지 보호 및 정비, 산림의 보전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7조).

(5) 조업협약의·수산자원탐사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 이외의 수역에 있어서 일본의 어업에 관련된 어장의 유지 및 개발을 피하기 위하여 조업에 관한 외국과의 협의, 수산자원의

탐사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8조).

(6) 수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국가는 수산물에 관하여 자국의 생산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수입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 또는 당해 경쟁 수산물에 대하여 중대한 지장이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입제한, 관세율 조정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8조제1항). 국가는 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장조사의 충실, 정보의 제공, 보급선전의 강화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항).

(7) 국제협력

국가는 향후 세계의 수산물 수급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지역의 수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협력 및 자금협력 기타 국제협력을 추진한다(제19조).

4)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가는 수산업 및 어촌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함과 동시에 수산업 및 어촌이 가지는 수산물 공급이외의 기능이 앞으로도 적절하고 충분하게 발휘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32조).

(1) 산업육성 및 경영합리화

- 어장이용의 합리화의 촉진 :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장이용의 합리화 촉진 기타 시책을 강구한다(제22조).
- 수산업기반의 정비 : 국가는 수산업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함과 함께, 수산 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과의 조하르르 배려하면서 어항정비, 어장정비 및 개발 기타 수산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6조).
- 기술개발 및 보급 : 국가는 수산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보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목표의 명확화, 국가, 독립행정법인 및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과의 연계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 기술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화한다(제27조)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의 육성 :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의욕이 있는 자가 창의와 지혜를 살린 어업경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어업의 종류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조건의 정비, 어선 및 시설정비의 촉진, 사업공동화의 추진 기타 어업경영기반강화를 촉진한다(제21조).
- 어업재해에 의한 손실보전 등 : 국가는 재해에 의하여 어업의 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피하기 위하여 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4조제1항). 국가는 어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물 가격의 현저한 변동을 완화시킨다(제2항).
- 수산가공업 및 수산유통업의 건전한 발전 : 국가는 수산가공업 및 수산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 활동에 수반하는 환경의 부하 감소 및 자원의 유효한 확보와 사업기반의 강화, 어업과의 연계추진,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5조).

(2) 어업인력의 양성 및 관리

- 인재의 육성 및 확보 :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어업자의 어업기술 및 경제관리 능력의 향상, 새로이 어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어업기술 및 경영방법의 습득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3조제1항). 국가는 어로의 안전 확보, 노동조건 개선 기타 어업종사자의 노동환경정비의 시책을 강구한다(제2항). 국가는 국민이 어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심화할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교육진흥에 힘쓴다(제3항).
- 여성참여의 촉진 : 국가는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고 수산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여성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수산업 및 그에 관한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제28조).
- 고령자의 활동촉진 : 국가는 수산업에 있어서 고령자의 역할분담 및 그가 가지는 기술 및 능력에 따라 보람을 가지고 수산업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

경정비를 추진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복지향상을 꾀한다(제29조).

(3) 공간관리의 효율화

-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 국가는 수산업의 진흥 기타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제30조제1항). 국가는 지역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수산업기반의 정비와 방재, 교통, 정보통신, 위생, 교육, 문화 등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지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제2항).
- 도시와 어촌의 교류 등 : 국가는 국민의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심화시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와 어촌 사이의 교류촉진, 유선어업의 적정화,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31조).

5) 수산정책심의회

기본시책을 비롯하여 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에 수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함)를 설치한다(제35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심의회의 조직, 소관사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제39조).

(1) 권 한

심의회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권한을 처리하는 외에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계각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제36조제1항). 심의회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계각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심의회는 전 2개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어업법(1949년 법률 제267호), 어항어장정비법(1950년 법률 제137호), 어선법(1950년 법률 제178호), 수산자원보호법(1951년 법률 제313호),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1971년 법률 제60호), 연안어장정비개발법(1984년 법률 제49호), 어업경영의개선및재건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1986년 법률 제43호), 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1996년 법률 제77호) 및 지속적양식생산확보법에관한법률(1999년 법률 제5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제3항).

(2) 조 직

심의회는 위원 30인 이내로 조직한다(제37조제1항). 위원은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임명한다(제2항).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제3항).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심의회의 직원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농림수산대신이 임명한다(제4항).

(3) 자료제출요구

심의회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설명 기타의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 3 절 미국법제

1. 서 설

해양 천연자원 고갈을 설명하는 저서 가운데 Hardin의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있다.⁶⁵⁾ 이에 따르면 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은 일정기간에 포획하는 총량을 제한하여 자원을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성원의 일부가 약속을 어기고 공유자원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의 몫이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도 자원이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많이 자원을 이용·개발·획득하기 위한 파괴적인 경주(race)에 동참을 하게 된다. 결국 공유자원의 고갈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이전에는 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양자원에 대해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3해리 밖의 바다는 모두 공해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은 공유 또는 자유입어(Open Access)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tragedy of the commons」는 이러한 공유자원의 고갈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수산업에 있어서 공유재의 비극의 결과는 과잉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이다. 과잉어획은 어업인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65)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162 Science 1243 (1968).

가능한 빨리 그리고 많은 양을 어획함으로써 발생한다.⁶⁶⁾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공유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을 목격하였으며 자원보존 및 관리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배경아래서 미국은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976년에 「수산 보존 및 관리법」을 제정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외국어선의 미국 수역에의 입어를 금지했으며, 국가의 관리권한을 200해리까지 확대하였다. 1996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주의 관할권은 영해까지만 인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산업에 관한 관할은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⁶⁷⁾ 주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어업도 수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주정부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수산자원에 대하여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국가 전체의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수산자원이 지니고 있는 공유재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ITQ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⁶⁸⁾

여기에서는 미국 수산관리에 관한 법제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수산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 보존 및 관리법」⁶⁹⁾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미국의 「수산 보존 및 관리법」은 한국의 수산법제와 비교하여 보면 수산업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호령 등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산 보존 및 관리법」은 1976년 제정이후 1996년 개정이 되었고 2003년 이후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수산 보존 및 관리법」의 개정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고갈 자원의 회복과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은 한국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여 미국의 수산법제와 「수산 보존 및 관리법」에 대한 연구는

66) Sharon R. Siegel, Applying the Habitat Model to Fisheries Management: A Proposal for a Modified Fisheries Planning Requirement, 25 Colum. J. Envtl. L. 141, 144 (2000).

67) 16 U.S.C. 1856 (2000).

68) 미국 ITQ제도에 대하여는 류정곤, John M. Gates, 남종오, 「우리나라 ITQ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연구」 해양수산개발원(2004), 22-36쪽 참조.

69) 16 U.S.C. 1801-1882; Pub. L. 94-265.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어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와 법제를 살펴보고, 「수산 보존 및 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지역수산위원회 및 수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 및 법제

1) 미국 수산자원 관리의 역사

역사적으로 미국 수산자원의 관리권자는 주(state)였다. 각 주정부는 내수면, 3해리 이내의 영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해양수산자원을 규율해왔다. 미국 Submerged Lands Act of 1953⁷⁰⁾은 3마일⁷¹⁾ 이내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관리, 임대, 개발, 사용의 소유권이 주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른 주의 주민도 관할권이 있는 주의 규율을 받지만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판례들이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헌법의 판례중 하나인 *Toomer v. Witsell* 사례에서 미국 대법원은 South Carolina의 새우조업 면허료로 주민에게는 \$25를 받고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2,500을 받은 법은 특권과 면제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⁷²⁾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산자원의 이용의 본질이 급변했으며, 주정부의 관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함께 외국 어선들이 미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국 어민들은 미국의 수산자원이 외국 어선에 의하여 남획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작은 소형어선들로는 대형 외국선단과 경쟁을 할 수 없었다.⁷³⁾ 다자간 조약과 지역수산기구들이 수산자원 고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도 과잉어획을 방지 내지 중단시키는데 효과가 없었다.⁷⁴⁾ Bartlett 법⁷⁵⁾에 의하여 12해리 어업지역의 설정도 미국 수산자

70) 43 U.S.C. 1311(a) (2000).

71) 미국 대법원은 주가 합법적인 이익이 있고 연방법과 배치되지 않는 경우 3마일 밖의 주의 어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Skiriotes v. Florida*, 313 U.S. 69, 77-79 (1941).

72) *Toomer v. Witsell*, 334 U.S. 385, 403 (1948).

73) Harry N. Scheiber, *Ocean Governance and the Marine Fisheries Crisis: Two Decades of Innovation and Frustration*, 20 Va. Env'tl. L.J. 119, 119-21 (2001)

74) 16 U.S.C. 1801(a)(4) (2000).

75) Pub. L. No. 89-658, 1-4, 80 Stat. 908, 908 (1966).

원의 고갈을 막지 못했다.

1973년 개최된 UN 해양법 협약 협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과 수산자원의 보존은 주요한 사항이었다. UNCLOS 제3차 협상에서 200해리 이내의 수산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협약에 대한 협상이 예정된 시간에 종료되지 않았다.⁷⁶⁾ 미국 의회는 미국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1976년 수산 보존 및 관리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미국의 배타적 수산관할권을 200해리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의 관할로 여겨왔던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해역은 그대로 주의 관할로 두었다.⁷⁷⁾

2) 어류와 수산 관리에 대한 주권적 권리 선포

미국은 1976년 제정된 「수산 보존 및 관리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든 어류와 모든 대륙붕의 수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수산관리권한을 선언하였다.⁷⁸⁾ 더 나아가 미국은 EEZ 밖의 소하성어종과 대륙붕의 수산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수산관리권한을 선언하였다.⁷⁹⁾

「수산 보존 및 관리법」에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와의 수산자원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수산과 관련한 주정부의 관할권은 주의 내수면과 제네바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에 의한 영해로 한다.⁸⁰⁾ 주정부는 어선이 당해 주에 등록되어 있고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과 관련하여 수산관리계획이 없고 다른 연방 수산관련 법령이 없으며, 주의 법령이 수산관리계획과 일치할 경우 주의 관할 밖의 어선에 대하여도 규율한다.⁸¹⁾ 그리고 수산관리계획에서 특정어업의 관리를 주에 위임하였고 주의 법령이 수산관리계획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주가 당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 규율한다.⁸²⁾

그러나 대상 어업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내에서 또는 그 밖에서 이루어지고 주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산관리계획을 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또는 부

76)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6조와 제57에 의하면 200 마일까지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연안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종화, 「국제해양법강의」 태화출판사(1998) 84-94쪽 참조.

77) 16 U.S.C. 1802(11) (2000).

78) 16 U.S.C. 1811(a) (2000).

79) Ibid. (b)

80) 16 U.S.C. 1856(a)(2)(A) (2000).

81) 16 U.S.C. 1856(a)(3) (2000).

82) Ibid.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와 청문을 거친 후에 직접 규율한다.⁸³⁾ 주 정부에서는 상무부장관에게 관리 권한의 복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사유가 적절한 경우에 주의 관리 권한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⁸⁴⁾

이러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산자원의 관리는 주에 많이 위임되었다. 학자들은 지방분권만이 능사는 아니며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⁸⁵⁾ “공유자원의 정치적 비극(political tragedy of commons)”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유자원 관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자원보호에 역행하게 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구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업관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제한된 입어보다는 공개 입어 또는 경주체제로 되어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⁸⁶⁾

3) 미국 수산청 소관 법률

미국에서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이다. NOAA와 NMFS는 닉슨 대통령이 설립을 했는데, 내무부의 어류 및 야생동물청이 관장하던 업무가 NMFS로 이관된 것이다.

NMFS가 관장하는 법률을 5개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매년 의회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는 10개 법률⁸⁷⁾,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3개 법률⁸⁸⁾,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10개 법률⁸⁹⁾, NMFS가

83) Ibid.(b)

84) Ibid.

85) David A. Dana, The Ecosystem Approach: New Departures for Land and Water: Fisheries Management: Overcoming the Political Tragedy of the Commons: Lessons Learned from the Reauthorization of the Magnuson Act, 24 Ecology L.Q. 833,at 841

86) Ibid.

87) Anadromous Fish Conservation Act, Atlantic Coastal Fisheries Cooperative Management Act, Atlantic Striped Bass Conservation Act, Central, Western, and South Pacific Fisheries Development Act, Endangered Species Act, Interjurisdictional Fisheries Act of 1986, 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Title II,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Marine Fisheries Program Authorization Act등이 있다.

88) Driftnet Impact Monitoring, Assessment, and Control Act of 1987, Fishermen's Protective Act of 1967, Saltonstall-Kennedy Act 등이 있다.

89) Atlantic Salmon Convention Act of 1982, Atlantic Tunas Convention Act of 1975, Eastern Pacific Ocean Tuna Licensing Act of 1984, Fur Seal Act of 1966, North Pa-

협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9개 법률⁹⁰⁾, 기타 5개 법률⁹¹⁾로 구분한다.

매년 의회로부터 사업 예산배정을 받아야 하는 10개 법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률은 미국의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매그너슨-스티븐스 수산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이다. 소하성 어류 보존법(Anadromous Fish Conservation Act)은 소하성 어류와 5대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대서양 연안 수산업협력관리법(Atlantic Coastal Fisheries Cooperative Management Act)은 상무부 장관이 대서양 해양수산위원회와 대서양 연 수산업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대서양 줄무늬농어보존법(Atlantic Striped Bass Conservation Act)은 대서양 줄무늬농어의 보존 및 관리를 돕는 법률이다. 중서남부 태평양 수산업 개발법(Central, Western, and South Pacific Fisheries Development Act)은 태평양의 참치와 수산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률이다. 그 외 멸종위기종에 처한 종의 보호에 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⁹²⁾, 해양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⁹³⁾ 등이 있다.

예산신청이 없이 영구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3개 법률은 유자망 영향 감시·평가·통제법(Driftnet Impact Monitoring, Assessment, and Control Act of 1987), 어업인 보호법(Fishermen's Protective Act of 1967), 솔톤스톨-케네디법(Saltonstall-Kennedy Act)이 있다. 어업인보호법은 조업 중 손해, 조난 등을 당한 어선 선주 등을 위한 보험기금을 설립하는 법률이다. Saltonstall-Kennedy Act는 미국산 수산제품의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cific Anadromous Stocks Convention Act of 1992, Northern Pacific Halibut Act of 1982, Pacific Salmon Treaty Act of 1985, South Pacific Tuna Act of 1988, Tunas Convention Act of 1950, Whaling Convention Act of 1949

90) Clean Water Act, Coastal Wetlands Planning, Protection, and Restoration Ac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Federal Power Act, 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il Pollution Act,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Safe Drinking Water Act

91) High Seas Driftnet Fisheries Enforcement Act, Lacey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36, Mitchell Act,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Amendments

92)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16 U.S.C. 1531-1544 (2000).

93)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16 U.S.C. 1361-1421h (2000).

조약 및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은 대서양 및 태평양 연어(Atlantic Salmon Convention Act of 1982, Pacific Salmon Treaty Act of 1985) 대서양 및 동태평양 참치(Atlantic Tunas Convention Act of 1975, Eastern Pacific Ocean Tuna Licensing Act of 1984, South Pacific Tuna Act of 1988, Tunas Convention Act of 1950), 물개(Fur Seal Act of 1966), 소하성어류(North Pacific Anadromous Stocks Convention Act of 1992), 가자미류(Northern Pacific Halibut Act of 1982), 고래(Whaling Convention Act of 1949)등에 관한 국제 조약 및 협약이다.

기타 불법 수산물 거래를 금지하는 레이시법(Lacey Act), NOAA 수산청이 수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어류 및 야생동물 조화법(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댐건설 등으로 소하성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방동력법(Federal Power Act)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성문법, 국제협약과 조약이 있다.

4) 해양생물 관리 법률

미국에서 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법률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발달되어 최대 지속가능한 이용(maximum sustainable exploitation)에서부터 보존(preservation)까지 각기 다른 관리목적을 가지고 있다. 매그너슨-스티븐스 수산보존 및 관리법⁹⁴⁾은 최적생산을 위한 자원의 보존하기 위해 수산업 관리를 규정한다. 이 법의 목적(purpose)에서는 최적생산(optimum yield), 각 주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고려한 미개발된 자원의 개발이라는 용어 등이 사용된다.⁹⁵⁾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에 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은 위협에 처한 종을 보호하고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은 멸종과 고갈위기에 있는 해양 포유류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개체수를 유지하여 최적지속가능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제를 한다.

94) 16 U.S.C. 1801-1883 (2000).

95) 16 U.S.C. 1801(b)(5) ...encourage the development by the United States fishing industry of fisheries which are currently underutilized....

3. 수산보존 및 관리법[지속가능 수산업법]

1) 역 사

수산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 보존 및 관리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FCMA)은 어업 관할권 등에 대한 여러 해 동안의 논의 끝에 1976년 4월 13일에 제정되었고 후에 Warren G. Magnuson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매그너슨 수산관리 및 보존법으로 바뀌었다. 법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첫째, 200마일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어권을 통제하고,⁹⁶⁾ 둘째, 미국연안의 수산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것이다.⁹⁷⁾

법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중요한 개정은 참치를 미국의 관할권밖에 두었던 것을 직접관할을 하도록 포함시킨 것과 외국 수산업자의 미국 수역 내에서의 조업에 관한 것이다. 수산보존 및 관리법은 초기에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근해수역의 상당부분의 수산자원을 해외 수산업자에게 할당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에 대한 할당은 미국 수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었고 1992년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할당이 없어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미국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어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수산 자원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FCMA는 1996년에 개정이 되면서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MSA)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법을 지속가능 수산업법(Sustainable Fisheries Act, SFA)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FCMA의 주된 목적이 외국인의 미국 수역 내에서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면 SFA는 수산자원을 과잉어획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갈된 자원을 최대 지속가능 생산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이었다.⁹⁸⁾ SFA에서는 과잉어획과 수산자원 회복에 관한 상당히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FMP는 목표와 언제 과잉어획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치 기준 결정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과잉어획 등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하였다. 또한 부수어획 즉 의도하지 않게 어획되어 버려지는 수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어류 서식지를

96) E. Michael Linscheid, COMMENT: Living to Fish, Fishing to Live: The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Fishing-Dependent Communities, 36 U.S.F.L. Rev. 181, 184(2001)

97) 16 U.S.C. 1801(b)(1), (3) (2000).

98) Sustainable Fisheries Act of 1996, Pub. L. No. 104-297, 110 Stat. 3559 (1996).

보호하는 한편, 수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담고 있다.

미국 지속가능수산업법은 2003년에 재 승인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수산보존 및 관리법의 목적으로, 첫째는 외국 수산업자를 미국 연안에서 배제하고 미국 어선단이 수산자원을 어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자들은 법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였다고 평가한다.⁹⁹⁾ 두 번째 목적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이다. 이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다. 어떤 학자들은 법이 통과된 후에 연안 수산자원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뉴잉글랜드 연안의 수산업을 관리실패의 예로 들고 있다.¹⁰⁰⁾

이에 비해 미국 NOAA의 수산청은 1996년에 개정된 법이 6년 동안에 많은 어족자원이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면¹⁰¹⁾ 과거 5년동안 20개 이상의 어족자원이 회복되었으며 25개 어종이 과잉어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여 수산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7개의 주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재 승인을 요청했다.¹⁰²⁾ 7개 주요 개정 대상은 지역수산관리 운영의 기술적인 수정, 개인조업쿼터(IFQ)의 표준 및 요건 개발, 어획능력 감소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강화, 수산업 오픈버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개발 권한의 확대, 필수적인 경제적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철폐, 과잉어획 등에 대한 법적 개념의 명확화 등을 포함한다.

2) 구 성

이 법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일반에 관한 것으로 법의 목적, 정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의와 관련하여 유의를 해야 할 이 법에서의 어류(fish)라 함은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와 그리고 모든 다른 형태의 해양 동물과 식물(plant)을 말하며 해양포유류와 조류(birds)는

99) Catherine E. Decker, Issues in the Reauthorization of the 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 Ocean & Coastal L.J. 323, 323 (1995)

100) Peter Shelley et al., The New England Fisheries Crisis: What Have We Learned?, 9 Tul. Envtl. L.J. 221, 238 (1996)

101) NOAA Fisheries,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Fisheries Act ACHIEVEMENTS FROM 1996 TO THE PRESENT, (2003, 6)

102) NOAA Fisheries, Achievements in Marine Stewardship Since Passage of the Sustainable Fisheries Act of 1996, <<http://www.nmfs.noaa.gov/docs/Headway%20Since%20SFA.doc>>.

제외한다.¹⁰³⁾ 일반적으로 어류(fish)라고 할 때 연체류, 갑각류를 제외하고 이를 포함 경우에도 해조류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법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우리의 수산(동식)물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¹⁰⁴⁾ 일반적으로 어업 또는 수산업으로 해석되는 fishery의 경우에도 어류 또는 수산동식물류와 수산업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문장에 따라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¹⁰⁵⁾

이 법에서 보존과 관리(conservation and management)는 수산업에 관한 모든 규범, 규칙, 조건, 방법, 기타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재건설, 회복,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식량공급 그리고 다른 물품의 획득 및 휴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이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효과방지를 위한 조치와 수산자원의 미래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¹⁰⁶⁾

제2장은 미국의 수산동식물과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여 미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의 고도 회유성 어종을 제외한 모든 수산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관리를 선언하고 있다.¹⁰⁷⁾ 고도 회유성 어종이란 참치류, 새치류(녹새치·황새치·돛새치), 바다상어 등을 말한다.¹⁰⁸⁾ 미국은 1977년부터 미국 해안의 200마일 이내에 있는 수산자원은 연방정부의 관할에 두었고, 광범위한 지역관리체제가 미국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103) The term "fish" means finfish, mollusks, crustaceans, and all other forms of marine animal and plant life other than marine mammals and birds. 16 U.S.C. 1802(13)

104) 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수산물』이라 함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5) 16 U.S.C. 1802(13). The term "fishery" means - (A) one or more stocks of fish which can be treated as a unit for purpos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which are identified on the basis of geographical, scientific, technical, recreation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B) any fishing for such stocks.

106) 16 U.S.C. 1802(5) The te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fers to all of the rules, regulations, conditions, methods, and other measures (A) which are required to rebuild, restore, or maintain, and which are useful in rebuilding, restoring, or maintaining, any fishery resource and the marine environment; and (B) which are designed to assure that - (i) a supply of food and other products may be taken, and that recreational benefits may be obtained, on a continuing basis; (ii) irreversible or long-term adverse effects on fishery resourc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are avoided; and (iii) there will be a multiplicity of options available with respect to future uses of these resources.

107) 16 U.S.C. 1811(a).

108) 16 U.S.C. 1802(20). The term "highly migratory species" means tuna species, marlin (Tetrapturus spp. and Makaira spp.), oceanic sharks, sailfishes (Istiophorus spp.), and swordfish (Xiphias gladius).

주는 어획권을 할당하기 시작했다. 200마일 수산보존수역은 1983년 3월 10일 레이건 대통령의 포고¹⁰⁹⁾에 의하여 EEZ로 대체되었다.

제3장은 미국의 EEZ에서의 외국의 조업을 허용하는 방법을 조약과 국제수산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업은 외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적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¹¹⁰⁾

제4장은 8개의 지역 수산관리위원회(New England, Mid - Atlantic, South Atlantic, Caribbean, Gulf of Mexico, Pacific, Western Pacific, and North Pacific)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¹¹¹⁾ 위원회는 주의 주지사가 지명한 수산관리 담당 공무원, 미국 지방 수산청의 지역 담당 국장을 포함한 상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지역수산위원회는 10개 국가표준에 의거 연방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업 및 유어어종에 대한 수산관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s, FMPs)을 수립한다. 모든 수산관리계획은 국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평가와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청회를 거친 후 수정된 계획을 상무부에 제출하고 승인하면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이러한 계획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거나 수정된다. 지역 수산관리위원회는 상무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외국 국가에 허용할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며, 과학소위원회의 설치, 자문패널, 기타 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한다.

제5장은 수산감시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어선등록과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수집, 옵서버, 수산업조사, 부수어획조사, 수산업 체계조사, 멕시코만 도미 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3) 주요내용

(1) 파잉어획 금지와 자원회복

MFCMA가 1996년에 개정되어 지속가능 수산업법(SFA)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파잉어획과 고갈된 자원의 회복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109) Presidential Proclamation 5030

110) 16 U.S.C. 1821(d).

111) 지역 수산 관리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 III장과 16 U.S.C. 1853과 50 C.F.R. Subpart B -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600.105-155참조.

수산자원관리계획(FMP)은 목적과 어자원이 이미 과잉어획 되었을 때, 또는 과잉어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를 결정하는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SFA는 ‘과잉어획이 되고 있는(overfishing)’과 ‘과잉어획이 된(overfished)’이라 용어의 정의를 새로 마련하였다. ‘과잉어획과 과잉어획 된’이란 계속적으로 최대 지속가능 생산을 위협하게 하는 어류의 사망률 또는 수준을 의미한다.¹¹²⁾

또한 SFA에 포함된 수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단 근거가 되는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NS)이 개정되었다. 새로 추가된 국가 표준은 어선안전(fishing vessel safety), 어촌(fishing communities), 그리고 부수어획(bycatch)이다. SFA는 모든 개별 FMP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이 따라야 할 10개의 수산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¹¹³⁾ 법에서 상무부 장관은 수산관리 계획의 개발을 돕기 위한 강제력과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규정한다.¹¹⁴⁾ 이에 의거하여 NOAA 수산국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중에서도 NS 1(보존과 관리는 과잉어획을 방지하면서 미국수산업계가 계속적으로 최적 생산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¹¹⁵⁾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SFA의 새로운 자원회복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과잉어획(overfishing)은 어류 사망률이 FMP에 설정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어종이 규정된 생물학적 기준보다 낮은 경우 ‘과잉어획이 되었다(overfished)’고 판정하고 과학적 어종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과잉어획된 어종은 가능한 빨리 최적지속가능생산량(MSY)까지 회복시키고 종의 생태, 환경적 조건, 국제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년 이내에 회복을 시킨다.

상무부장관은 과잉어획이 되었거나 되고 있다고 결정을 하면 관련 수산관리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과잉어획을 방지하고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관리

112) 16 U.S.C. 1802 (29). The terms “overfishing” and “overfished” mean a rate or level of fishing mortality that jeopardizes the capacity of a fishery to produce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on a continuing basis.

113) 16 U.S.C. 1851(a)

114) 16 U.S.C. 1851(b)

115)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hall prevent overfishing while achieving, on a continuing basis, the optimum yield from each fishery for the United States fishing industry.

프로그램을 개정한다. SFA는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의회와 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수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보고하고 과잉어획이 되거나 과잉어획의 조건에 근접하는 수산업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¹¹⁶⁾

2003년 4월 NOAA가 미국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¹¹⁷⁾에 따르면 아직 과잉어획된 어종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자원이 회복한다. 구체적으로 66개 어종이 과잉어획되고 있으며 86개 어종은 과잉어획이 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 과잉어획된 어종 중에서 70개 어종은 회복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어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연방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자원회복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최근에 과잉어획이 되었다고 결정된 경우이다. 1997년에서 2002년까지 과잉어획은 26배가 넘는 과잉어획이 회복되었으며 생물학적 기준보다 20배가 넘게 자원이 회복되었다. 물론 자원이 과잉어획이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자원회복에 성공한 어종 중에는 상업적 또는 유어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서양 연어(Atlantic (Acadian) redfish), 가자미(Georges Bank winter flounder), 고등어(Gulf of Mexico king mackerel), 농어(and South Atlantic and Gulf of Mexico gag grouper) 등을 포함한다.

(2) 부수어획(bycatch)의 방지

부수어획이라 함은 조업 중 포획되었으나 판매되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버려지거나 법에 의하여 버려지는 것을 포함한다.¹¹⁸⁾ 그러나 유어과정에서 잡아서 산채로 놓아주거나 수산관리 프로그램 아래서 방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부수어획은 어류 및 바다거북은 포함되지만 해양 포유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116) 16 U.S.C. 1854. The Secretary shall report annually to the Congress and the Councils on the status of fisheries within each Council's geographical area of authority and identify those fisheries that are overfished or are approaching a condition of being overfished.

117) NOAA Fisheries, *Achievements in Marine Stewardship Since Passage of the Sustainable Fisheries Act of 1996*, <<http://www.nmfs.noaa.gov/docs/Headway%20Since%20SFA.doc>>.

118) 16 U.S.C. 1802. The term "bycatch" means fish which are harvested in a fishery, but which are not sold or kept for personal use, and includes economic discards and regulatory discards. Such term does not include fish released alive under a recreational catch and release fishery management program.

수산보존 및 관리에 관한 NS 9(국가표준 9)도 부수어획에 관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보존 및 관리조치는 부수어획을 최소화하고 부수어획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수어획으로 인한 치사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⁹⁾ 그리고 모든 FMP에는 수산업에 발상하는 부수어획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보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¹²⁰⁾

SFA에서는 부수어획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임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경을 왕래하는 어종의 부수어획의 문제는 국제적인 협조 없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NOAA에서는 SFA에서 부수어획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으며 1998년 부수어획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인 「국가부수어획관리(Managing the Nation's Bycatch)」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부수어획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어구와 관련된 기술과 어류의 행태에 대한 연구 등임을 밝혔다. NOAA는 현재까지 이러한 권고를 지역청과 과학센터를 통해 이행하고 있다.

(3) 어류 필수 서식처(Essential Fish Habitat)

어류 필수 서식처(EFH)는 어류가 산란, 부화, 먹이 섭취 및 성장을 통해 성숙하는데 필요한 수역을 말한다.¹²¹⁾ SFA에서는 각 지역 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어류의 필수 서식처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필수 서식처에서 조업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모든 연방 행정기관은 필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NOAA와 협의한다. NOAA는 이러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EFH에서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

현재까지 EFH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43개의 FMP에서 약 1000여종의 EFH가 지정되었다. 주기적으로 EFH에서의 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 FMP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NOAA에서는 연방 행정기관들과 정기적으로

119) 16 U.S.C. 1851(1)(9).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A) minimize bycatch and (B) to the extent bycatch cannot be avoided, minimize the mortality of such bycatch.

120) 16 U.S.C. 1853(a) (11).

121) 16 U.S.C. 1802 (10).

협상을 하여 EFH에 대한 협의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그러나 EFH를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미국 EEZ 수역과 주의 관리 수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역에서 1000종이 넘는 어류에 대한 정보와 서식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의 부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구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NOAA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FH는 지속가능한 어족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식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종과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적 특성에 바탕을 둔 관리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4) 어구·어법

미국 수산업의 어구·어법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¹²²⁾ 즉 매그너슨 스티븐스 법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50 C.F.R. 600.725에 의하면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구의 사용과 어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업에서 포획된 어류는 어업과 어구가 일치할 때에만 보유할 수 있다. 목록에 있는 어구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어업인이나 어선은 FMP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 8개 지역수산관리위원회별 어업의 종류, 어업이 수산관리계획의 대상여부, 그리고 어법을 자세히 규정한다.

뉴잉글랜드는 현재 24개 어업이 규정되어 있고 이중에서 11개의 어업이 FMP의 대상이며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서양 바다 가리비는 FMP의 대상이지만 아이슬란드 가리비어업은 FMP의 대상이 아니다. 대서양 바다 가리비는 저인망, 트롤, 맨손, 유어어업의 대상이지만 아이슬란드 가리비는 저인망과 트롤을 사용해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

122) 50 C.F.R. 600.725.

〈뉴잉글랜드 어업의 종류 및 어법〉

뉴잉글랜드 수산관리위원회	
1. 대서양 바다 가리비아어업(Atlantic Sea Scallop Fishery) (FMP):	
어 법	어 구
A. 저인망 어업(Dredge fishery) B. 트롤어업(Trawl fishery) C. 맨손어업(Hand harvest fishery) D. 유어어업(Recreational fishery)	A. 저인망(Dredge) B. 트롤(Trawl) C. 맨손 포획(Hand harvest) D. 맨손 포획(Hand harvest)
2. 아이슬란드 가리비아어업(Iceland Scallop Fishery) (Non-FMP):	
어 법	어 구
A. 저인망 어업(Dredge fishery) B. 트롤어업(Trawl fishery)	A. 저인망(Dredge) B. 트롤(Trawl)

업종이 가장 많은 지역수산위원회는 중부대서양수산관리위원회로 28개 업종이며, 가장 적은 위원회는 카리브 해 수산관리위원회로 7개 업종이다.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업종이 28개이면 포획하는 어종도 28개 어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부대서양 수산관리위원회의 대서양 고등어, 오징어, 셋돔어업(Atlantic Mackerel, Squid, and Butterfish Fishery)의 경우 3개 어종이 하나의 어업에 포함된다. 그리고 대서양 참치, 상어 등 3개 어업은 장관이 관리한다.

(5) 수산 연구

SFA을 개정하면서 가장 변화가 많았던 부분은 제4장을 신설하여 수산업의 조사연구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다.

가. 수산정보 시스템(Fisheries Information System)

NOAA에서는 52백만 달러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수산정보시스템(FIS)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가 수산정보시스템은 데이터의 질 향상, 기술과 데이터의 통합, 주와 연방정부간의 자료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같

이 광대한 나라에서의 국가 수산정보의 통합은 품질보증, 품질통제, 안전, 입어, 기술혁신 향상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NOAA도 FIS로 인해 미국 수산업의 생물학적, 경제적인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정책 및 수산업 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수산 옵서버 (observer) 프로그램

감시자 즉 옵서버 프로그램은 위에서 설명한 부수어획을 최소화하기 위한 NOAA의 노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 옵서버는 수산과 관련된 가장 객관적이고 양질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수적인 어획에서 옵서버의 데이터는 총 어획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NOAA는 현재 옵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어업의 수를 13개 어업에서 26개 어업으로 확대하였다.

옵서버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으나 옵서버를 늘리는 것은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우선 옵서버의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옵서버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형어선에 승선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옵서버 비용은 승선일당 500에서 2000달러로 상당히 비싸지만 옵서버의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인 충원과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어획량이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고 어획이 비교적 일정한 어업도 있고 편차가 많은 어종도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대중적인 어종은 적은 승선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특이한 어종은 모든 조업에 승선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NOAA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6) 개인별 조업 쿼터

가. 공유자원의 사유화

개인별 조업 쿼터는 제한된 입어체제에서 개인이 받거나 배타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총 허용어획량의 퍼센트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위 또는 단위들로 나타난 양의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연방허가를 말한다.¹²³⁾ 많은 연구자들은 공

123) 16 U.S.C. 1802(21). The term "individual fishing quota" means a Federal permit under a limited access system to harvest a quantity of fish, expressed by a unit or

유자원인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주장했다. 그 중에서 공유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산자원을 사유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게 된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어업인은 어업에서 장기적인 재산적 권리를 가지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¹²⁴⁾ 이러한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게 개방입어(open access)를 포기하고 조업 권리를 기존의 어업인에게 개인이 양도할 수 있는 쿼터 또는 ITQ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분배하면 수산자원이 회복한다.¹²⁵⁾

다른 연구자들은 ITQ의 이행 및 집행이 어렵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¹²⁶⁾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의 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나. ITQ의 도입

NOAA는 1996년 SFA가 통과되기 전에 개인별 양도가능 쿼터(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를 개발하여 시행했었다. 중부 대서양에서 대합(Ocean Quahog Clam)과 해방조개(Surf Clam) 등 패류에 대하여 ITQ를 실시하였고, 북태평양의 넙치(Hailbut)와 은대구류(Sablefish)에 대하여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ITQ와 관련하여 쿼터 소유권의 집중과 다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열띤 논의 끝에 의회는 ITQ의 명칭을 개인별 조업 쿼터(individual fishing quota, IFQ)로 변경하였다. 또한 의회는 IFQ의 신설을 4년간 금지하였고 그 후 기간을 2002년 3월까지 연장하였다.¹²⁷⁾ 이러한 IFQ의 금지는 알래스카 어업인들이 IFQ가 확대되는 경우 워싱턴 주의 대형 트롤업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알래스카 상원의원인

units representing a percentage of the total allowable catch of a fishery that may be received or held for exclusive use by a person. Such term does not include community development quotas as described in section 1855(i) of this title.

124) Carrie A. Tipton, Note, Protecting Tomorrow's Harvest: Developing a National System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to Conserve Ocean Resources, 14 Va. Env'tl. L.J. 381, 397 (1995)

125) Bonnie J. McCay, *ITQ Case Study: Atlantic Surf Clam and Ocean Quahog Fishery*, in *Limiting Access to Marine Fisheries: Keeping the Focus on Conservation* 75, 79 (Karyn L. Gimbel ed., 1994)

126) Grant Monk & Grant Hewison, *A Brief Criticism of the New Zealand Quota Management System*, in *Limiting Access*

127) 16 U.S.C. 1853(d)(1)(A).

Ted Stevens를 통해 로비를 한 결과이다.¹²⁸⁾

의회는 새로운 IFQ의 신설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제한된 입어 시스템 허가에 대하여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부 대서양의 패류 및 북태평양의 넙치와 은대구류의 ITQ는 계속 허용하였다.¹²⁹⁾ 의회는 IFQ의 할당이 특정 집단이나 대규모 어업자에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IFQ를 매입하는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용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초로 IFQ를 매입하여 진입을 하는 경우에도 용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와 장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IFQ를 제출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국가 과학 아카데미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검토와 개정을 위한 절차와 필요조건들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집행과 읍서버의 활용 등 관리 방안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초기 할당이 되도록 하여 특정인에게 과도한 IFQ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연간 어획량의 일정부분을 최초로 어업을 개시하는 사람과 소형선박 소유자, 어선원들에게 할당 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³⁰⁾

(7) 재정지원

SFA는 IFQ 매입 재정지원, 수산업 재난 구호 프로그램, 감척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가. IFQ 매입 용자

북태평양 FMC는 소형어선 소유자나 수산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어업인에게 대출보증을 해주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회는 5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알래스카의 넙치와 은대구의 IFQ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매년 한도를 다 소진하고 그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다. 용자는 어업인들로 받은 IFQ 비용의 25%를 대상 어업인에게 용자하는 것인데 알래스카에서는 총 25백만 달러를 용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인이 소형어선에 의한 어업이 아니며, 경험이 많고 숙련되어 있어 이러한 용자 프로그램에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128) John McQuaid, *Fisheries Overhaul Act Passes in Senate*, *New Orleans Times-Picayune*, Sept. 20, 1996, at A1.

129) 16 U.S.C. 1853(d)(2)(A),(B).

130) 16 U.S.C. 1853(d)(5).

나. 수산업 재난 구제

이 프로그램은 수산자원의 재난으로 인한 상업적인 수산업의 실패에 대한 구제로 비용의 75%까지 보조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수산자원의 회복, 장래의 실패 예방, 수산 지역사회 원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NOAA에서는 현재까지 12회의 상업적 수산업 실패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재난보조금은 119백만 달러에 이른다.

다. 기 타

NOAA에서는 어획능력을 증강시키는 신규 어선 개조에 대하여는 용자하지 않지만 중고어선의 이전과 개량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고 있으며 양식시설등에 대한 용자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감척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BSAI 명태 조업에 대한 감척사업으로 15백만 달러의 지원을 하여 시가 90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조업능력을 제거하였다. NOAA에서는 게(crab) 조업 어선에 대한 감척을 계획하고 있다. 의회는 최근 대서양의 저서어종 어업과 뉴잉글랜드 지방의 특정 수산업에 대한 용자 예산을 승인하였다.

4. 지역수산위원회와 수산관리계획(FMP)

1) 개 요

미국 「수산 보존 및 관리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8개의 지역수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수산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NOAA에 자문을 하고 주요사항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서 수산관리에 있어서 숙련도와 전문성을 활용함이 장점이다. FMP는 지역수산위원회나 장관이 작성한다.¹³¹⁾ 장관은 수산관리계획의 개발을 돕기 위해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¹³²⁾ 수산관리계획이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은 수산자원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가표준과 일치한다.¹³³⁾

131) 16 U.S.C. 1853(a).

132) 16 U.S.C. 1851(b).

133) 16 U.S.C. 1851(a).

2) 지역수산위원회

(1) 설 치

현재 New England, Mid-Atlantic, South Atlantic, Caribbean, Gulf of Mexico, Pacific, Western Pacific, and North Pacific 등 8개의 지역수산관리위원회의 관할범위가 법에 규정되었다.¹³⁴⁾ 각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 관할 해안 지역의 여러 지역 구성원의 관심이 반영된다. 장관은 뉴잉글랜드, 중부대서양, 남대서양, 걸프, 카리브 지역위원회 등 1개 이상의 지역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는 고도회유성 어종의 어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2) 구 성

가. 투표권을 가진 위원

각 지역 수산관리위원회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① 주의 최고 해양수산관리책임자와 주지사가 지명하는 각 주(State)의 전문가, ② NMFS의 지역국장 또는 국장이 지명하는 사람(2인 이상의 국장이 있는 경우 장관이 지명), ③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이다.¹³⁵⁾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상업적 어업 및 유어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직업과 경험, 과학적인 전문성, 교육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관은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임명이 되도록 해야 하며 상원의 상업, 과학, 교통위원회와 하원의 해양수산위원회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임명을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지역수산관리 위원을 주지사가 제출한 명단에서 임명한다. 명단은 주지사가 지역 수산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여 만들어야 하며 이력서와 개인이 위원으로서 적합한 사유를 첨부한다. 장관은 명단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주지사에게 통보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각 개인은 법에 규정된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까지 임명될 수 없다. 장관은 위원의 업무 개시 45일 이전에 임명에 대한 공표를 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때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연임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인 위원의 임명

134) 16 U.S.C. 1852(a)(1).

135) 16 U.S.C. 1852(b)(1).

절차는 전임자의 임명절차와 같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태평양위원회에 부족 정부가 제출한 3명 이상의 인디언 부족 후보 명단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부족간의 순환하여 임명한다.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 2/3이상이 서면으로 근거를 첨부하여 해임건의를 하거나, 수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청문기회를 제공한 후에 해임할 수 있다.

나. 투표권 없는 위원

각 위원회의 투표권이 없는 위원은 ① 미국어류 및 야생동물청 지역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② 지역 해안경비대 사령관 또는 그의 지명자, ③ 해양수산위원회의 국장 또는 그의 지명자, ④ 국무부 대표자 또는 그의 지명자이다. 그리고 태평양위원회의 경우 알래스카 주지사가 임명하는 투표권이 없는 1인의 위원이 추가로 있다.

(3) 보수와 의결정족수 등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보수를 지급받는다.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위원으로 하며 1명 이상의 위원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참석하여 투표를 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각 위원회는 행정직원을 임명할 수 있고 연방직원이 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장관은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 각 지역위원회는 과학, 통계위원회와 자문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4) 기 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관할 수산업에 대한 FMP와 수시로 필요에 따른 개정 FMP를 장관에게 준비 및 제출
- ② 외국인 어업허가 신청과 FMP와 개정 FMP에 대한 의견 준비
- ③ 모든 이해관계자가 FMP의 개발과 수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사항과 이행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의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공청회 개최

- ④ 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보고서와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다른 관련 보고서의 제출
- ⑤ 최적생산, 미국 수산가공업자의 능력과 범위, 외국인 조업의 총허용수준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적절한 개정
- ⑥ 기타 법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행위와 위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다른 업무 수행

3) FMP의 내용

(1) 필수 규정

위원회나 장관이 수산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모든 수산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① 해외 어업, 미국 어선의 어업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존과 관리조치
- ② 선박의 수, 사용 어구의 형태와 양, 어류의 종류와 위치, 관리비용, 수산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실질적, 잠재적 소득, 수산업의 휴양을 위한 이익, 외국 어업의 본질과 정도, 인디언 조약 어업권을 포함한 수산업의 설명
- ③ 최대지속가능생산과 최적생산을 위한 현재 및 장래 수산업의 조건 평가와 구체화
- ④ 최적생산을 달성하는 연도별 미국 어선의 어획능력과 범위, 미국어선이 어획하지 않아 외국 조업이 가능한 최적생산 부분, 미국 수산가공업자의 연도별 능력과 범위의 평가 및 구체화
- ⑤ 어구의 형태 및 양, 어획되는 어류별 수 및 중량, 어획장소, 어획시기, 미국 어류가공업자의 추정가공능력과 실제 가공능력을 포함한 상업, 유어 어업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제출되는 관련 정보의 구체화
- ⑥ 기후나 기타 안전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의 조건 때문에 어획이 금지된 어업 평가에 관한 해안경비대와 관계자 등과 협의한 임시조정의 고려와 제공
- ⑦ 장관에 의하여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필수 어류서식처에 대한 기술 및 확인, 조업에 의한 필수 어류서식처에 대한 실질적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및 필수서식처의 보존과 증강을 장려하기 위한 다른 행위의 확인
- ⑧ 1991년 이후에 검토를 위해 장관에게 제출된 수산관리계획의 경우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의 본질과 범위의 평가 및 구체화

- ⑨ 계획 또는 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이나 어촌지역의 참여자 등에 대한 보존 및 관리조치의 영향의 평가, 구체화, 서술
- ⑩ 계획이 적용되는 어업이 과잉 어획된 경우 확인을 위한 목표 및 조치 기준의 구체화, 과잉어획조건 또는 과잉어획에 근접하고 있는 경우 과잉어획의 방지와 과잉어획의 종료를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
- ⑪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어획의 형태와 양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보고방법의 설립과 부수어획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수어획에서 치사율을 최소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보존 및 관리 조치
- ⑫ 유어 어업 중에 어획 또는 산채로 방생되는 어류의 형태와 양의 평가, 어류의 방생 관리 프로그램과 치사율, 치사를 최소화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 조치
- ⑬ 상업적, 유어 어업등의 형태 기술과 관리 수산자원의 양륙 경향 수량화
- ⑭ 전반적인 어획을 감소시키는 회복 계획, 다른 보존 및 관리조치와 어획제한·회복 이익을 상업적 유어적 수산업자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2) 재량 규정

조업과 관련한 위원회와 장관에 의하여 작성되는 수산관리계획에는 ① 어업자, 선박의 운영자, 가공업자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허가 수수료의 지불, ② 조업이 제한 또는 불허, 특정형태의 어선에 대한 허가, 특정 형태와 수량의 어구의 사용수역과 기간, ③ 어류의 포획(지역, 종류, 크기, 수량, 중량, 성별, 부수어획, 기타 요소), 어류의 판매, 환적 또는 수송 등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특정 제한 설정, ④ 특정 형태·수량의 어구, 어선 및 장비의 금지, 제한, 조건, 필요사항, ⑤ 조업지역에 가장 가까운 연안주정부와의 협조, ⑥ 수산업의 참여, 역사와 관행, 경제 등을 고려한 최적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수산업에 대한 제한된 접근 체계의 설립, ⑦ 가공업자에 대한 수산업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⑧ 1명 이상의 옵서버의 승선 요구, ⑨ 소하성어류의 보존 및 관리조치의 평가 및 구체화, ⑩ 부수어획 수준과 부수어획으로 인한 치사율의 수준을 저감하기 위한 어구 사용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존과 관리조치, ⑪ 과학조사에 사용하기 위한 총 생물학적 어획부분의 유보, ⑫ 수산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사항, 조건, 제한의 기술 등이 포함된다.

(3) 위원회의 관할과 FMP

뉴잉글랜드와 중부 대서양 위원회, 중부대서양과 남부 대서양 위원회, 남부 대서양과 멕시코만 위원회의 관할범위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¹³⁶⁾ 만약 수산업이 2개 이상의 위원회 관할에 속하게 되면, 장관은 하나의 위원회로 하여금 FMP를 마련하도록 하거나, 공동으로 FMP를 만들도록 할 수 있다.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 투표권을 가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다수결로 채택된다. 공동으로 FMP를 만드는 경우 행정적으로 주도를 할 하나의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공동 FMP를 만드는 경우 하나의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FMP에 대하여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장관은 1개의 위원회를 지정하여 FMP를 마련하도록 하거나 장관 직권으로 FMP를 만들 수 있다.¹³⁷⁾

(4) 규칙의 제안 및 검토

위원회는 수산관리계획과 개정계획과 함께 수산관리계획과 개정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히 필요한 규칙을 장관에게 제출한다. 위원회는 수산관리계획과 개정계획이 승인된 후에 어느 때라도 수산관리계획과 개정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여 장관에게 수정안을 제출한다.

장관은 즉시 제안된 규칙을 FMS 또는 개정계획, 수정계획, 기타 법령에 일치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이 긍정적이면 평가를 개시한지 15일 이내에 연방관보에 공표하며 15일에서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한다. 제안이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장관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러한 불일치에 대하여 통보를 하고 수정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을 있다.

장관은 의견 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규칙을 공표해야 한다. 장관은 제출된 규칙을 수정하기 전에 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연방관보에 초안과 최종 규칙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게재한다.

136) 50 CFR 600.105

137) 50 CFR 600.110

(5) 장관의 FMP 검토

위원회가 수산관리계획이나 계획 개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즉시 (5일 이내) 계획 또는 개정안이 국가표준, 관례법령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며 연방관보에 계획 또는 개정계획을 열람하고 서면에 의한 정보, 견해, 의견을 장관에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한다. 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정보, 견해, 제출의견을 고려하고, 외국인의 조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무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해상에서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해안경비대와 협의한다.

장관은 의견 제출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획을 승인, 불승인 또는 일부 승인을 한다. 불승인 또는 일부승인을 할 때에는 계획 또는 수정계획이 불일치하는 법률조항, 불일치의 본질, 계획 등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권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장관이 30일 이내에 승인, 불승인, 일부 승인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획이나 개정계획은 승인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장관이 불승인 또는 일부승인을 하면 위원회는 계획이나 개정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4) 장관의 권한

(1) FMP 작성

장관이 국가 표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어느 어업에 대한 수산관리계획 또는 개정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권한을 가진 수산위원회가 장관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보존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어업에 대한 계획 또는 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 ② 장관이 계획을 불승인 또는 일부승인을 하거나 개정계획에 대한 불승인 후에 위원회가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때, ③ 법령에 의하여 장관에게 계획 작성권한이 부여된 때이다.¹³⁸⁾

장관이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공청회를 하고 외국인 조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안경대의 관할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장관이 위원회의 권한인 어업에 대하여 위원회 투표위원의 2/3의 찬성이 없으면 개인조업쿼터와 같은 접근제한 체계를 설립하지

138) 16 U.S.C. 1854(c)(1).

못한다. 연방관보 게재와 의견 제출기간의 부여 등은 각 위원회가 계획을 작성할 때와 같다.¹³⁹⁾

(2) 허가 비용의 설정

장관은 법에 의하여 허가료를 징수하는 경우 규칙에 의하여 수수료의 수준을 설정한다. 장관은 주정부와 협력적인 협의를 체결하여 주가 허가 체계를 권장하도록 하며 허가 체계에 의하여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주정부에게 귀속시킨다. 허가 수수료는 허가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¹⁴⁰⁾

장관은 허가수수료 외에 IFQ 프로그램과 총 허용어획량을 할당하는 지역개발 쿼타 프로그램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징수한다. 그러한 비용은 어획한 어류 가치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양륙 시, 양륙보고서 제출 시, 어기 중 판매할 때, 또는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에 징수한다.

징수한 비용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한접근체계행정기금(Limited Access System Administration Fund)에 귀속된다. 장관은 주가 신청하는 경우 지역개발쿼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징수되고 제한접근체계행정기금에 귀속된 비용의 33%까지 그러한 프로그램 관리·집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주정부에 이전한다.

(3) 과잉어획관련

장관은 매년 의회에 각 위원회 지역의 과잉어획된 또는 과잉어획상태로 근접하고 있는 어업에 대한 보고를 한다.¹⁴¹⁾ 장관은 언제든지 과잉 어획된 어업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과잉어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며 영향을 받은 어종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존 및 관리조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위원회에 대한 통지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¹⁴²⁾ 과잉어획이 확인된 지역의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수산관리계획, 계획 개정, 규칙 안을 준비한다.

139) 16 U.S.C. 1854(c)(4)-(7).

140) 16 U.S.C. 1854(d)(1)

141) 16 U.S.C. 1854(e)(1)

142) 16 U.S.C. 1854(e)(2)

5) 수산협상 패널

수산협상패널(Fishery Negotiation Panels, FNP)은 1개 이상의 지역 위원회로서 장관의 수산 보존과 관리 조치의 개발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자문 위원회이다.¹⁴³⁾ 수산협상패널이 설치되는 경우는 수산보존과 관리 조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고, 보존과 관리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해관계자간에 균형 잡힌 대표자들에 의해 신의에 따라 협상에 임하여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수산협상패널은 설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설치기간은 1회에 한하여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협상패널의 설치가 위원회의 수산관리계획의 개발과 규칙제정을 지원시키지 않으며 비용이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수산협상패널의 설치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¹⁴⁴⁾ 수산협상패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를 임명하여 사회를 보도록 하고 토론과 협상을 돕게 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게 한다. 위원회 또는 NMFS는 수산협상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연방관보에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한다.

위원회 또는 NMFS는 수산협상패널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관리조치를 개발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의 사용 여부는 위원회 또는 NMFS의 재량사항이며 사용의무는 없다.

143) 50 C.F.R. 600.750.

144) 50 C.F.R. 600.751.

제 4 장 부문별 쟁점분석 및 입법사항

제 1 절 수산업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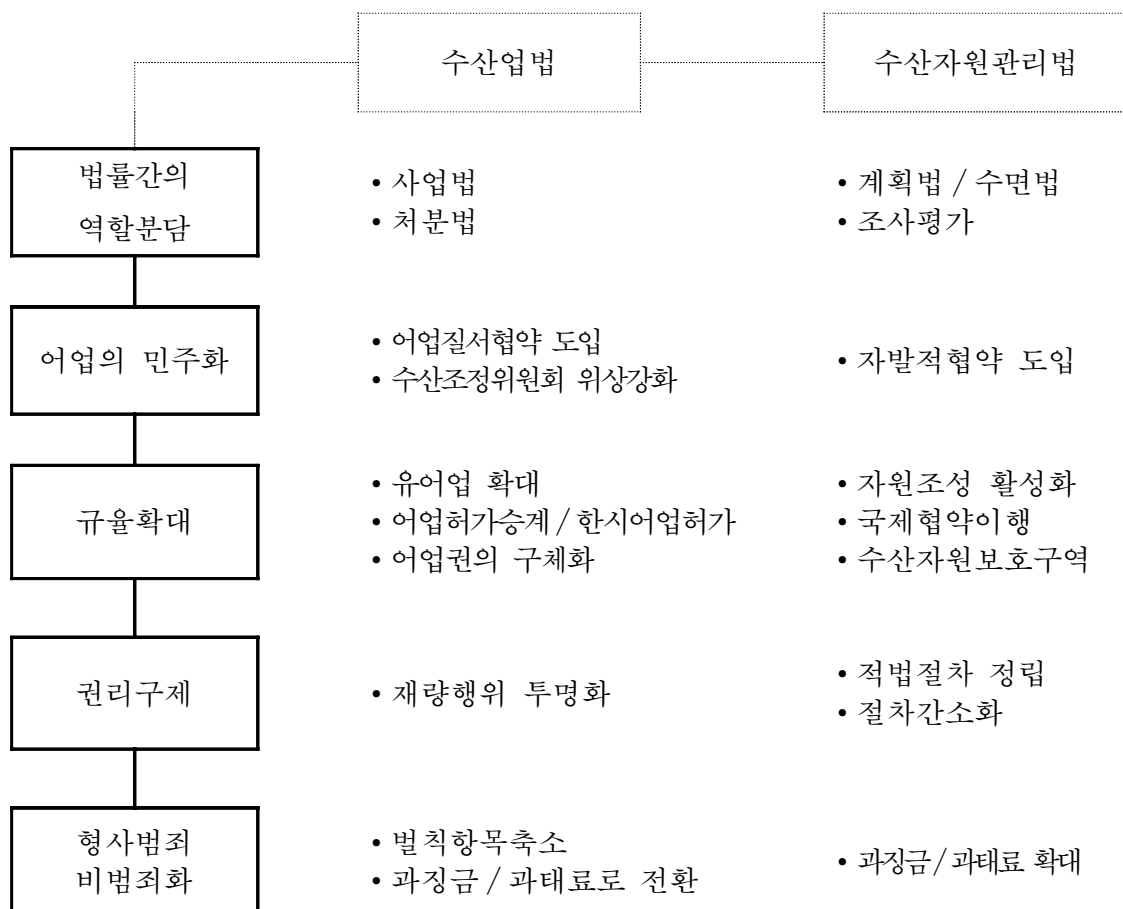
1. 총 칙

□ 쟁점사항

*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변화된 수산업의 여건을 반영한다면, 수산업법이 지향하는 이념 내지 목적이 문제된다. 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육성과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두 측면을 안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은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측면을 안고 있다.

수산법제 정비의 특징



수산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법적 측면은 수산자원의 보전 내지 관리라는 보전법적 측면과 상충된다. 후자는 감시자의 법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행 수산업법에서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부분을 떼어내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한다면, 목적 조항(수산업법 제1조)에서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라는 구절이 삭제되어야 한다.

* 어업의 민주화

수산업법(제1조)은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두 가지 목적으로 표방한다. 이 중 “어업의 민주화”라는 구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민주화”라는 용어는 봉건적 수탈구조나 자본주의적 착취구조의 청산 또는 억압적 노사관계로부터의 탈출을 표상한다. 현행 수산업법중 “민주화”라는 이념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정부의 “자의적 지배”가 이루어질 소지를 안고 있는 면허어업(제2장)과 허가 및 신고어업(제3장) 그리고 어업조정(제5장)등이다. 물론 면허의 금지(제11조)와 어업의 제한 및 조건(제12조) 그리고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제34조)과 면허어업의 취소(제34조) 등에서는 자의적 행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민주화”라는 정치적·선언적 용어를 구사하기보다는 “법치국가”원리 내지 “적법절차”원리가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 정의 규정의 합리화

- 어장 : 현행 수산업법은 종래 종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중첩되는 정의 규정들을 안고 있다. 예컨대, 현행 수산업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제2조제4호), 어장관리법은 면허어업을 하는 수면뿐만 아니라 해상종묘생산어업(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과 구획어업(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하는 수면까지 어장에 포함시킨다(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 이러한 논리구조 때문에 수산업법이 규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제4조)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어업을

경영하는 어장만을 개발하는 계획에 그친다.

- 어구 : 맨손어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업이 어구를 사용한다. 어구는 어법을 좌우한다. 흔히 사용되는 어망도 어구에 해당한다. 어떠한 어구와 어법을 구사하는가의 여부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업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특정어구의 사용을 금지하고(제5조), 그 물코의 규격을 제한하고(제6조), 어구의 규모를 제한하며(제6조의2),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한다(제6조의3). 동령은 어구 사용금지구역과 기간도 규정한다(제7조). 그러나 현행 수산업법은 “어구”에 관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어구·어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저해한다.
- 어업권 : 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의 본질과 어업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정치하게 재단하지 못한 결과 어업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업”이라고 규정하므로(수산업법 제2조제2호), 어업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은 “어업권”에 해당한다. 논리상 “어업권”은 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수산업법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어업권이라고 정의한다(제2조제6호). 허가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와 신고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는, 수산업법의 규정대로라면,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 즉 권리가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이 빚어진다.
- 유어업 : 현행 수산업법은 기성의 법체계를 고수한 결과 새로 전개되는 사업의 범주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법은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되(제57조 본문),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동조단서).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장려하기 위하여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을 규정한다(제8조). 레저의 일환으로 유어가 많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수산업법은 유어를 하나의 “업”으로서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 적용수면의 법적 성질 :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채취가 이뤄지는 “수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률로서는 수산업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이 있다. 1953년의 수산업법은 그 적용범위를 “공공수면”으로 특정하면서도(제3조), 공공수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971년의 수산업법(제2조)은 “공공수면”(제6호)을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호소·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정의함으로써 “바다”가 공공용의 수면임을 명시하였다. “공공수면”이라는 용어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상정하는 “공유수면”과 일치하지 아니하지만¹⁴⁵⁾, 양자의 개념범위는 중첩된다. 수산업법은 1953년의 제정법 이래 “어업의 민주화”(제1조)라는 이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바다를 공유수면관리법과 달리 “국유”라는 명시적 개념을 피하면서 “공공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바다”라는 동일한 적용수면에 대하여 공공수면/공유수면을 혼용하는 법집행실태를 감안하여 1990년의 수산업법은 정의 규정(제2조)에서 “공공수면”을 삭제하고 적용범위에서 “바다·빈지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 동법을 적용한다(제3조)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간격을 없앴다. 공유수면관리법은 1997년의 개정법(제2조)까지는 바다를 “국유”로 열거하였으나, 1999년의 개정법(제2조)에 이르러 공유수면을 “①바다와 바닷가 ②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종전의 열거주의를 벗어나 바다와 바닷가의 “공공성”을 정립하였다. 따라서 현행 수산업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연계하여 해석하면, 바다와 바닷가 또는 인공조성 육상의 해수면은 “국유의 수면”이 아니라 “공공용의 수면”에 해당한다.

□ 입법사항

* 목 적 :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수산자원의 관리는 수산자원보호법으로 특화시킨다. 어업인의 지위향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아 “어업의 민주화”라는 목적을 절차의 적정화로 전환시킨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어업의 민주화” 구절을 삭제하고, 목적 구절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추가한다.

¹⁴⁵⁾ 1961년의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은 “공유수면”을 海·河·湖·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고 <u>민주적 절차에 따라</u>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업과 <u>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u>을 목적으로 한다.</p>

* 정 의 : “어장”의 개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어구”의 개념을 새로 정의한다. “어구”라 함은 어획효율이나 어로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유인·포획 또는 채취 등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도구 기타 설비를 말한다. “유어업”을 어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한 영역이 되도록 추가한다. 유어장업이라 함은 유어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때 “유어장”이라 함은 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어업권의 면허가 “특허”인 점을 감안하여 어업권의 개념을 특허권의 경우와 같이 구체화시킨다. 즉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정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한정된 구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생략) 3. “양식” (생략)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5. “해외수역” (생략) 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입어” (생략) 8. “어업인” (생략)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u>유어장업</u>·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 (현행 제2호와 같음) 3. “<u>유어장업</u>”이라 함은 <u>유어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u> 4. “<u>유어장</u>”이라 함은 <u>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u> 5. “양식” : (현행 제3호와 같음) 6. “바닷가” : (현행 제9호와 같음) 7. “해외수역” : (현행 제5호와 같음) 8. “어장” : (현행 제4호와 같음) 9. “어업권” : (현행 제6호와 같음)
--	--

<p>9. “바닷가” (생략) 10. “유어” (삭제)</p>	<p>10. “입어” : (현행 제7호와 같음) 11. “어업인” : (현행 제8호와 같음) <u>12. “어구”라 함은 어획효율이나 어로능 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유인·포획 또는 채취 등에 직·간접으 로 사용되는 도구 또는 그 밖의 설비 를 말한다.</u></p>
--	---

2. 면허어업

□ 쟁점사항

* 어업권의 본질 : 현행 수산업법상의 면허어업 제도는 실체적·절차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에도 규범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정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학상 수산업법의 면허어업권은 자원특허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수산자원에 대한 면허는 헌법(제120조)상 자연자원에 관한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면허“설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고 면허“해지”에 의하여 소멸된다. 면허에 기초한 자연자원 이용권은 변호사나 의사에 대한 면허처럼 일신 전속적이고 종신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연자원의 여건과 경제상황 및 종사 인구의 규모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한시적 권리이다. 국가는 수산자원의 상황과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업에 관한 면허를 설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업인들은 면허어업권을 - 때가 되면 자동갱신되는 - 일신 전속적이고 종신적인 사유재산권으로 인식한다.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수산업법 제15조제2항)는 명문규정은 이러한 면허권의 私權性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정부 당국은 어장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잠재적 권리자들의 어장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면허의 권리성을 완화시키고 면허의 설정과 해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면허어업권의 사권성에 대한 어업인들의 뿌리깊은 확신 때문에 정부 당국의 노력은 수포에 그친다. 면허어업권의 강력한 권리성에 억눌린 당국자들은 허가어업 내지 신고어업에 내재하는 권리성마저 부인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우리 나라 판례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한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이 개정·시행된 후에 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사안에서 어업면허의 법적 성질을 특허로 보고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어업면허권자가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새겼다.¹⁴⁶⁾

동 판결에 의하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허어업에 있어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손실보상의 발생원인이 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이 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법률적용에 관한 원칙을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수산업법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연장신청의 불허가처분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령은 당연히 개정된 현행 수산업법이다.

또한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고, 면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동일한 점,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과 어업면허의 취소만을 보상사유로서 규정하고 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보상사유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

146)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손실보상금】

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와는 달리 이를 근거로 하여 면허기간 내의 어업을 제한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사유로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 기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이를 보상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일본 판례에서는 어업권을 물권으로 보지만, 토지의 경우와 달리 특정의 어업을 영위할 권리 즉,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행하는 권리가 아니고, 수면을 지배 또는 점유할 권리는 아니라고 새긴다.¹⁴⁷⁾ 또한 수면의 소유권이 아닌 것도 물론이다. 원래 해면이나 하천과 같은 공유수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어업권자에게 보상하고 바다를 샀다”라는, 마치 어업권은 “토지와 같은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에 대하여 명확히 회답한 것이 1986년(소화 61년)의 아이치현 田原港干潟 소송에서 “바다는 이른바 공공용물이고, 국가의 직접적인 공법적 지배관리에 속하고 특정인에 의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의 상태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¹⁴⁸⁾ 판례이다. 또한 최근의 다이빙과 어업권의 관계에 대하여 “공동 어업권을 가지는 어업협동조합이 어업권설정해역에 있어 다이빙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잠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그 지불이 없는 경우에 다이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판례도 있다.¹⁴⁹⁾

* 어업권의 물권성 : 우리 나라 수산업법(제15조제2항)은 일본 어업법[제23조 : “어업권은 물권으로 보며,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과 마찬가지로 “어

147) 소화 9(1934)년 4월 7일 大審院판결 ‘어업관계판례총람 39면’, 소화 28(1953)년 7월 15일 28水 제5835호 수산청장관 통지 ‘어업의 면허와 수면사용관계법령에 대하여’

148) 日本 소화 61(1986)년 12월 16일 最高裁 판결 ‘어업관계판례총람·속권 82면

149) 日本 평성 8(1996)년 10월 28일 東京高裁 판결 ‘판례타임스 925호 264면

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의 효력에 관하여 많은 오해를 빚는다. 그러나 어업권의 내용은 어장이라는 특정수면에 있어 일정한 내용의 어업을 영위하는 권리로서 일반의 유체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어업법(제23조)은 “(물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우리 나라 수산업법(제15조)은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물권이다”로 새기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물권으로 한다”는 표현은 “물권으로 본다”는 표현과 같은 취지이다. “물권”으로 보아 생기는 어업권의 효력으로서 우선 어업권의 내용인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그 가운데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의 어떠한 物을 빼앗긴 경우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권리이고 어업권의 경우는 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할 여지는 없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어업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를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권리, 방해예방청구권은 이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이다. 면허어업은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과 다르다.

법률상 어업권은 물권으로 보는 이외에 수면의 이용은 물권 중에서도 비교적 토지의 이용과 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과는 달리 직접수면을 이용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토지이용과 수면이용은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효과로서는 ① 등록에 의하여 대항요건이 발생하고, ②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③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④ 민사소송법등의 적용에서 부동산물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 등이다. 어업권에는 본래 소재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어업법(제51조)은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이 속하는 시정촌을 부동산소재지로 본다.

헌법체계에 따른 어업권의 구체화

항 목	실정법규		구체적 내용	
어업권 (§2 : 제6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경영권)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자원을 배타적으로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재산권	(전속권) (공공성) (이용권)
어업권의 성질 (§15 ②)	물권으로 간주	(물권성)	· 저당권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판례법의 내용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준용	(보상관계) (분쟁해결)	· 토지보상법보상 · 수산업법 보상 · 재산권소재지	· 보상2원화 · 재판적

* 수산자원의 범주 : 현행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제1조)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정의가 없다. 수산업법은 수산자원이라는 포괄적 개념 대신에 “수산동식물”이라는 용어를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어업”(제2조제2호)을 정의한다. 어획물 운반업의 허가(제46조)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사전허가(제48조)를 규정하면서도 “어획물” 또는 “수산물”에 관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수산업법과 (가칭)수산자원관리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생물자원 > 수산자원 > 수산물 > 수산동식물 > 어획물 등에 관한 개념과 범주의 체계화가 요청된다.

* 수산자원의 법적 성질 :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무주물설 · 국유설 · 공공용물설이 대립한다. 수산업법은 1953년의 제정법 이래 2002년의 개정법에 이르기까지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침묵을 지킨다.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의 법적 성질은 어업의 면허 · 허가 내지 수산자원관리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산자원의 법적 성질 여하에 따라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의 범위가 달라진다.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의 법적성질은 기본법인 헌법(제120조)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지만, 실증적으로는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들이 서식하고 또 이에 대한 포획·채취가 이뤄지는 수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수면의 법적성질과 그 안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들의 법적 성질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전자는 후자에 영향을 미친다.

수산동식물의 법적 성질과 이를 포획·채취하는 행위의 한계는 수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의 수면”에 서식(회유를 포함한다)하는 수산동식물은 무주물이거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용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산동식물을 무주물이라고 볼 경우에는 민법상 “선점”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의 헌법(제120조)은 수산자원을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국유의 원칙을 포기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인하였다.¹⁵⁰⁾ 수산자원 내지 수산동식물은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한다. 만약 수산자원을 국유물로 해석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임의에 따라 어업인들로부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빚어진다. 또한 실정법이 관습법상의 입어권을 수용하는 구조를 설명할 수도 없다.

* 면허의 설정·갱신 : 면허어업권자는 2004년 현재 총어업인의 3% 정도를 차지한다. 제도적 보장에 의한 면허어업의 강력한 물권성에 비추어 면허어업권자들의 경영능력이나 마케팅 또는 경쟁질서가 뒤떨어진다. 면허기간의 만료와 함께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공공성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요건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장·어선 등의 관리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또 어획량 등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한 어업인에게는 면허갱신

150) 1948년의 건국헌법(제85조)은 “광물 기타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수산자원”이 “국유물”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1954년의 헌법(제85조)은 종래의 “국유” 조항을 삭제하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등에 대한 법률관을 바꾸었다.

때 순위하향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행정지원상 보조 등의 수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 협동양식어장의 경영권 : 현행 협동양식어업과 마을어업을 포함하는 종전의 공동어장은 자연산 관리에 한정함으로써 1995년 개정법 당시 생산량이 일반 어장의 10%에 그쳤다. 어촌계들은 공동어장의 채취권을 “빈매”로 넘기고 생산량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댓가를 받음으로써 어장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였다. 어구는 주로 갈쿠리〔형망〕 정도가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양식이 가능한 수면에서는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동양식어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에서 경영하는 협동양식어장들은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협동양식어장의 경영권을 영어조합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면허어업의 허가어업화 : 일부 면허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조류양식어업과 패류양식어업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해조류와 패류 양식어업은 2004년말 현재 97개 수협에 의하여 경영될 뿐 어촌계나 개인들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례가 없다. 특히 해조류양식어업의 경우에 대단위 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어업으로 전환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허가어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해상종묘생산어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협이 어민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협에 양식생산량 조절과 품질관리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어업권의 상실 :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빈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마을어업 면허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는 관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불이행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실효한 것으로 본다 / 관할 행정기관은 실효된 어업권에 대하여 면허의 갱신 또는 보상 등을 거절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의 배제 : 면허어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우선순위 배제대상(법 제13조제7항)에…“어획량 보고의무 불이행자, 어장·어선 관리의무 불이행자”를 추가하여야 한다.

□ 입법사항

- * 어업의 제한 및 조건(법 제12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그 면허의 부여가 이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수역등의 조정을 해치거나, 수산자원관리수산자원관리법(안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반하거나, 동법(안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정수의 제한에 걸리거나, 동법(안 제42)의 규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결정과 배치될 때에는 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p>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12조 (면허의 조건 또는 사전적 제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을 면허하는 경우에 <u>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이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이행 또는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각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공익에 필요한 때에는 그 면허에 <u>조건 또는 제한</u>을 붙일 수 있다.</u></p>
---	--

- * 면허어업권의 성질(제15조) : 면허어업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과 다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어업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를 중지하도록 청구하는 권리, 방해예방청구권은 이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이다. 어업권은 물권으로 보는 이외에 수면의 이용은 물권 중에서도 비교적 토지의 이용과 그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업권을 토지소유권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효과로서는 등록에 의한 대항요건을 인정하고 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③ 민사소송법등의 적용에서 부동산물권과 같은 취급을 받도록 한다. 어업권에는 본래 소재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어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이 속하는 시·군·구를 재산권소재지로 본다.

* 면허어업의 사후적 제한 등(제34조) : 현행 제34조제1항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후적 제한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한다. 특히 제1항제5호의2에 규정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별도의 항으로 분리시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행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은 체계로 정리한다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① 공익상의 필요, ②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③ 어업질서의 유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각각의 일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한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의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p>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5의2.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6.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7.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p>②·③·④·⑤ (생략)</p>	<p>제34조 (면허어업의 제한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때 2. 제8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율질서협약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3. 선박의 항행·정박·계류나 기상악화·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때
--	--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u>어업활동상 안전사고의 예방등을 위하여</u>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제적 어로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관리수역 또는 특정수역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때</u> 2. <u>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어로한계선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때</u> 3.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4.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p>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u>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u>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2.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p>④·⑤·⑥ (생략)</p>
--	---

3. 허가 및 신고어업

□ 쟁점사항

* 허가의 우선순위(법 제41조제4항)

1991년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다.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시·도별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또는 보호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 규칙 제5조제2항 참조]은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였고(제1항), 선순위자들이 어업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경영 경험이 있는 자 등에게 차순위로 허가하였다(제2항).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신청 수면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제3항).

차순위자들 사이에 동순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이 지역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였다(제4항). 그러나 이 규정(규칙 제10조)은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 10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어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어업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등에 우선순위에 관한 합리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 : 현재 개별적·산발적으로 실시되는 어업허가(법 제43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선 또는 어구를 기준(법 제41조)으로 삼아 「어업의 종류」별로 일제갱신[센서스]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청회 등을 거쳐 관계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칙으로 기준년도를 설정하고 잔여기간의 인정원칙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어업허가의 승계** : 원칙적으로 어업허가의 승계를 인정하되 잔여기간만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허가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어선의 구입 등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의 승계는 “감척” 정책과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의 승계가 곤란한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어선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배의 수명이 거의 종료될 때에는 새로운 어선의 구입 등을 허가할 수 없다.

* **어업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제45조의3)** : 현행 수산업법은 제12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어업허가에 대하여(제45조) 준용하고 있으나 면허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허가에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나 수산업법에 적절한 위임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근거 그리고 조건 또는 제한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조업구역의 세분화** : 시·도지사 허가어업(법 제41조제2항)의 경우에 섬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섬 주위에 다른 지역 어선들이 입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 수산업법에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 한시 어업허가 : 회유성 어류 등 바다에 한꺼번에 다량으로 출현하는 이른바 “일시 다확성” 어류에 대한 특별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하여 어선의 신규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겸업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 입법사항

* 한시어업허가(제41조의2)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시 다확성 어류에 대하여 한시어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한시어업허가는 근해어업허가 또는 연안어업허가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다 /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서는 수산자원관리법(안)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규)	<p><u>제41조의2 (한시어업허가) ①행정관청은 회유등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 일시 다량으로 출현하는 어류에 대하여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자원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과 별도로 한시어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의 어종·구역·기간·한도·방법·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u>③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을 별도로 관리한다.</u></p>
-------	--

*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제41조의3)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종류별로 묶어 기준연도를 정하고 어업허가를 일제히 부여·갱신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어업 및 해상종묘생산어업을 종류별로 묶어 기준연도를 정하고 어업허가를 일제히 부여·갱신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어업을 종류별로 묶어 기준 연도를 정하고 어업허가를 일제히 부여·갱신할 수 있다 / 어업종류별 기준연도는 수산업법의 부칙에 별표로 정한다 / 기준연도 이전의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어업허가는 기준연도까지만 존속

한다 / 기준연도에 이르기까지 잔여기간이 남아 기준연도에 새로 받은 어업허가는 그 기준연도를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신 규)	<p><u>제41조의3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 ①어업허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매 2년마다 어업허가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는 다음 각 호의 1을 대상으로 한다.</u></p> <p>1. 어업허가증은 있으나 어선이 없는 경우</p> <p>2. 어선이 항·포구에 [2년] 이상 방치된 경우</p> <p>3. 어선이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p> <p><u>③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후에 해당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정비전에 어업허가를 받았던 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④어선의 유무확인, 방치기간의 계산 및 조업상황의 조사방법과 정비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	---

* 어업허가의 승계(제43조의2) : “어업허가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잔여허가기간 동안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정당한 승계에 대하여서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지배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잔여수명이 [5]년 미만인 어선 또는 조세체납이나 담보권의 실현 등으로 강제집행절차에 계류된 어선에 대하여서는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 규)	<p><u>제43조의2 (어업허가의 승계)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상속하거나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어업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u></p> <p><u>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압류·가압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할 수 없다.</u></p>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상속 또는 승계된 경우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등도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본다.</u></p>
-------	--

* 어업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제45조의3) : “어업허가의 조건 및 사전적 제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마련한다. 현행 수산업법 제45조의 준용 규정에서 정한 면허에 관한 제12조의 준용을 별도 규정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부령에 규정하는 허가의 조건 또는 제한의 한계(범위)를 구체적으로 모법에 명시한다.”

(신 규)	<p><u>제45조의3 (허가의 조건 또는 사전적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조사 및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허가의 조건 또는 사전적 제한을 정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제한은 연근해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 조업구역·어로한계선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나 어선의 규모별로 어구·어법 및 표지부착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u></p>
-------	--

4.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 쟁점사항

* 업종의 범주 : 현행 수산업법(제2조제1호)상의 수산업은 생산(어업)과 가공(수산물가공업) 및 유통(어획물운반업)의 개념을 담고 있다. 산업분류상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제조업에 해당하고 또 어획물운반업은 수산물유통업에 해당한다. 제조와 유통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수산업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산물제조업은 “생산으로서의 어업”과 제조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어 당분간 “수산물가공업”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 어획물의 해상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어획물운반업은 상법상 일반 유통과 구분이 어려운 수산물유통업으로 확장할 실익이 없어 종래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 상품가치의 향상과 유통질서의 정착 : 수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유통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산물의 규격화를 추진하고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의 해당 규정들을 수산물품질관리법등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어업의 근절과 유통질서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칙 포획·채취물의 판매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 입법사항

-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제28조)의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및 수산물의 규격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상품가치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시킨다.

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실용적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보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목별 규격 및 재질(제1호), 비규격품의 사용의 제한(제2호),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제3호) 및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제4호)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수산물의 규격화 추진 :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제28조의2)의 규격화 추진 조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정착과 소비자 신뢰보호에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의2(수산물의 규격화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어업질서의 유지등

□ 쟁점사항

- * 어업질서 규정과 자원관리 규정의 분리 :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규정에는 어업질서의 규율 내지 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구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의 역할분담〉

※ 수산자원관리법 : 전체 산업(어업) 구조의 조정 지향

※ 수산업법 : 개별 기업[어업인 개인] 어업경영의 합리화 지향

☞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구조조정 차원 ⇒ 수산자원관리법(허가항목과 요건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에 존치)

* 장(제5장)의 제목 변경 및 체계 개편 :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제52조)등 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허가정수 등의 결정(제54조)등 어획노력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제54조의2)등 어획량에 관한 사항 등 수산자원관리 규정들을 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관시킴에 따라 수산업법에는 조업수역의 조정(제53조)이나 면허·허가·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제57조)등과 같은 어업질서에 관한 사항을 남기고 ;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제23조)등과 같은 어업질서에 관한 사항 및 위생기준 등(제18조의2)과 같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장(제5장) 전체가 어업질서와 위생기준 등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장(제5장)의 제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어업허가증 등의 휴대 :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어업허가증 등의 휴대가 필요하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은 조업 중에는 대한민국 영해 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업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취지로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 내에 위치하는 어선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공문서들을 휴대할 것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례로서는 영국의 1995년의 해상법을 들 수 있다.¹⁵¹⁾ 영국 수산업법의 근간을 이루는 1868년의 해양어업법(the Sea Fisheries Act 1868) 제26조는 모든 어선들에게 어선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휴대하도록 요구하는데 최근에 개정된 1995년의 해상법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314조 제2항 별표 13의 제2호는 이 취지를 승계하였다.

151)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2002 Reissue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Note, p.530

* 유어장업 : 유어장업은 유선을 이용하는 일반 유어와 달리 “유어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토대로 유어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영업으로 한다. 물론 해면에서의 ‘유어’라는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종래는 어업의 관점에서, 이것과 어장에 있어 경합하는 수산동식물의 채포행위는 모두 유어로 취급하였다. 즉 어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어업을 위한 시험연구·교육실습을 위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이외의 행위는 모두 이 경우의 유어의 범주로서 포괄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어장의 조정을 도모함에 어업의 관점에서 “어업자가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업종사자가 어업자를 위하여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시험연구 혹은 교육·실습을 위한 경우 이외의 모든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를 말한다.¹⁵²⁾ 그러나 최근 국민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유어는 국민의 건전한 레저의 수단으로 위치를 갖게 되었다. 때문에 유어를 종래와 같이 어업의 관점이 아니라 유어의 관점에서 취급하여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유어의 내용으로는 낚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해면에서는 이밖에 조수채집(潮干狩), 잠수, 후릿그물, 산대, 투망 등이 있다. ¹⁵³⁾

□ 입법사항

* 대체 입법사항 : 어업허가증 기타 공문서의 휴대의무를 신설(현행 제5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대체)

* 수산업법 준치사항 : 수산업법 중 다음의 규정들은 어업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전대로 수산업법에 준치시킨다.

- 조업수역 등의 조정(제53조)
- 유어장의 지정 등(제55조) : (부분개정후)(조문제목변경) → “공동유어장”
-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75조): 수산자원관리법에도 같은 규정 필요
- 자원의 조사·보고(제77조) : (조문제목 변경) → “어업실적보고”
-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제57조)

152) 日本 昭和 47(1972)년 5월 4일 水漁 제3111호 수산청장관통지 ‘해면에서의 유어와 어업의 조정에 관하여’

153) 金田禎之, 前掲書 : pp.118~120

- 시설물의 철거 등(제58조)
 - 표지의 설치·보호(제59조)
 - 감독(제60조)
 -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제61조)
 - 어업감독공무원(제62조)
 - 사법경찰관(제63조)
- * 수산자원관리법 이관사항 : 수산업법 중 다음의 규정들은 자원관리수단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시킨다(수산자원보호령상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각종 제한 또는 금지는 이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시킨다).
- 허가정수 등의 결정(제54조)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제54조의2)
- * 수산자원보호령으로부터의 흡수사항 :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중 다음의 규정들은 어업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법규명령 사항이므로 이를 수산업법으로 흡수한다.
-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제18조의2)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제18조의3)
 -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제27조)
 - 특정 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제6조의3)
 -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제23조)
 - 어선의 사용제한(제23조의2)
 - 어선의 설비(제24조)
- * 일반유어장업(제55조의2) : 유어장업이라 함은 “유어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유어장이라 함은 이 법(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현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어장(제55조)은 이를 공동유어장으로 명명하여야 한다.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아니면서 유어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시장진입자에 의한 유어장은 이를 “일반유어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p>(신 규)</p>	<p>제55조의2 (일반유어장) ①어촌계·지구별 조합 또는 유어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 아닌 공유수면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현황,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유어장의 수요공급 상황,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관리 여건, 대상 수면의 권리관계 및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어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어장에 대하여서는 제55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유어장업의 관리(제56조) : 유어장업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종래의 (공동)유어장이 외에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이 아닌 일반인이 일반유어장을 경영할 경우에 등록·시설·영업 등에 관한 관리규정과 의무반시의 규제수단 등이 필요하다. 유어장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보험가입[또는 공제조합]의 강제와 같은 장치도 필요하다.

<p>(신 규)</p>	<p>제56조 (유어업의 관리) ①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유어장 또는 일반유어장에서 유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어장이 위치한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업의 우선순위·시설규모·안전관리·등록기준·존속기간·갱신기준 및 위탁관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유어업의 등록사항·등록방법·서식 또는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④관할 시·도지사는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관할 시·도지사는 유어업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6. 보상 및 보조

□ 쟁점사항

- * 보상 및 보조의 통합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9조)상 어선척수의 조정 등 어업구조조정에 따르는 지원과 수산업법(제34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에 따르는 보상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의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등을 통합하여 (가칭)어업보상 및 재해대책법을 제정하자는 입법의견도 있다. 그러나 보상과 보조 부문의 입법사항들은 통합법으로 제정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다. 어업보상과 재해보상의 원리가 다르며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 수산업법상의 보상 범위가 더욱 축소된다.
- * 휴업보상의 제한 : 일부 어업인들은 보상만을 기다리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은 어업계속의무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휴업실태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휴업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할 경우에 휴업실태에 관한 입증책임을 행정관청에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수산업법(제87조)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보상·보조 기타의 지원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휴업 등의 당사자 귀책사유를 고려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 경영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 수산업법(제87조)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19조)상의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상의 “지원”과 다른 관점에서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금 융자의 기준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다. 근대법은 평등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개념을 모르지만 수산업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개념을 상정하여 지원제도를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운용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어업경영에 대한 능력과 책임 정도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 입법사항

* 보상체계의 정비(제81조) : 면허어업에 대한 적용요건과 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한 적용요건을 경우(제81조제1항제1호를 분법)에 따라 달리 규정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어업 보상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어업 보상의 적용 법조를 구분한다(제81조제5항의 신설).

입법기술상의 이유로 현행 제81조제1항제1호의 단서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를 삭제함이 바람직스럽다. 현행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그리고 신고어업 모두에 대한 원칙적 보상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양식은 해석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행 제81조제1항제1호를 제1호(면허부문)와 제2호(허가 및 신고 부문)으로 분할하고 기존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p>제81조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p>	<p>제81조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1. <u>제3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u></p>
---	---

<p>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u>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때</u></p> <p>2. <u>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항행·정박·계류로 인하여 제한되는 때</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u>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때에는 그 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	--

* 차등지원 : 수산업법(제87조)에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 외에 “어업질서협약(제87조의2)의 이행결과를 고려하여” 자금 등을 차등지원할 수 있음을 추가로 규정한다.

<p>제87조 (보조 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 (자금의 지원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때 제8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질서협약의 이행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심사기준·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 어업질서협약 : 어업에 관한 자율관리지원은 이를 수산자원 관리부문과 어업질서 유지부문으로 구분함이 바람직스럽다. 수산업법은 후자를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을 규정한 현행 수산업법 제72조는 이를 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관시키고 동 규정 중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규약...” 부분을 수산업법에 존치시켜 어업질서협약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 규)	<p>제87조의2 (어업질서협약) ①행정관청은 어업인단체등과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효력과 적용범위 및 이행확보방안은 그 협약에서 정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항목·체결방법·참가주체 및 체결절차등에 관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7. 수산조정위원회

□ 쟁점사항

* 조직 명칭 및 기능상의 변화 가능성 : 1963년의 수산업법상의 수산심의위원회를 승계한 현행 수산업법(제89조)의 수산조정위원회는 그간 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68조)에서 비민주성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운영(법 제91조)에서 편의주의가 문제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행 수산업법(제1조 목적)상의 “어업의 민주화”라는 이념은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안)에 설치될 (가칭) 수산자원관리위원회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위원회의 구성 : 장기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연직 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비중을 줄이고 어업인의 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별 어업인 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 등은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을 일정 수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협조합원들이 어업인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수산업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위원회의 운영 : 현행 수산업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제 90조제1항)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어업 별·시도간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수동적 기능의 수행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설치 목적(법 제89조)에 걸맞게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법 제90조제1항제2호)를 넘어 능동적·적극적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입법사항

*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의 특화 : 수산업법의 전문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안)의 신규 제정에 맞추어 그 기능을 수산업정책의 심의와 어업질서의 조정 등으로 특화

*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경우에 정원(21명)을 법률에 규정하되 해양수산부 대표(1인)과 수협 대표(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인)를 위촉직으로 하고 지역별 어업인 대표(15인)를 선출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에 정원(17인)과 구성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역시 법률에 정원(15인)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시행령에 위임한다.

*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 : 수산조정위원회의 자율적·적극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위원들의 자율적 발의권을 확대하며 ; 각급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어업정책의 건의, 심의 또는 조정에 필요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

(신 규)	<p><u>제91조의2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수 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u>②수산조정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하여 활동한다.</u></p>
-------	--

	<p><u>③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u>④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정책의 권고나 심의 또는 어업조정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u>⑤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u></p>
--	---

8. 보 칙

□ 쟁점사항

- * 어업자율관리 : 각급 수산조정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민주적 운영이 전제된다면 참여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어업질서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구별 수협을 중심으로 협의회 등을 조직하여 어업질서의 정착을 위한 어업자율관리협정 또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등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 : 현행 수산업법은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과징금(제91조의2)·과태료(제98조)와 같은 경제적 제재조치들을 규정한다. 징역 또는 벌금은 전과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기 때문에 어업 등을 유지하게 하면서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경제적 조치는 비범죄화 내지 제재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면허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다른 제재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수산업법상의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산정기준을 구체화시키고 부과수준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 권한위임의 합리화 : 현행 수산업법(제92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다(제2항). 이에 따라 수산업법시행령(제73조)은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위임 또는 위탁은 그 권한의 남용이나 해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어야 한다. 법리상 철회 가능성이 도출되지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의 요건과 효과를 새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입법사항

* 어업자율관리 : 어업인은 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어업자단체 등에 참여하여 어업인의 이익을 옹호할 권리를 가지며 어업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어업인은 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어업자단체등의 결정에 따라 어업자율관리 협약 또는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같은 협약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 규)	제87조의2 (어업질서협약) ① <u>행정관청은 어업인단체등과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효력과 적용범위 및 이행확보방안은 그 협약에서 정한다.</u>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항목·체결방법·참가주체 및 체결절차등에 관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	--

* 과징금·과태료의 합리화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서 명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얻은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이익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업 중단 등의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대상 중 민사처벌로 돌릴 수 있는 조항들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한다. 과징금의 수준에 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규제 영역에서는 과징금이 고액화 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어촌경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p>제91조의2 (과징금처분) ①행정관청은 제 34조제1항제6호·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p>	<p>제91조의3 (과징금처분)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u>그 행정처분등으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1. 제34조제3항(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인 등</p> <p>2. <u>제1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u></p> <p>3. <u>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u></p> <p>4. <u>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u></p> <p>5. <u>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유어장을 운영한 자</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징금의 수준·산정방법·납부방법 및 부과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생략) ④ (생략)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및 그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위임의 철회 : 원론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수입·수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임·위탁을 철

회할 수 있다/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철회 전에 형성된 권리와 의무는 그 철회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위임·위탁을 철회당한 기관 또는 단체는 철회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임·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아닌 대안으로 제시한다.

9. 벌 칙

□ 쟁점사항

* 형사범죄의 비범죄화 : 현행 수산업법은 무허가 어업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제94조), 허위·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95조). 형사처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죄질이 나쁜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 형과 같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은 되도록이면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치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제96조)에 대하여서는 징역형을 폐지하여 단기 자유형의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 처벌의 합리화 : 현행 수산업법의 벌칙규정이 불법의 정도를 불문하고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위반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차 과벌되어 어업인 다수가 전과기록을 보유하게 된 사회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하여서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권함으로써 법집행 효율을 높이고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거운 위반행위나 누범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산업법의 규범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입법사항

* 형사처벌대상의 축소(제95조) : 형사범죄의 비범죄화라는 관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수산업법 제95조의 제2호·제4호·제5호를 과징금(제91조의3) 부과대상으로 전환시킨다. 아울러 다른 규정들과 처벌이 중복되거나 처벌이 불필요한 제7호·제9호·제10호를 삭제한다.

<p>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8. 삭 제 9. 제73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 	<p>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삭 제)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삭 제) 5. (삭 제) 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u>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u> 7의2.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 및 어선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7의 3. 제57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자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	--

제 2 절 수산자원관리법제

1. 총 칙

□ 쟁점사항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어장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조업과 경영 그리고 기술개발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 FTA 체제에 적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어장 환경의 악화와 어업기술의 발전 및 어업경영 여건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체계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 입법사항

* 목 적 :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

* 정 의 : 수산자원보호령의 정의를 원용하되 순서를 바꾸고, 수산자원조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념을 신설.

면허 중심의 “어장”의 개념에 관하여는 실정법 규정이 사회통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수산업법제가 자원관리와 수산업경영으로 체계가 크게 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종전 실정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

* 적용범위 : 내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고, 내수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원하는 소하성 어종에 대하여 까지 본법이 미치도록 규정을 신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관리법에 편입시킬 경우에는 수면을 에워싸고 있는 인근의 육역에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행위제한을 규정

*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설정 :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한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

2.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쟁점사항

200해리 시대를 맞이 하여 한국·일본 또는 한국·중국 등 국제간의 어업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조업질서를 정착시키는 한편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자원의 조사 및 평가를 포함한 자원회복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입법례] 日本 2001년의 수산기본법(제11조)상 「수산기본계획」, 참조
현행 법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 또는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총허용어획량의 일정량을 어업자에게 배분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의 시행 발판을 마련하였다. 어획 허용량의 할당은 어업자별·업종별 또는 어법간의 이해 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및 총허용 어획량에 관한 규칙에 할당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입법사항

* 자원의 조사와 평가 : 자원의 조사와 평가는 모든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전제적 사실이 되므로 이 장의 처음에 위치

* 기본계획 : 자원의 조사와 평가를 기초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 [입법례] 미국 지속가능수산업법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 MSA)의 수산자원관리계획(FMP), 참조

* 시행계획 : 시행계획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어획량·어획노력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방하고 다른 법률상의 계획들과의 조화 원칙을 천명

* 이행점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매년 점검

3. 수면의 지정 및 관리

□ 쟁점사항

현행 수산업법(제7장)은 자원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보호수면과 육성수면을 규율하고 있다. 보호수면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수산업법(보호수면의 지정: 제67조)과 시행령(보호수면의 지정: 제55조) 그리고 보호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목적: 제1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신청: 제2조, 의견제출: 제3조, 공고: 제4조)을 두고, 보호수면의 관리(법 제68조) 및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제69조)를 규율한다.

육성수면에 관련하여서는 수산업법으로 육성수면을 지정하고(제70조), 시행령(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 제56조,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제57조)과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목적: 제1조, 육성수면의 지정요건: 제2조, 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 제3조, 육성수면지정의 공고: 제4조, 육성수면관리자의 지정: 제5조,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9조)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보호수면과 육성수면에 관한 수산업법상의 이러한 관리체계는 모두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 입법사항

- * 수면지정 : 수산자원관리의 1차적인 제한으로서의 수면 지정
- * 행위제한등 : 보호수면과 자원관리수면의 지정과 관리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
- * 다른 수면과의 관계 : 육성수면과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성격이 사실상 중복 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원관리수면”으로 통칭
- *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이관

수산자원보전지구는 국토계획이용법상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지정된 용도지정으로써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여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구역이며, 수산자원관리수면은 기르는어업육성법상 인공어초시설수면 및 바다목장수면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면으로써 그 지정목적이 서로 다르다. 물론 양자의 기능이 다르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바다”라는 공간을 건설교통부가 ‘국토’라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의 일환으로 규율함은 “해양”이라는 공간관리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새로운 국토계획이용법 체계에서는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맡기고 국토계획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원의 보호와 관리

□ 쟁점사항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은 그 한계가 육지연안에 근접함으로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에 조업구역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져 왔다. 자원이 대체로 풍부했던 시기에 설정되었던 포획금지체장 규정은 현재도 거의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기호도가 높은 일부 어종(삼치·청어 등)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종의 포획금지체장 규정은 1976년에 삭제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 입법사항

- * 원 칙 :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서는 기술적 사항들이 대부분이므로 법률로서는 보호와 관리의 근거 및 대강을 규정하고 그 실질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 구역에 대한 제한(안 제18조 및 제19조) : 특정어업에 대한 금지구역의 설정은 허가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안)에 규정
- * 기간에 대한 제한(안 제19조 및 제20조) :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은어와 가리비의 포획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기간제한 추가
- * 어구·어법에 대한 제한(안 제24조 내지 제27조) : 그물코의 규격제한과 어구의 규모제한 내의 그물코 규격제한이 중복되므로 그물코 규정을 삭제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양 조문의 성격이 자원보호와 허가관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를 병존시키고 어구실명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어종에 대한 제한(안 제21조·제23조·제28조 및 제30조) : 소하성어류, 포획금지체장·체중, 대게 및 붉은대게암컷, 어란 및 치어, 멸종위기수산동물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

* 긴급보호명령(안 제22조) : 일정한 구역의 특정 어종 또는 희유성 어종의 어획량이 격감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평가의 결과 특별한 자원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어업이 허용되는 구역(제18조), 어구사용이 허용되는 구역 및 기간(제19조), 포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 및 기간(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일정 어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설정하거나 체장·체중·어구 및 어법을 제한하는 긴급명령 발동

5. 어획노력량의 관리

□ 쟁점사항

현행 수산업법 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는 어업허가의 정수 등을 결정할 때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허가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허가정수를 감척사업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감척은 자원에 대한 영향이 큰 업종부터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할 경우, 허가요건으로서 어업활동실적(출어실적, 어획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업자는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업종별 허가정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산업법의 위반이 만연하고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완책이 필요하다.

* 어구실명제 : 그물 가격이 싸지면서 낚은 그물을 버리거나 조업 중에 암초 등에 걸린 그물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늘어 해양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수산동식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 생산자책

임의 원리와 제품의 전과정평가(LCA)와 같은 개념을 어구에 원용하여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이나 어선은 파기되거나 수명을 다한 어구를 수거하여 합법적으로 폐기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어구를 누가 관리·이용하는가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실명제가 필요하다.

실명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 실명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어구를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할 수 있는 법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법률이 실명 표시의 부착을 의무화시킬 경우에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그 어구[재산]에 대하여 법으로부터의 보호를 포기하였다(out of law 法外放置)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명표지의무 위반자는 어업질서를 교란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입법사항

- * 원 칙 :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양적 제한을 규정
- * 노력량의 관리 : 톤수, 마력수, 허가정수, 선복량, 어구의 규모(크기 및 사용량) 제한이라는 어획노력량의 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강한 규범력을 부여
- * 연 계 : 감척 및 휴어제와 연계
- * 어구실명제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실시
 -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어구를 다 사용한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을 부담
 -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조업 중 훼손되거나 일실된 어구를 회수할 책임을 지며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부담금을 납입
 - 실명의 표시가 없는 어구는 "무주물"로 간주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어촌계 등에 대집행을 의뢰

6. 어획량의 관리

□ 쟁점사항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수산업법(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 어업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 안에서 어업 여건, 어업 종사자의 수, 어업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 어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한다(제27조의2 제4항). 어획허용량의 할당은 어업자별·업종별 또는 어법간의 이해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및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규칙에 할당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그 할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입법사항

- * 어획량의 관리 :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령상의 규정이외에 기존 수산업법상의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규정을 모범으로 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수 이관하여 장을 재구성
- * 제도적 연계 : 초과어획, 부수어획 및 옹저버 제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 제도들이 벌칙 내지 감척과 연계되도록 배려
- * 실효성의 확보 : 특히 옹저버(감시·감독)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근거 및 보장규정이 필수

7. 자원의 조성

□ 쟁점사항

종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해중림조성사업, 인공어초사업, 인공종묘방류사업 및 바다목장사업이 부분적 또는 시험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기구[자원조성센터]의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련법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산만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

축이 미흡하다.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전국적 사업들을 네트워크화시키고 관련기구 또는 단체들을 참여시켜 투자와 노력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체계화가 요청된다.

□ 입법사항

- * 사업주체 : 각 사업의 실시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 * 개념정의 : 각각의 조성사업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서 정립
- * 사업내용 : 각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
- * 인공어초시설
- * 해중림조성
- * 인종종묘방류
- * 바다목장사업 : 위의 세가지 사업을 종합하고 보충하는 개념으로 이해

8.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

□ 쟁점사항

수산자원의 관리는 행정관청 중심의 하향식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어업인과 관련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종래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와 새로 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안)의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론상으로는 전자의 명칭을 어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후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안에서는 법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라는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

□ 입법사항

- * 위원회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시·도자원관리위원회,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기타 전문단체의 조직과 업무에 관하여 규정
- * 전문위원회 : 위원회 내에 특히 총허용어획량 등에 관하여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를 설치

9. 보 칙

□ 쟁점사항

수산자원의 관리는 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 내지 단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 수립된 시책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명령과 통제형 규범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입법사항

- * 포 상
- *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 * 준용규정

10. 벌 칙

□ 쟁점사항

수산업법의 벌칙내용이 기준으로 될 것인바, 현 수산업법의 벌칙규정이 불법의 정도를 불문하고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위반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차 처벌되어 어업인 다수가 전과기록을 보유하게 된 사회현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현장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다수의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제고하고, 중범죄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규범력을 강화하는 등 벌칙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 입법사항

- * 형사처벌 : 징역 · 벌금
- * 경제적 제재 : 과징금 · 과태료

제 5 장 재량행위 투명화

제 1 절 재량권행사 근거규정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행정청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는 하나 현행 법령에는 재량행위의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식으로 행정청이나 이의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행정청에 의해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나아가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한 영역에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유발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기준을 마련되었는바, 다음과 같다.¹⁵⁴⁾

1. 요건규정에 관한 정비기준

1) 불확정개념에 관한 정비기준

(1) 문제점

○ 현행법령상 처분의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경우로써, 재량권행사의 요건·기준이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령의 해석·적용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큼

(2) 정비기준(명확성의 제고)

가. 명확성의 기준

- 수범자가 불확정개념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 불확정개념의 적용을 받는 집단중의 평균인을 기준

154) 상세는 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2005. 2. 참조.

-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이 없을 것
 - 행정기관 스스로도 불확정 개념의 의미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여 법령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입법기술에 의한 구체화 가능성이 더 이상 없을 것
 -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명확성제고를 위한 정비기준

① 불확정개념의 구체화

- 불확정개념을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취지, 관련규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념으로 구체화함

② 개념정의를 통한 보완

-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정의규정을 두어 불확정개념을 설명·예시함

③ 불확정개념의 예시

- 불확정개념을 세분하거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시함

④ 불확정개념의 계량화

- 당해 재량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양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불확정개념은 계량화함

⑤ 해석규정의 정립

- 상위법령에서 불확정개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상위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거나 해석규칙(법령의 해석에 관한 행정규칙)을 정립하도록 함

(3)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법령의 현황

○ 공익상

법령명		내용	비고
수산업법	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요건	

○ 정의규정 신설

법령명		내용	비고
수산업법	제 2 조	“어구”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4) 정비대상

<p>수산업법 제60조 (감독) ②행정관청은 <u>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

- 쟁점사항 :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화
- 정비방향 : 어업인등에 대한 교육, 수산시설물의 관리, 수산물의 유통질서, 해상안전조업 또는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p>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 조의2 (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u>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u> 이를 조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p>
--

- 쟁점사항 :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구체화
- 정비방향 : 다른 면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지장이...

2) 포괄적 위임에 관한 정비기준

(1) 개 요

○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헌법 제23조제3항·제37조제2항 등), 재량행위의 성격이 침해적 행정작용인 경우,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총리령·부령)에 위임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즉,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규정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규율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단계의 하위규범에 규정될 수 있음

○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의 범위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임¹⁵⁵⁾. 예를 들어 일정한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 자체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요건에 관하여 법률에서는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위임입법의 한계인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155)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되나,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헌재 97. 12. 24, 95헌마390). 또한,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며,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헌재 97. 2. 20, 95헌마27).

(2) 입법례 및 정비기준

가. 입법례

○ 현행 법령을 분석하면 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없이 하위법령에서 재량행위의 요건·기준을 규정한 경우, ③ 재량행위의 요건·기준을 전부(또는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④ 법률에서 재량행위의 요건·기준을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로 위임하는 경우, ⑤ 그 밖에 법령에서 재량행위의 요건·기준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재량행위 투명화라는 관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입법례가 발견됨

나. 정비기준

○ 금전지급의무의 부과규정, 인·허가를 받을 의무의 부과규정, 인·허가의 취소·정지규정, 인·허가의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규정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와 인·허가의 유효기간규정, 인·허가의 정지기간의 상한규정 등 재량행위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재량행위의 요건은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정한 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령 현황

○ 허가요건위임규정

법령명		내용	비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어업의 허가기준	
수산업법	제41조제4항	허가어업 :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위임범위를 법률에 규정	

○ 면허요건위임규정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면허어업	

○ 승인요건위임규정

법 령 명		내 용	비 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 권적관리의행사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승인	

○ 근거규정을 요하는 하위법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	제13조	유어장의 지정명령 : “지정명령”에 관한 근거를 수산업법에 규정	
	제3조 제4항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 :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거를 수산업법에 규정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 에관한규칙	제9조	육성수면 지정의 유효기간 : “육성 수면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근 거를 수산업법에 규정	

○ 포괄적인 처분사유 규정

법령명		내용	비고
어항법	제29조	어항시설의 허가취소·사용 또는 점용 정지명령	
수산업법	제47조제1호 및 제3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취소·정지 :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의 위임범위를 구체화함	
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 정비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위임범위를 구체화함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8조제1항제5호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사유 :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사유중, 관리자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시행규칙에 일일이 명시하여 구체화 함	
	제28조제1항제6호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사유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를 개별조문으로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수산질명관리원의 개설자등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준수사항 조문을 삭제하고, 품위손상행위 조문을 신설하여, 동조문에 준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시켜 구체화 함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제8항제3호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구체화함	
	제14조제2항	어선출어등록 : 유효기간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접 그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4) 정비 대상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2조 (어업허가의 제한) ①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새로
 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8과 같다.

- 쟁점사항 : 표현상의 불명확성을 지양
- 정비방향 : “새로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와 그 새로운 허가에 대한 제한기
 간은 별표 8과 같다…”

수산업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 3 조 (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
 다)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쟁점사항 : 행정처분의 종류와 수위에 관한 기준, 기간 및 종류에 관하여
 법에 예측가능성
- 정비방향 : (별표 작성의 원칙·기준·예외 등을 열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30조의2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
 ②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어업의 어업시기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어업을 제한·정지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어업을 취소 처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쟁점사항 : 어민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입법사항
- 정비사항 : 수산업법에 특별한 사유의 한정적 열거 필요

수산업법

제91조의2 (과징금처분)

①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6호·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제34조제1항제6호(“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제7호(“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제47조제1항제3호(“이 법, 이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의 구체화 및 직접 명시
- 정비방향 : (해당 규정사항을 직접 열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1조 (어업허가의 유예)

②행정관청은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8에 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어선·어구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어업을 폐지한 자가 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쟁점사항 : 새로운 허가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에 해당. 법 제30조 제1항(휴업의 신고), 제31조제1항(어업의 개시등), 제35조제1호(“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및 제44조의2제3항(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등) 등에서 규제대상에 관한 명시규정 미흡
- 정비방향 : (해당 규정 사항을 직접 열거)

2. 행위(효과)규정의 불명확성에 관한 정비기준

1) 문제점

○ 행위(효과)규정의 표현방식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나, “신청에 의한 처분”에 관한 대다수 입법례에서는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은 물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도 처분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2) 정비기준(행위재량 유무 명문화)

(1) 행위재량을 부여하는 경우

○ 처분의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도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재량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중 입법 당시 처분의 거부사유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입법모델(예시 : 면허)

제○○조 (○○○(업)의 면허) 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시설·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다.

(2) 행위재량중 거부재량을 부여하는 경우

○ 입법 당시 처분의 거부사유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그 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입법모델(예시 : 허가)

제○○조 (○○○(업)의 허가) 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시설·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위재량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입법모델(예시 : 허가)

제○○조 (○○○(업)의 허가) 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시설·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정비대상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 (특정해역외의 해역에서의 어로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정해역외의 해역에서 어로를 제한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어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의 구체화
- 정비방향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3. 인·허가 취소·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 개 요

(1) 인·허가 취소·정지제도의 의의

○ 지속적인 영업·사업의 인·허가에서 주로 문제되는 인·허가 취소·영업정지제도는 영업자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취소처분은 영업자를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행정제재이고, 통상 취소처분의 전단계로 활용되는 영업정지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영업자를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행정제재임

(2) 인·허가 취소·정지처분기준의 법규성 논의

○ 종래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취소·정지처분기준의 대외적 효력 유무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음

○ 즉, 이러한 인·허가 취소·정지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아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소극설과 판례, 다만, 판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인·허가 취소·정지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바 있음)이 있는 반면, 그 형식이 대통령령이든 부령이든 모두 그 수권 법률과 합체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적극설)이 있음

2) 인·허가 취소·정지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 처분요건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가. 문제점

○ 행정형벌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인·허가의 취소·정지처분은 국민이 생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벌(行政罰)보다 오히려 그 효과가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법률에서 처분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인·허가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제재처분과 함께 행정벌을 항상 병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입법상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인·허가의 취소·정지 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이 모두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으로만 삼고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나. 정비기준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개별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되 처분사유의 마지막에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를 규정하여 정지기간중 영업행위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함

○ 같은 맥락에서 당해 법률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때에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하여 규정함

(2) 인·허가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가. 문제점

○ 영업정지사유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취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즉 위반의 정도가 영업정지 사유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정비기준

○ 취소사유와 영업정지사유를 하나의 조문(또는 항)에서 규정하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본래 인·허가를 받지 못할 자로 판명되거나 당해 영업에서 배

제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허가를 취소(등록영업은 등록말소, 신고영업은 영업폐쇄명령을 말함)하도록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두어 개임(改任)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을 부여함

○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도록 하되, 상한을 너무 장기로 규정하면 인·허가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정한 기간이 되도록 규정함

(3) 복수의 인·허가영업의 취소·정지규정을 함께 규정한 경우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가. 문제점

○ 취소·정지규정 자체만으로는 처분대상 인·허가가 법률의 어떤 조문에 의한 인·허가인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나. 정비기준

○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처럼 취소대상 인·허가의 근거조문을 명시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인·허가별로 별도의 조 또는 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정지처분기간 단순합산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가. 문제점

○ 각각의 영업정지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장기인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음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마치 행정청에게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오히려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임)가 있음.

○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와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이상의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실익이 없고, 처분기준의 적용에 복잡성만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함

나. 정비기준

○ 처분시 위반행위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는 방법”과 “중한 처분에 흡수하여 가중하는 방법”중 후자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시 최종적으로 인·허가의 취소를 규정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가. 문제점

○ 위반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위반횟수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최종차수 이상 위반의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정비기준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 횟수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일 것이므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일반기준”에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최종 횟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함

○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기간을 너무 길거나 짧게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규정함

(6)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시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지 아니한 경우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가. 문제점

○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1차위반시 처분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위반행위 정도가 비슷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므로, 제2차 내지 4차 위반까지의 각각의 처분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처분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수의 법령에서 2차 내지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나. 정비기준

○ 위반행위가 1차위반시 인·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영업정지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비율로 일관성 있게 가중함

○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여 규정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최종위반횟수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3) 인·허가 취소·정지에 관한 법령 현황

법령명		내용	비고
내수면어업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어장관리법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등록취소·영업정지	

4) 정비대상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9조 (허가어선의 변경등)

③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쟁점사항 : 수산업법에는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만 하도록 규정(제44조의2)
- 정비방향 : “...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절 불명확한 경제적 제재의 정비기준

1. 벌 금

○ 벌금 법령의 현황

법령명	내용
기르는어업육성법	제35조(벌칙)
남시어선업법	제22조(벌칙)
수산업법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제52조(어업조정 에 관한 명령)/제94조(벌칙)/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벌칙)/제31조(벌칙)/제32조(벌칙)
어선법	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벌칙)

법령명	내용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31조(벌칙)
어장관리법	제26조(벌칙)/제27조(벌칙)제28조(벌칙)/제30조(양벌규정)

2. 과징금

○ 재량행위 투명화에 있어서는 3개 유형(부당이득환수제도로서의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전적 제재로서의과징금)의 과징금제도중 영업정지처분과 관련이 있고 현행 법률상 과징금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정비대상으로 함

1) 공익성이 강하지 아니한 사업의 과징금제도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 문제점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는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과징금제도는 영업정지처분을 명하기에 부적절한 사업, 즉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비기준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는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공익성이 덜한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많은 법률에서 과징금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동 과징금제도는 유지하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한 후에도 상대방의 신청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래의 처분을 변경(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또는 과징금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함(대통령령에서 규정)

2) 과징금부과사유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 문제점

○ 법률에서 과징금부과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부과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정비기준

○ 과징금부과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과징금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하도록 함

3) 과징금처분과 취소처분을 함께 규정한 경우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 문제점

○ 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위반사유에 대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마치 취소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생김

(2) 정비기준

○ 인·허가 취소·정지규정 정비기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소·정지규정은 하나의 조문(또는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은 영업정지처분에 같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소·정지규정과 다른 조문(또는 항)에서 별도로 규정함

4)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의 규정형식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1) 문제점

○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에 같음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세부기준은 동일한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영업정지처분과 달리 과징금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 유사한 다른 과징금제도와 비교하여 부과금액의 적정성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비기준

○ 향후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의 경우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인·허가 취소·정지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도록 함. 이 경우 정지처분 사유는 과징금부과사유와 일치시켜야 함

5) 과징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정비기준

(1) 문제점

○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세부기준에 규정된 과징금액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우 가중·감경규정이 없으면 가중 또는 감경을 통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구체적 타당성 제고가 저해됨

○ 또한, 행정청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적발한 모든 위반행위에 관하여 1개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반행위마다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볼 소지도 있는 바¹⁵⁶⁾, 이처럼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액의 상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징금액을 가중하더라도 그 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정비기준

○ 가중·감경규정을 모두 두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중된 과징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156) 건축사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건축사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함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행정청이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위반행위 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2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복수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 1991. 10. 25. 선고 90누10148 판결).

○ 다만, 과징금제도는 정지처분에 갈음되는 것이므로, 앞 장(章)에서 논의한 정지처분기준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기준을 확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과징금부과기준에도 규정하는 것도 권장함

6) 과징금 법령의 현황

법령명	내용
수산업법	제91조의2(과징금처분)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제7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2조의4(과징금의 수납기관)/제72조의5(과징금의 용도)/부칙제4항(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7) 정비대상

<p>수산업법 제91조의2 (과징금처분)</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u>기타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쟁점사항 : 과징금부과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
- 정비방향 : “산정방법·납입방법 및 불복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3. 과태료 및 부담금

○ 과태료 법령의 현황

법령명	내용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르는어업육성법	36조(과태료)
남시어선업법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등)
남시어선업법	제23조(과태료)/부칙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시행령	제76조(과태료의 부과 등)
수산업법	제98조(과태료)/부칙 제3항(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어선법시행령	제19조(과태료)/부칙 제2항(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어선법	제53조(과태료)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어장관리법	제31조(과태료)

○ 부담금 법령의 현황

법령명	내용
수산업법시행령	제63조(보상금액등의 결정과 통지)/부칙 제10조(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제 6 장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개 정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제 2 조 (정의)	* 개 정 : 새로운 개념 및 업종등의 설정
제 3 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개 정 : “어업”을 목적으로… → “수산업”을 목적으로…
제 4 조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현행과 같음
제 5 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현행과 같음
제 6 조 (서류송달의 공시)	* 자구수정
제 7 조 (공동신청)	현행과 같음
제 2 장 면허어업	
제 8 조 (면허어업)	* 개 정 : 조문체계 정리 및 제목변경
제 9 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현행과 같음
제 9 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현행과 같음

수산업법 개정안

제 9 조의3 (다른 법률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제11조 (면허의 금지)	* 자구수정
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 개 정 : 공익상 제한사유의 구체화
제13조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 자구수정
제14조의2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 자구수정
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현행과 같음
제16조 (어업권의 등록)	현행과 같음
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18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 자구수정
제18조의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현행과 같음
제19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현행과 같음
제20조 (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현행과 같음

제21조 (공유자의 동의)	현행과 같음
제22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현행과 같음
제2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현행과 같음
제24조·제26조 삭제	
제25조 (어업권의 경매)	* 자구수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현행과 같음
제28조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 등)	현행과 같음
제29조 (보호구역)	* 개정 : 보호령(제26조)의 행위제한을 흡수
수산자원보호령 제26조 (어업권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제30조 (휴업의 신고)	현행과 같음
제31조 (어업의 개시 등)	현행과 같음
제32조 (타인지배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33조 (임대차의 금지 등)	현행과 같음
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개정 : 조문체계정리 및 공익요건의 구체화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 개 정 : 당연취소와 임의취소를 구분
제36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현행과 같음
제37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현행과 같음
제38조 (어장관리규약)	현행과 같음
제39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등)	현행과 같음
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 자구수정
제 3 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41조 (허가어업)	* 개 정 : 조문체계정리 및 허가 “처분”의 근거조항화
	* 신 설 : 제41조의2(한시어업허가) * 신 설 : 제41조의3(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
제42조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현행과 같음
제43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3조의2(어업허가의 승계)
제44조 (신고어업)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 등)	현행과 같음

제45조 (준용규정)	* 신 설 : 제45조의2 (허가최소에 관한 준용규정) 제45조의3 (허가의 조건 또는 사전적 제한)
제 4 장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제46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현행과 같음
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 개 정 : 포괄적 처분요건의 구체화
제48조 (삭 제)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 이 관 : 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사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의2 (수산물의 규격화추진)	* 이 관 : 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사항
제50조 (삭 제)	
제51조 (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제 5 장 어업질서의 유지 등 (장 제목변경)	
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 삭 제 : 일부는 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관 * 잔여 규정들은 수산업법에 존치후 조문 삭제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 2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 흡 수 : 제52조의2(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로 규정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3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 흡수후 제52조의2에 통합
제53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흡 수 : 제54조(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54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 이 관 : 수산자원관리법(안)
제54조의2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 이 관 : 수산자원관리법(안)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 개 정 : 제55조(공동유어장) ** 신 설 : 제55조의2(일반유어장)
제56조 삭 제	* 신 설 : 제56조(유어업의 관리)
제57조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3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 흡 수 : 제57조의 2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 흡 수 : 제57조의3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2 (어선의 사용제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어선의 설비)	* 흡 수 : 제57조의4 (어선의 설비와 사용제한)
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조문위치이동 : 제57조의5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77조 (자원의 조사·보고)	* 조문 위치이동후 조문제목 변경: 제57조의6 (어업실적보고)
제58조 (시설물의 철거 등)	현행과 같음

제59조 (표식의 설치·보호)	현행과 같음
제60조 (감 독)	* 자구수정
제61조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자구수정
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	현행과 같음
제63조 (사법경찰관)	* 자구수정
제 6 장 삭 제	
제 7 장 자원의 보호·관리	
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68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제72조 (어업의 자율관리지원) 2004.12.31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제74조 (소하성어류 등의 보조와 인공부화·방류) 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76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	* 부분이관 : 수산자원관리법(안) * 제75조와 제77조는 제5장으로 위치이동 * 제80조는 제8장으로 위치이동

제79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 삭제 제80조 (포 상)	
제 8 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80조 (포 상)	* 위치이동 : 제7장으로부터 흡수
제81조 (보 상)	* 공익사업보상법이 적용되는 보상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분
제82조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제83조 삭 제	
제84조 (보상금의 공탁)	현행과 같음
제85조 (입어에 관한 재결)	현행과 같음
제86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현행과 같음
제87조 (보조 등)	* 조문제목 변경(자금의 지원 등)후 어업질서협약과 연계
제87조의2 (어업질서협약)	* 신 설
제88조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현행과 같음

제 9 장 수산조정위원회	
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 개 정 : 사무국 설치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개 정 : 자문기구 → 심의기구
제91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신 설 : 제91조의2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0장 보 칙	
제91조의2 (과징금처분)	* 개 정 : 형사처벌의 일부를 과징금처분으로 이관(민사벌칙화)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 개 정 : 위임위탁의 “철회” 신설
제92조의2 (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93조 (청 문)	* 개 정 : 청문항목의 추가
제93조의2 (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현행과 같음
제11장 벌 칙	
제94조 (벌 칙)	* 개 정 : 벌칙항목의 축소
제95조 (벌 칙)	* 개 정 : 벌칙항목의 축소

수산업법 개정안

제96조 (벌 칩)	* 개 정 : 벌칙대상의 조정
제97조 삭 제	
제98조 (과태료)	* 개 정 : 형사처벌의 일부를 과태료처분으로 이관(민사벌칙화)
제99조 (몰 수)	* 몰수대상 추가
제100조 (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수산업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1 장 총 칙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u>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u>민주적 절차에 따라</u>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업과 <u>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u>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안)과의 역할 분담 *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강화 * 균형발전 도모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 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어장”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u>유어장업</u>·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업을 말한다. 2. “어업” : (현행 제2호와 같음) 3. <u>“유어장업”이라 함은 유어장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u> 4. <u>“유어장”이라 함은 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u> 5. “양식” : (현행 제3호와 같음) 6. “바닷가” : (현행 제9호와 같음) 7. “해외수역” : (현행 제5호와 같음) 8. “어장” : (현행 제4호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에 제3차산업인 유어장업을 추가 * 유어장업 개념 신설 * “유어” 개념을 유어장 개념으로 대체 * 협의의 “어장” 개념을 유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5.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p> <p>6. “어업권”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7.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p> <p>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p>	<p>9. “어업권” : (현행 제6호와 같음)</p> <p>10. “입어” : (현행 제7호와 같음)</p> <p>11. “어업인” : (현행 제8호와 같음)</p> <p>12. <u>“어구”라 함은 어획효율이나 어로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유인·포획 또는 채취 등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도구 또는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u></p>	<p>* 종전 “어업권”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p> <p>※ 제2조제6호의 대안 : 향후 어업인들의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어업권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p> <p>“어업권이라 함은 면허를 받아 일정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한정된 구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 “어구” 개념을 새로 정립</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0. “유어”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 3 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제 3 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2004.12.31 개정</p>
<p>제 4 조 (어장이용개발계획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수립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 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p> <p>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과 개발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일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인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p>		
<p>제 6 조 (서류송달의 공지)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u>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u>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p>	<p>제 6 조 (서류송달의 공지)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u>어업의 면허·허가, 그 제한이나 변경·취소 또는 보호구역이나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그밖의 통지를 위한</u>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 “명령·처분 그 밖의 통지”에 관한 “이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p>
<p>제 7 조 (공동신청)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제2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p>		
<p>제 2 장 면허어업</p>		
<p>제 8 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p> <p>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p> <p>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p> <p>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p>	<p>제 8 조 (면허어업의 구분 및 요건) ①어업중에서 그 어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업(이하 “면허어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p> <p>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p> <p>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p> <p>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p> <p>5. 복합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제목 변경 - 조문기술 체계 정리 - 면허주의 원칙은 제57조에서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 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p> <p>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p> <p>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p> <p>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p> <p>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p> <p>5. 기타 어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 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p> <p>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p> <p>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③ (현행 규정과 같음)</p>	
<p>제 9 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p> <p>③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다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p> <p>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p> <p>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제 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 9 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p> <p>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p> <p>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p> <p>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의3 (다른 법률의 준용) ①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각각 준용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10조 (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삭제) 3.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의 합산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다를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 양식어업에 한한다) 5.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6.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7.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제11조 (면허의 금지)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5조제1호·제5호 내지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1조 (면허의 금지)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u>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u>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u>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유로(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조문체계 정리</p>
<p>제12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12조 (면허의 조건 또는 <u>사전적</u> 제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을 면허하는 경우에 <u>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이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이행 또는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각호에 규정한 공익의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면허에 <u>조건 또는 제한을 선별적으로</u> 붙일 수 있다.</p>	<p>* 조문 제목 변경 : 면허 부여 당시의 제한 및 조건과 면허 이후의 어업의 제한을 구분</p> <p>* 조건 또는 제한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명문으로 위임</p> <p>* 당연 제한이 아닌 필요적 제한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u>선별적으로</u>” 실시한다는 개념을 부기</p> <p>* 수산자원관리상의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3조 (우선순위) ①어업의 면허(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이 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 <p>②제1항의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신청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의 실시 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간(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을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p> <p>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관 계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자</p> <p>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위치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결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p> <p>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p> <p>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어업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p> <p>⑤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해조류양식어업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p> <p>⑥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진·분할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순위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및 제34조제1항 각</p>	<p>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 (현행 규정과 같음)</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및 <u>제34조제1항 내지</u></p>	<p>- 해당 조문 숫자 정리</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p> <p>④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p>	<p><u>제3항</u>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현행 규정과 같음)</p> <p>④ (현행 규정과 같음)</p>	
<p>제14조의2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u>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등을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p>②한정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p>	<p>제14조의2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u>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5호(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등을 정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p>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③ (현행 규정과 같음)</p>	<p>- 해당 조문들의 숫자 정리</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p>		
<p>제15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는 제16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이 외는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p>	<p>(현행과 같음)</p>	<p>※ 제15조제2항의 대안 : 향후 어업인들의 법감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漁業權의 성질을 “物權”으로 규정한 구절을 삭제하고 어업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는 한편 그 보상에 관한 적용 법조의 정립이 가능하다. “어업권은 민법중 지당권, 방해예방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서는 이 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제5항의 신설(대안) : 향후 어업권 분쟁등을 해결하기 위한 裁判籍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킬 수 있다. “어업권은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이 속하는 시·군·구를 재산권의 소재지로 본다.”</p>
<p>제16조 (어업권의 등록) 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17조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8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 어업권을 제외한다)을 등록후 어업을 개시한 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이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의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살포를 완료한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날 3.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없고 종묘의 살포는 필요한 경우에는 종묘살포를 완료한 날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고자 하는 자가 제10조 각호의 1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8조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u>원칙적으로</u>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② 어업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을 제외한다)을 <u>등록하고 어업을 개시한 날부터</u>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이전이나 분할하는 경우 <p>③ 제2항제2호에 규정한 “어업을 개시한 날”은 <u>다음의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설물의 설치와 종묘의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의 살포를 완료한 날</u> 2. <u>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종묘의 살포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날</u> 3. <u>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종묘의 살포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묘의 살포를 완료한 날</u>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 조문의 기술 체계를 정리</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분할·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사이에서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할 수 있다.</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8조의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19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p>	<p>(현행과 같음)</p>	
<p>제20조 (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어업권을 담보에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본다.</p>	<p>(현행과 같음)</p>	
<p>제21조 (공유자의 동의) ①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제22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p>	(현행과 같음)	
<p>제2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p>	(현행과 같음)	
<p>제24조 (삭 제)</p>		
<p>제25조 (어업권의 경매) ①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 내지 제7호 또는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p>	<p>제25조 (어업권의 경매) ①제31조제2항, <u>제35조제2항 또는 동항제5호(제3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u>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④ : (현행과 같음)</p>	<p>- 해당 조문 숫자 정리</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경매에 의한 경매대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p> <p>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제26조 (삭제)		
<p>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의 소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당해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척수·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월동 또는 월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월동 또는 월하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③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면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보호구역) ①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보호구역) ① (현행 규정과 같음) ②<u>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③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의 제26조(어업권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를 제2항으로 편입 * 제2항의 각호는 시행령 사항 : 1. <u>어망을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u> 2. <u>불빛 또는 음향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행하는 어업</u> 3. <u>삭 제</u> 4. <u>통발·연승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어업</u></p>
<p>제30조 (휴업의 신고) 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업을 계속</p>	<p>제30조 (휴업의 신고) ① (현행 규정과 같음) ② (현행 규정과 같음) ③ (현행 규정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 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⑤ (현행 규정과 같음)</p>	<p>(조문 숫자 정리)</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 (어업의 개시 등) ①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어장을 유희상태로 두어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제52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휴식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2조 (타인지배의 금지) ①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33조 (임대차의 금지 등)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34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군사훈련 또는 주요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3.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p>	<p>제34조 (면허어업의 제한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u>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때</u> <u>2. 제8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율질서협약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u> 3. 선박의 항행·정박·계류나 <u>기상악화·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u> 필요한 때</p>	<p>* 조문 제목 변경 * 수산자원관리와 면허어업의 제한을 연계 *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의 예방등”(제5호의2)을 별도의 항(제2항)으로 분리 규정하고 외교 또는 국방과 관련된 규정을 집중</p>

현행	개정안	비고
<p>5의2.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p> <p>6.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p> <p>7.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 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p> <p>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도지사가 어업의 제한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⑤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p>	<p>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때</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의 예방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u>1. 국제적 어로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관리수역 또는 특정수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때</u></p> <p><u>2.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어로한계선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때</u></p> <p>3.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p> <p>4.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p> <p>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u>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u>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나 출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p> <p>2.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 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의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삭 제) 4. (삭 제) 5.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7. 어업권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경우외에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p>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어업권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4. 어업권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때 5.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p>* 당연 취소와 임의 취소를 구분</p> <p>* 해당 조문 숫자 정리</p>
<p>제36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7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p>②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당해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이를 행사한다.</p> <p>③ 삭제</p>	(현행과 같음)	
<p>제38조 (어장관리규약)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또는</p>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p>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되는 때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방법·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구역의 조정 기타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등)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어장에 대하여는 계원 또는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p>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①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7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u>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u></p> <p>③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p>	<p>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①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제2조제10호의 입어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u>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u></p> <p>③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정리 - 조항정리

현행	개정안	비고
<p>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④ (현행 규정과 같음)</p>	
<p>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p>		
<p>제41조 (허가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하 “원양어업”이라 한다)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 	<p>제41조 (허가어업의 구분 및 요건) ①어업중에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이하 “허가어업”이라 한다)은 그 어업인이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 및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해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어업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나. 원양어업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2. 시·도지사 허가어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안어업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p>* 조문의 기술체계를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내지 제3항을 1개의 항으로 통합하고 허가어업의 구분 및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 - 허가주의 원칙은 면허주의와 함께 제57조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수양식어업”이라 한다)</p> <p>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p> <p>③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제한,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해당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p> <p>⑤ (삭 제)</p> <p>⑥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p>	<p>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외의 어업</p> <p>나.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p> <p>다. 해상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구획어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역에서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에 의하여 하는 어업</p> <p><u>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요건과 항목 및 순위 등은 다음과 같다.</u></p> <p>1.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허가에 필요한 다음의 세부사항 및 신청 양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u>가. 어업별 어업의 명칭</u> <u>나. 선복량(어선의 톤수)</u> <u>다. 기관의 출력</u> <u>라.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u> <u>마. 부속선</u> <u>바.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u> <u>사.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u></p>	<p>* 재량행위의 투명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아.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시설기준</u> <u>자.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u> <u>차. 어업허가의 유예 사유와 기간</u> <u>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사유와 기간</u> <u>파. 허가취소후 허가의 제한사유와 기간</u> <u>3.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u> <u>③행정관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조업구역·허가정수·선복량·기관출력 및 어구의 규모등을 참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u> <u>④행정관청은 제35조제1항·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1조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2조 * 어업허가에 대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역할분담 <p>- 허가처분 : 수산업법을 적용 - 허가재량의 한계 :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p>
<p>(신 규)</p>	<p><u>제41조의2 (한시어업허가) ①행정관청은 회유등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 일시 다량으로 출현하는 어류에 대하여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자원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와 별도로 한시어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의 어종·구역·기간·한도·방법·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다확성 어류에 대한 특별허가 도입 * 기존의 어업허가와 중첩적으로 부여 * 전문연구기관의 자원평가 결과를 고려 * 준용사항은 제45조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총허용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을 별도로 관리한다.</p>	
<p>(신 규)</p>	<p>제41조의3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 ①어업허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매 2년마다 어업허가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는 다음 각호의 1을 대상으로 한다. 1. 어업허가증은 있으나 어선이 없는 경우 2. 어선이 항·포구에 [2년] 이상 방치된 경우 3. 어선이 신고 없이 휴업하는 경우 ③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후에 해당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정비전에 어업허가를 받았던 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어선의 유무확인, 방치기간의 계산 및 조업상황의 조사방법과 정비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허무(虛無) 어선의 정비 * 장기 방치폐선의 정비 * 정비후 취소 및 통지를 규정 * 취소에 대한 청문에 관하여서는 청문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93조에서 규정</p>
<p>제42조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①제8조·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등을 감안하여 제8조,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제1항의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과 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현행과 같음)	
(신 규)	<p><u>제43조의2 (어업허가의 승계)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는 그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상속하거나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어업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u></p> <p>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압류·가압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할 수 없다.</p>	- 승계 요건의 특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상속 또는 승계된 경우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등도 함께 승계된 것으로 본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기간에 대하여 발효 - 승계 요건의 제한
<p>제44조 (신고어업) ①제8조·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후단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관할수역안에서 연간 60일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p>	<p>제44조 (신고어업의 요건) ①어업중 제8조·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에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맨손·잠수·투망 또는 양식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현행 규정과 같음) ③ (현행 규정과 같음) ④ (현행 규정과 같음)</p>	<p>* 조문 제목의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4. (삭제)</p> <p>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다.</p> <p>⑥어업의 신고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 사유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한 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계류처분에 2회이상 위반한 때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p>⑦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현행 규정과 같음)</p> <p>제44조의2 (신고의 실효) ① (현행 제44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음)</p> <p>② (현행 제44조제7항의 규정과 같음)</p>	<p>* 조문체계 정리</p> <p>* 새로운 조문제목의 부여</p>
<p>제44조의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등)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p>	<p>제44조의3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 등)</p>	<p>* 조문 숫자의 변경</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지신고의 사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45조 (준용규정) ①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의2·제17조·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34조와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제44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45조 (허가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7조·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과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7조·제32조와 제34조 및 제44조의3의 규정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제44조의 신고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에 관한 준용규정과 허가취소에 관한 준용규정을 구분 - 면허제한등에 관한 제12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그 취지를 별도조항(제45조의3)으로 신설 - 한시어업허가에 대한 준용규정 신설
<p>(신 규)</p>	<p>제45조의2 (허가취소에 관한 준용규정) ①허가의 취소에 관한 제35조제1항·제2항제2호·제3호·제5호와 제36조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별도 준용규정 -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를 규정한 제36조를 새로 준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허가의 취소에 관한 제35조제1항·제2항제2호·제3호·제5호와 제36조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 취소에 관한 청문은 제93조에서 규정</p>
(신 규)	<p>제45조의3 (허가의 조건 또는 사전적 제한) <u>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〇〇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조사 및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허가의 조건 또는 사전적 제한을 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제한은 연근해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 조업구역·어로한계선등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나 어선의 규모별로 어구·어법 및 표지부착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u></p>	<p>- 어업허가의 조건 및 사전적 제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 - 종전 제45조의 준용 규정에서 정한 면허에 관한 제12조의 준용을 별도 규정으로 신설 - 조건 또는 제한의 한계(범위)를 명시</p>
<p>제 4 장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p>		
<p>제46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 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p> <p>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p> <p>3.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p> <p>② (삭 제)</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1. 어선의 톤수 및 기관의 마력</p> <p>2.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p> <p>3.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p> <p>④행정관청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당해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p>	<p>제47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p> <p>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청이 있을 때</p> <p>3.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u>이 법 제34조·제52조의2·제57조 내지 57조의3등이나, 이 법 제40조·제52조·제53조의2등에</u>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p> <p>2.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요청이 있을 때</p> <p>3. <u>이 법 제34조·제52조의2·제57조 내지 57조의3등이나, 이 법 제40조·제52조·제53조의2등에</u>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근거조항들의 예시</p>
<p>제48조 (삭 제)</p>		
<p>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용적인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보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u>해당사항 없음</u></p>	

수산업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목별 규격 및 재질 2. 비규격품의 사용의 제한 3. 규격 및 재질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p>-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이관</p>
<p>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의2 (수산물의 규격화추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과 거래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거래단위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u>해당사항 없음</u></p>	<p>-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p>
<p>제50조 (삭 제)</p>		
<p>제51조 (준용규정) ①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2, 제35조제1호·제5호·제6호, 제41조제6항,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2조, 제35조제1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51조 (운반업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 (현행 규정과 같음) 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 조문 제목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5 장 어업질서의 유지 등</p>		
<p>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10. (삭제)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p> <p>③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기존 조항의 삭제 ※ 대체 조항의 신설 </p> <p>제52조 (어업허가증등의 휴대)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은 조업중에는 대한민국 영해내에 위치하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어업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내에 위치하는 어선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공문서들을 휴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의 역할분담〉</p> <p>※ 수산자원관리법 : 전체 산업(어업) 구조의 조정 지향</p> <p>※ 수산업법 : 개별 기업[어업인 개인] 어업 경영의 합리화 지향</p> <p>☞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 구조조정 차원 ⇒ 수산자원관리법 (허가항목과 요건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에 존치)</p> <p>* 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부분)이관 항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및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금지 4. 어구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p>* 7호 : 수산업법 제57조제2항으로 이동</p> <p>* 8호 : 별도의 규정 제53조의2 존재</p> <p>* 9호 : 조정사항 아님</p> <p>* 어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선적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는 안 제57조의2에 (통합) 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p>		<p>*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는 습으로 이관 * 대체조항(제52조: 허가증등 휴대의무) 입법례 영국의 1868년의 해양어업법(the Sea Fisheries Act) 제26조를 대체한 1995년의 해상법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314조 제2항 별표 13의 제2호</p>
<p>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2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하는 수역 또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시기·수역등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2조의2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초과하는 수역 또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시기·수역등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및 해저의 저질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3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및 해저의 저질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u>④해양수산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위생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조문추가</p>
<p>제53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해양수산부장은 시·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자치구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 제한사항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해역의 조업의 제한 또는 금지 1의2. 양식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1의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1의4.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및 어획시기의 제한 또는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민간어업협력의 조정 5.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 6.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p>제54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u>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특정해역의 조업의 제한 또는 금지</u> <u>2. 양식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u> <u>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u> <u>4.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u> <u>5.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u> <u>6. 민간어업협력의 조정</u> <u>7.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u> <u>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u> 	<p>- 조문추가</p> <p>- 어업협정등에 따른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및 어획시기의 제한 또는 금지는 수산자원관리법(안)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p>
<p>제54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삭제</p>	<p>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54조의2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세력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 대상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관</p>
<p>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p> <p>②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5조 (공동유어장)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u>소속 계원 또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소득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u>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u>공동유어장</u>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p> <p>②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공동유어장</u>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공동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변경 - 일반유어장과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공동유어장의 지정, 공동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u>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포획·채취물의 관리, 비용의 징수, 유어객의 관리,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위생기준의 준수등에 필요한 사항</u>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u>공동유어장</u>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동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신 규)</p>	<p>제55조의2 (일반유어장) ①어촌계·지구별 조합 또는 유어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 아닌 공유수면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현황,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유어장의 수요공급 상황,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관리 여건, 대상 수면의 권리관계 및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어장을 지정할 수 있다.</p>	<p>* 공동유어장과의 구별 * 어업인외의 일반인에게 진입기회 개방 * 허가어업의 현황 등을 고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어장에 대하여서는 제55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규)</p>	<p>제56조 (유어장업의 관리) ①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유어장 또는 일반유어장에서 유어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어장이 위치한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유어장업의 우선순위·시설규모·안전관리·등록기준·존속기간·갱신기준 및 위탁관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유어장업의 등록사항·등록방법·서식 또는 절차에 관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관할 시·도지사는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관할 시·도지사는 유어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p>	<p>* 시행령 규정사항(1) : 우선순위 1. 어촌계 2. 지구별 수협 3. 지방자치단체 4. 개인 또는 단체</p> <p>* 시행령 규정사항(2) : 개인경영 자격요건 * 시행령 규정사항(3) : 위탁관리 요건* 시행령 규정사항(4) : 안전관리 조치 * 시행령 규정사항(5) : 보험등의 가입</p>
<p>제57조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p>	<p>제57조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관리</p>	<p>*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규제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보호관리의 수단으로 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p>	<p><u>수면으로</u>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3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법 제8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 2.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구</p>	<p>제57조의2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u>누구든지</u>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외의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원관리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자원관리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u> 2. 그 밖에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구</p>	
<p>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어선은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당해 어업의 어업시기가 아닌 시기에 당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적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업의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육성수</p>	<p>제57조의3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①어선은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외의 어구를 싣거나(당해 어업의 어업시기가 아닌 시기에 당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싣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어구의 운용을 목적으로 선박의 개조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업의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선이 아니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싣어서는 아니된다. ③<u>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관리수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u></p>	<p>조문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u>수산동식물의 보호</u> 또는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어선의 규모·선령·기관과 부속선의 척수·규모 및 어구의 규모·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u>자원관리수면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어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u></p>	
<p>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2 (어선의 사용제한) ①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할 수 없다.</p>	<p>제57조의4 (어선의 설비와 사용제한) ①어선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②어선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선은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조문추가</p>
<p>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u>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u>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p>	<p>제57조의5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u>이 법 제34조·제52조의2·제57조 내지 57조의3등이나, 이 법 제40조·</u></p>	<p>조문위치 변경 (제7장에서 제5장으로) 조문제목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제52조·제53조의2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u>제77조 (자원의 조사·보고)</u> ①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당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u>제57조의6 (어업실적보고)</u> ①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당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조문위치 변경 (제7장에서 제5장으로) 조문제목 변경</p>
<p><u>제58조 (시설물의 철거 등)</u> ①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 받은 때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은</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이를 준용한다.</p>		
<p>제59조 (표지의 설치·보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p>	(현행과 같음)	
<p>제60조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이 <u>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u>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60조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이 <u>제11조(면허의 금지), 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제52조(어업질서명령), 제52조의2(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u>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제6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등)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u>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u>에 위반한 때에는</p>	<p>제61조 (해기사면허의 취소등)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u>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34조</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u>(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제47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제52조(어업질서명령), 제52조의2(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제57조의3(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u>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63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u>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u>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p>	<p>제63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u>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제47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제52조(어업질서명령), 제52조의2(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제57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제57조의2(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 제57조의3(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의6(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u>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p>	
<p>제 6 장 삭 제</p>		
<p>제 7 장 자원의 보호·관리</p>		
<p>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제68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제72조 (어업의 자율관리지원) 2004. 12.31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제74조 (소하성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p>		<p>- 법체계 조정 : 수산자원관리법(안)으로 이전</p> <p>- 위치조정 : 제5장으로 이관 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77조 (자원의 조사·보고)</p> <p>- 제8장으로 이관 제80조 (포상)</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6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제77조 (자원의 조사·보고) 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 제79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 삭제 제80조 (포상)		
제 8 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80조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u>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u>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0조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u>이 법 제 34조·제52조의2·제57조 내지 57조의3등이나, 이 법 제40조·제52조·제53조의2등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u>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장에서 이관
제81조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제81조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u>제3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5조제8호(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때</u>	* 입법기술적 정리: 면허 부문↔허가신고 부문 - 현행 제81조제1항제1호의 단서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를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아니한 때.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은 때</p> <p>3.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 명령을 받은 때</p> <p>②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범위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③제2항의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지급방법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u>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항행·정박·계류로 인하여 제한되는 때</u></p> <p>3.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은 때</p> <p>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 명령을 받은 때</p> <p>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③ (현행 규정과 같음)</p> <p>④ (현행 규정과 같음)</p> <p>⑤ <u>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때에는 그 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p>- 현행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그리고 신고어업 모두에 대한 원칙적 보상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u>국방상의 이유등으로</u>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양식은 해석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행 제81조제1항제1호를 제1호(면허부문)와 제2호(허가 및 신고 부문)으로 나누고 기존의 단서조항을 삭제</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어업 보상과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어업 보상의 적용 법조를 구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82조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①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발생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83조 (삭 제)</p>		
<p>제84조 (보상금의 공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나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5조 (입어에 관한 재결) 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 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86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 ①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87조 (보조 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 (자금의 지원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때 제8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어업질서협약의 이행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p>	<p>- 어업질서 협약과 연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u>심사기준·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신 규)	<p>제87조의2 (어업질서협약) ①<u>행정관청은 어업인단체등과 어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 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효력과 적용범위 및 이행확보방안은 그 협약에서 정한다.</u> ③<u>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항목·체결방법·참가주체 및 체결절차등에 관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72조(어업의 자율관리지원)중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의 취지를 승계 - 수산업법 제72조 자체는 수산자원관리법(안) 보칙으로 이관
<p>제88조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 이장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 9 장 수산조정위원회</p>		
<p>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시·도,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둔다.</p>	<p>(현행과 같음)</p>	<p>* 향후 수산자원관리법(안)상 수산자원관리위원회와의 구별을 위한 명칭변경이 필요</p>
<p>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p>	<p>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u>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3. 어업별 분쟁의 조정</p> <p>4. 시·도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p> <p>5.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②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p> <p>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p> <p>4. 삭 제</p> <p>5. 시·군·자치구간의 어업에관한 분쟁의 조정</p> <p>6.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7.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③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2. 개발계획의 심의</p>	<p><u>2. 어업별 분쟁의 조정</u></p> <p><u>3. 시·도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u></p> <p><u>4. 이 법 및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u></p> <p><u>5. 해양수산부장관이 회부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u></p> <p><u>②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u></p> <p><u>2.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u></p> <p><u>3. 시·군·자치구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u></p> <p><u>4.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u></p> <p><u>5. 이 법이나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u></p> <p><u>6. 시·도지사가 회부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u></p> <p><u>③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u>1. 수산업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u></p> <p><u>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u></p>	<p>*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5.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6. 수산업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p> <p>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p> <p>8. 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p> <p>9.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p> <p>10. 기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u>3. 어장개발계획의 심의</u></p> <p><u>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u></p> <p><u>5.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u></p> <p><u>6.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u></p> <p><u>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u></p> <p><u>8. 이 법이나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u></p> <p><u>9.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의 자문</u></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u>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u>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u>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91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민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를 구성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제91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민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를 구성한다.</u></p> <p><u>②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정원은 21인으로 하고,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정원은 17인으로 하며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정원은 15인으로 한다.</u></p> <p><u>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기준·지역별 정수·선출방법·선출구역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위원회별 최대 정원을 법정화</p>
	<p><u>제91조의2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수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p> <p><u>②수산조정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하여 활동한다.</u></p> <p><u>③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u>④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정책의 권고나 심의 또는 어업조정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u>⑤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u></p>	<p>* 민주적 절차의 보장</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0장 보칙</p>		
<p>제91조의2 (과징금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6호·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한 또는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3 (과징금처분)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u>그 행정처분등으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3항(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 2. <u>제1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u> 3. <u>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u> 4. <u>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u> 5. <u>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유어장을 운영한 자</u>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징금의 수준·산정방법·</p>	<p>* 조문 체계 및 숫자 정리</p> <p>*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p> <p style="text-align: center;">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납부방법 및 부과절차등에 관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현행 규정과 같음) ④(현행 규정과 같음)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u>운용계획</u> 및 그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5조제2호를 과징금화</p> <p>* 제95조제4호를 과징금화</p> <p>* 제95조제5호를 과징금화</p> <p>* 신설 일반유어장(제55조의2)의 규율</p> <p>* 현행 제5항과 제6항을 하나로 통합</p>
<p>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p>	<p>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 규정과 같음) ② (현행 규정과 같음)</p>	<p>* 대 안 : 위임위탁 사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임위탁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향후 법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수입·수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임·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p> <p>④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철회전에 형성된 권리와 의무는 그 철회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⑤위임·위탁을 철회당한 기관 또는 단체는 철회후 1년 이내에 같은 위임·위탁을 받지 못한다.</p>
<p>제92조의2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p>	<p>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p>	

현행	개정안	비고
2. 제35조(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입어의 금지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5. 삭제 6.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5조(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입어의 금지 4. <u>제41조의2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어업허가의 취소</u> 5. <u>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u> 6.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7.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 청문항목의 추가
제93조의2 (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수산업의 동향과 수산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1장 벌칙		
제9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9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와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34조제2항(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p> <p>3.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p> <p>3. 제57조 <u>본문의</u> 규정에 의한 정규어업외의 어업을 수행한 자</p> <p>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 조문 체계 및 숫자 정리</p>
<p>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p> <p>2. 제1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p> <p>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p>	<p>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p> <p><u>2. (삭 제)</u></p> <p>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p> <p><u>4. (삭 제)</u></p> <p><u>5. (삭 제)</u></p>	<p>* 형사범죄의 비범죄화</p> <p>- 과징금 대상으로 전환(제2호·제4호·제5호)</p> <p>- 형사벌을 민사벌[과징금]로 규제</p> <p>*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조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4. 제32조제1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한 자</p> <p>5.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p> <p>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p> <p>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육성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p> <p>8. 삭 제</p> <p>9. 제73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10.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한 자</p>	<p>6.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p> <p>7.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어업의 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p> <p><u>7의2.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어구 및 어선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u></p> <p><u>7의3. 제57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자</u></p> <p>8. 삭 제</p> <p><u>9. (삭 제)</u></p> <p><u>10. (삭 제)</u></p>	<p>-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은 면허, 허가 및 신고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경고 또는 면허등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은 본조에 의한 형벌과 병행하여 집행이 가능</p> <p>- 일부 처벌 항목들을 민사벌로 전환할 경우에도 취소에 <u>갈음하는</u> 과징금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고”후 바로 “취소”로 가는 것보다 과징금처분을 활용하는 구도를 채택</p> <p>* 수산자원보호령의 법률화에 따른 보완</p> <p>* 수산자원보호령의 법률화에 따른 보완</p> <p>* 제9호의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3조 위반은 수산자원관리법 관할 - 제75조 위반은 제7의3호로 통합 <p>* 제10호의 삭제 : 수산자원관리법 관할</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자 3. 삭 제 4. 삭 제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p>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29조에 규정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내에서 어망을 사용하는 행위, 불빛·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는 행위 또는 통발·연승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또는 잠수기를 사용하는 행위</u> 2. 제34조제1항·제3항(제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위반한 자 3. 삭 제 4. 삭 제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p>* 벌칙대상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망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추가 - 검사 또는 정선·회항 명령 불응자 삭제
<p>제97조 삭 제</p>		
<p>제9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제9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의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p> <p>2. 제31조제1항(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수면을 유희상태로 둔 자</p> <p>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어업권자</p> <p>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p> <p>5.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조치에 위반한 자</p> <p>6.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어업권자</p> <p>7.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자</p> <p>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p> <p>9.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p>	<p>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제45조제1항 또는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p> <p>3. 제31조제1항(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수면을 유희상태로 둔 자</p> <p>4.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어업권자</p> <p>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p> <p>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의 변경등 시정조치에 위반한 자</p>	<p>* 과태료 대상의 추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0.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p> <p>1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p> <p>12. 삭 제</p> <p>13. 제58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p> <p>14.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장 또는 어구에 표식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설치한 표식을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p> <p>15.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p> <p>16.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호수면구역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p> <p>16의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또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어업권자</p> <p>8.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처분에 위반한 자</p> <p>9.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p> <p>10.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p> <p>11.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p> <p><u>12. 제52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u></p> <p>1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동유어장을 운영한 자</p> <p>14. 제57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15. 제58조제1항(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p> <p>1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장 또는 어구에 표식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7.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18.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그 설치한 표식을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p> <p><u>17.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u></p> <p>18.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어업감독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자</p> <p>19.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집행권을 위임받은 행정관청 또는 공무원은 전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하게 당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한다.</u></p> <p><u>③ 계고장의 발부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④ 계고장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명령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정산기준에 따른 감액·납입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u></p> <p><u>⑤ 관할관청은 과태료부과를 명령받은 자의 사업규모, 책임정도, 위반경력 및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액하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⑥ 과태료의 정산요소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99조 (몰수) 제94조·제95조·제96조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年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p>	<p>제99조 (몰수) ①제94조·제95조·제96조제2호 및 제6호, <u>제98조제10호의2</u>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年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p>	<p>* 몰수대상의 추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0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현행과 같음)</p>	

제 7 장 수산자원관리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국가·어업인등의 책무) 제 3 조 (정의) 제 4 조 (적용범위) 제 5 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 수산자원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어업인 및 단체의 책무 * 적용 수역의 설정 * 수산업법과의 역할분담 및 우선순위 설정
제 2 장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제 6 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 7 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 8 조 (자원의 조사와 평가) 제 9 조 (이행점검 및 촉진)	*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연계
제 3 장 수면의 지정 및 관리 등	
제 10 조 (보호수면의 지정과 해지) 제 11 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 12 조 (보호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 13 조 (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지) 제 14 조 (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 15 조 (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제 16 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업법(제67조)상 보호수면의 흡수 * 수산업법상 육성수면과 기르는어업법상 수산자원관리수면 통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흡수

제 4 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	
<p>제17조 (수산자원관리원칙) 제18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제19조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제20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21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제22조 (<u>긴급보호명령</u>) 제23조 (<u>물고기 알등의 채취·포획 제한</u>) 제24조 (유해어업등의 금지) 제25조 (포획·채취의 강화 또는 완화) 제26조 (그물코의 표준규격) 제27조 (어구의 규격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 제28조 (소하성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제29조 (수산동식물의 이식) 제30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보호) 제31조 (<u>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기준 등</u>) 제32조 (<u>자원보호를 위한 부가조치 등</u>) 제33조 (범칙어획물에 대한 조치 및 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등에 의한 자원관리 원칙의 선언 * 어업의 종류는 수산업법에 어업의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율 * 어구의 종류는 수산업법에 어구의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율 * 시·도지사의 (강화)재량 인정 * 제18조 내지 제21조에 대한 특례 * 원칙적 기준의 설정 * 보충성의 방식을 채택
제 5 장 어획노력량의 관리	
<p>제34조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제35조 (<u>선복량의 제한</u>) 제36조 (기관출력의 제한) 제37조 (어구의 규모제한) 제38조 (<u>어구의 실명표시 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명령)의 폐지에 따른 대체조항의 신설 *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포함 * 어구의 규격이 아닌 규모(크기와 사용량)를 제한 * 소유자 또는 관리자 책임

제 6 장 어획량의 관리	
제39조 (어종별 어획량의 관리) 제4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제41조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제42조 (총허용어획량의 배분량의 할당 등) 제43조 (포획량 등의 공표) 제44조 (포획·채취실적의 보고) 제45조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지정) 제46조 (지도·단속)	* 관리원칙의 선언 * 읍서버 활동의 지원을 포함 * 읍서버의 보고를 포함
제 7 장 자원의 조성	
제47조 (인공어초의 시설) 제48조 (해중림의 조성) 제49조 (수산종묘의 방류) 제50조 (바다목장사업) 제51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52조 (수산자원조성금) 제53조 (재정지원 및 자금보조)	* 기르는어업육성법 규정의 흡수 및 확장
제 8 장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	
제54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제55조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 제56조 (한국수산자원관리협회) 제57조 (자발적 협약) 제58조 (자치규약의 인가와 지원)	* 본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 * 특수법인 * 민간과 정부가 협약을 체결 [제58조의 자치규약과 별개] * 수산업법 제72조(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의 흡수·확장

제 9 장 보 칙	
제59조 (포상) 제60조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2조 (<u>수산자원관리공무원의 직무수행</u>) 제63조 (사법경찰권) 제64조 (개선·정지명령) 제65조 (과징금 처분) 제66조 (청문) 제67조 (<u>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u>) 제68조 (<u>사전협의 및 의제</u>)	* 제한된 경우 포획·채취에 대한 특례를 인정 * 선복량 및 기관출력에 대한 2단계의 조치와 명령 * 조업과 병행이 가능한 민사벌칙의 도입 * 적법절차(due process)의 강화 * 절차간소화
제10장 벌 칙	
제69조 (벌칙) 제70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과태료) 제73조 (몰수) 제74조 (양벌규정)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등 제1등급 불법행위 * 보호수면내 어로행위등 제2등급 불법행위 * 소하성어류 보호명령 위반등 제3등급 불법행위 * 민사벌칙화 * 어획물·어선·어구 등의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제 1 장 총 칙		
(신 규)	제 1 조 (목 적) 이 법은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원칙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내외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규)	제 2 조 (국가·어업인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증진시킬 책무를 진다. ②어업인 및 그 단체는 수산자원에 대한 미래세대의 수요를 확보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수산자원 관리원칙은 제17조에서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어업인 및 그 단체의 책무
(신 규)	제 3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자원”이라 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수산자원의 관리”라 함은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조성, 이용 또는 이와 관련된 조치 또는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라 함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4. “인공어초”라 함은 바다에 수중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원의 서식장·산란장 또는 성육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회복하고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구조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p> <p>5. “해중림”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의 서식장 또는 산란장으로 이용되는 해조류등의 군락을 말한다.</p> <p>6. “인공종묘의 방류”라 함은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거나 품질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종묘를 인공적으로 생산하여 물 속에 풀어놓는 것을 말한다.</p> <p>7. “바다목장사업”이라 함은 바다에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번식시키고 이를 포획·채취하는 활동을 말한다.</p> <p>8. “관리대상수산자원”이라 함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총허용어획량”이라 함은 <u>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u>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p> <p>10. “어획노력량”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는 어로작업의 양으로서 종류별 조업일수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신 규)	<p>제 4 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 <p>②이 법은 배타적 경제수역등에 기원을 두는 소하성어종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③이 법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입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신 규)	<p>제 5 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어획 노력량 및 어획량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다른 법률의 규정과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②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수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기르는어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의 조사 및 평가는 어장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 환경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 법률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설정 - 어업단속·위생관리 및 유통질서등 일반적 어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제 2 장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신 규)	<p>제 6 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자원의 <u>보호와 회복 및 조성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를 기초로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환경, 수산자원 및 수산업계 등의 동향 및 전망 2. 계획목표, 투입예산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유도, 관련 주체들의 확정 및 상호 역할과 책임의 분담 4. 자원관리의 효과분석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또는 관련계획들을 수립할 경우에 그 계획 <u>초안의 작성에 즈음하여</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어업인, 관련단체, 시·도지사,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다.</u></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수정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행정관청, 시·도나 시·군·구 또는 관련단체에 <u>요청할 수 있다.</u></p>	<p>* 수산자원관리의 틀로서 계획 시스템을 도입</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수정된 계획을 <u>고시하여야 한다.</u></p>	
(신 규)	<p>제 7 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u>수산자원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해양과 공유수면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총허용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포함한 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p>②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관할수역의 특성에 알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하여 <u>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조사·평가의 결과 자원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어종에 대하여 <u>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별도로 긴급 회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p>④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준용한다</p>	<p>*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시스템의 도입</p> <p>* 긴급 회복계획의 수립근거 제시</p>
(신 규)	<p>제 8 조 (자원의 조사와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과 <u>시·도지사는</u>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u>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수산자원</u></p>	<p>*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연계</p> <p>* 시행령사항[1] 수산자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수역별 서식종의 파악 및</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발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점검의 결과를 담아야 한다.</p>	<p>분포해역의 조사 (2)주요 개체군의 생태학적 특성치 및 자원량의 조사 (3)시험조사선 또는 용선을 이용한 해역별 또는 수역별 구분 조사 (4)수산업에 쓰이는 어구·어법</p> <p>* 시행령사항[2] 수산자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주요 연안 또는 공유수면의 수산자원량 평가 및 자원회복 대상종의 선정 (2)수역별 수산자원관리협의체의 구성 (3)연차별 효과측정을 위한 이행방안의 작성 (4)자원평가인력의 개발 및 어종별전문가 양성</p>
(신 규)	<p>제 9 조 (이행의 점검 및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미비 사항을 완수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 3 장 수면의 지정 및 관리 등</p>		
<p>수산업법</p> <p>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p>	<p>제10조 (보호수면의 지정과 해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u>직권에 의하여</u>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u>신청에 의하여</u> 수산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p>	<p>* 기술적 표현들의 정비</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u>수면을</u>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u>그</u>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u>관계 행정 기관과</u> 협의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면을</u>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u>그</u> 보호수면의 지정을 <u>해지</u>할 수 있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수산업법 제68조 (보호수면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p> <p>②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보호수면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p> <p>②보호수면의 <u>지정기준·변경 및 해제의 방법 기타</u>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수산업법 제69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①보호수면(항만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누구든지 보호수면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 (보호수면에서의 행위제한) ①보호수면(항만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누구든지 보호수면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수산업법 제70조 (육성수면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u>1. 정착성수산동식물이 대량 서식하는 수면</u> <u>2.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방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수면</u>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지정·관리규정 기타 육성수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르는어업육성법 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u>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u>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제13조 (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지) ①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이 대량 발생·서식하는 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u>자원관리수면</u>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u>자원관리수면</u>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u>관계 행정기관의 장과</u>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u>자원관리수면으로</u>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u>자원관리수면의 지정</u>을 <u>해지</u>할 수 있다.</p> <p>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u>자원관리수면</u>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지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 육성수면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통합 * “자원관리수면”으로 새로 명명</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지정목적 범위 안에서 그 관리·이용규정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이용규정을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수면의 지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관리수면으로 존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⑤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수산업법</p> <p>제71조 (육성수면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삭 제)</p> <p>③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u>자원관리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u>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u>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을</u> 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수면관리·이용규정은 그 조성수면의 지정목적·관리기간·서식 또는 조성중인 수산자원에 관한 정보·조성시설 또는 노력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에 따라</u>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u>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u></p>	
<p>기르는어업육성법 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수면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②관리수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 (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u>자원관리수면 안에서</u>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 기르는어업육성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의 금지와 허용은 이 법 제14조제3항으로 같음</p>
<p>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동태조사)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p>	<p>제16조 (수산자원보호구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내수면과 해면에 인접한 육상 또는 해상 일정한 구역을</p>	<p>- 국토계획이용법률(제40조)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이관 -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산자원의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p>	<p>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토목공사, 건축물·구조물등의 건축·설치 또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산자원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p>	<p>- 수산자원보호령(제29조의2)을 흡수 - 행위제한의 근거</p>
<p>제 4 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p>		
<p>수산업법 제52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p>제17조 (수산자원관리원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원칙을 준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2. 수산자원의 최적이용을 증진시킨다. 3. 해양환경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4. 국제협약 및 관행에 따른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p>* 수산업법 제52조의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일반적 관리원칙으로 전환 * 수산업법 제52조의 일부 규정들은 별칙편으로 이관 * 일반적 국제협약의 관리원칙을 준용</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10.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별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별칙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 4 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u>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u>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1 및 그 부도와 같다. 2.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 별표 2 및 그 부도와 같다.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별표 3 및 그 부도와 같다. 4. 기선선인망어업. 별표 4 및 그 부도와 같다.</p>	<p>제18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①<u>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어업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종류의 그물 또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어업조정 또는 수산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향후 법률간의 역할분담 - 어업의 종류 : 수산업법에 설정 - 어업의 제한 :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과 근해선망어업. 별표 5 및 그 부도와 같다.</p> <p>6.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 별표 5의2 및 그 부도와 같다.</p> <p>7.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6 및 그 부도와 같다.</p> <p>8. 삭 제</p> <p>9. 근해형망어업. 별표 11 및 그부도와 같다.</p>		
<p>수산자원보호령</p> <p>제 7 조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선망중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북위 38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 동경 125도50분의 교점, 북위 34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북위 34도30분 동경 129도의 교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순차로</p>	<p>제19조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① 행정 <u>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의 의하여 설정된 그물 또는 어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물·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구역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어구”라 함은 어획효율이나 어로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유인·포획·채취 또는 보관 등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도구 기타 설비를 말한다.</p> <p>* 향후 법률간의 역할분담 - 어구의 종류 : 수산업법에 설정 - 어구의 제한 :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연결한 선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끝에서 정동 7천미터의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6천6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끝에서 정동 9천6백미터의 점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밖의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제주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00미터이내의 해역</p> <p>②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라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자지도 등대를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삼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중형기선저인망은 별표 8 및 그 부도에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동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해안선과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계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동력어선에 사용되는 형망(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을 제외한다)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 삭 제</p> <p>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우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계를 연결하는 선안의 해역 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p>⑧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청남도·전라북도</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해역에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⑨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에서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2. 전라남도 여수시·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p>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획어업의 어망중 낭장망·주목망·해선망과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포함한다)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자망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근해안강망·연안선망·근해선망·연안자망 및 근해자망 <p>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남면 안도·남면 연도 및 완도 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이내의 해역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2.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p> <p>⑫제11항제2호의 구역안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들망을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⑬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돌출부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견유마을 동쪽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견내량마을선착장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어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⑭제13항에 규정한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들망 및 근해선망·연안선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부락 서쪽끝, 여수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끝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끝과 서도리 북쪽</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남쪽끝 동도리 남쪽끝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에서는 들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⑮멸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선망은 별표 9 및 그 부도에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6. 멸치를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 및 근해자망 어업은 별표 10 및 그 부도에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7.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선저인망에 한한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해역에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8.연안선인망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 9 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p> <p>①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예 한한다) 3.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5.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경우 	<p>제20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p> <p>①행정관청은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남획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u>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 또는 <u>시·도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포획·채취의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u>을 정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 회귀성 내지 소하성 어종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6. 삭 제</p> <p>7. 자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p> <p>8. 대게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p> <p>9. 꽃게 :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해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해당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p> <p>10. 닭새우 : TS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p> <p>11. 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p> <p>12. 전복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13.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p> <p>14.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5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p> <p>15.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p> <p>16. 꼬끼리조개 : 8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p> <p>17. 보라성게 : 강원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p>	<p>* 시·도지사가 시·도조례로 규정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의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20조제1항을 규정</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정안	비고
<p>18. 북쪽말뚝성게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p> <p>19.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p> <p>20. 톳 :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p> <p>21. 감태류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p> <p>22. 우무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p> <p>23. 도박류(진도박·떡도박)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p> <p>24. 참게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p> <p>25. 열목어 :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암컷 포획금지)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1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남획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식</p>	<p>* “체장”이라 함은 센티미터(cm)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개체 전체의 길이 또는 크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종류별로 측정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을 말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홍갑장) 15. 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홍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 제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26. 넙치 : 21센티미터 27. 대구 : 21센티미터 28. 문어 : 300그램 	<p><u>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포획이 가능한 체장 또는 체중을 정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종류별 체장 또는 체중을 측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 “체중”이라 함은 그램(g)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개체 전체의 무게로서 채포·포획 직후 자연상태의 수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포획·채취물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 (긴급보호명령) 행정관청은 그 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구역의 특정 어종 또는 회유성 어종의 어획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평가의 결과 특별한 자원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허용되는 구역,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구사용이 허용되는 구역 및 기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가 허용되는 구역 및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어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설정하거나 포획·채취물의 종류, 체장·체중·어구 및 어법을 제한하는 긴급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와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p>
<p>제11조의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어류등 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제23조 (물고기 알등의 채취·포획 제한) ① 물 속에 낳은 물고기 알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어류등 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해양수산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수산업법 제73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어망에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 (유해어법등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무기산등의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 8 조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 (삭 제) ②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2천미터에 이르는 구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연안안강망어업 및 연안낭장망어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 서쪽끝, 군산시 옥도면 서쪽끝과 동경 126도40분 북위 36도02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개화도 고정과 동도 군산시 옥도면 화산 고정을 연결한 선, 이동의 만경강 및 동진강 수면</p>	<p>제25조 (포획·채취의 강화 또는 완화)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른 포획·채취의 구역과 시기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u>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강화 또는 완화를</u>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규약의 수립 또는 이행의 결과를 평가·반영할 수 있다.</u> 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강화 또는 완화를</u>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 “체장”에 관한 규율은 제21조에서 규율 * “양식을 위한 채포”를 포함 * 자발적 협약과 자치규약을 인센티브로 활용 * 특별한 제한을 인정 * 특별한 완화를 인정 * 자원조사 및 평가와 연계</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3. 삭 제</p> <p>4. 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고정, 동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 고정과 동군 해리면 동호리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수면</p> <p>④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다음 구역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지 못한다.</p> <p>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25분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35분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25분 및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35분의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p> <p>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제한) ① (생략)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p>		
<p>수산자원보호령</p> <p>제 6 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p> <p>1. 선인망어업·연안선망어업 및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겐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p>	<p>제26조 (그물코의 표준규격) ①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그물 또는 어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u>그 표준규격 및 오차를 정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물 또는 어구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2중이상의 그물(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제한을 위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을 설정 - 적용예외를 규정</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p> <p>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p> <p>3. 중형기선저인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3밀리미터이하의 것</p> <p>4.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54밀리미터이하의 것</p> <p>5. 삼치의 포획을 주로 하는 근해자망 또는 연안자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100밀리미터이하의 것</p> <p>6. 근해선망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이 30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사용중인 어구의 그물코의 규격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오차범위를 허용한다.</p> <p>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2중이상의 자망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0밀리미터이하의 것</p> <p>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근해안강망에 포획된 해파리가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파리 배출망에 그물코의 규격이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인 어망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p> <p>9. 동해구트롤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43밀리미터이하의 것</p>	<p>③해양수산부령으로 <u>일정한 모양의 그물에</u>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이하, 붉은 대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120밀리미터이하의 것(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 선 이북의 동해에 한한다)</p> <p>나. 꽃게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65밀리미터이하</p> <p>다.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이하.</p> <p>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은 3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붉은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제10호가목을 적용한다.</p> <p>12. 연안개량안강망(연안안강망 및 연안낭장망을 제외한다)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p> <p>13.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24밀리미터 이하의 것.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빙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의 것</p> <p>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연안개량안강망·중형기선저인망·대형기선저인망·대형</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트롤어망·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낚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1항제1호(단서를 제외한다)·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멸치·빙어·보리멸·문절망둑·싱어·반지·밴댕이·황강달어·뱀장어·갯장어·붕장어·젓새우 또는 근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 기타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은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입구 안쪽에 붙이는 갈때기 모양의 그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 6 조의2 (어구의 규모제한)</p> <p>①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 또는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 (어구의 규격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p> <p>①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u> 해양수산부장관은 <u>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격 또는 어망(그물코)의 규격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u>강화하거나 완화</u>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강화 또는 완화</u>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규약의 수립 또는 이행의 결과를 평가·반영</u>할 수 있다.</p>	<p>*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와 연계</p> <p>* 어구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강화 또는 완화</p> <p>* 어구·어법에 대한 조사는 제8조(자원의 조사와 평가)의 항목으로 규율</p> <p>* 자발적 협약 또는 자치규약과 연계</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화 또는 완화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u>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수산업법 제74조 (소하성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 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 수</p>	<p>제28조 (소하성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①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 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장소 및 마리 수</p>	
<p>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3 (수산동식물의 이식 등) ①법 제79조제1항제5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p>	<p>제29조 (수산동식물의 이식) ①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p>	<p>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4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당해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수산동물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p>제30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 ①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에 대하여서는 국제협약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종류와 방법등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 수산동식물을 지정하거나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 보충성의 방식을 채택 : 멸종위기 수산동식물에 대하여서는 제1차적으로 국제협약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법(안)에서 규율하고 이 법은 나머지 사항을 규율</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시험조사·연구를 거쳐 그 중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산동물</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 수산동물을 지정하거나 그 수산동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p> <p>제16조 (<u>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등</u>)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법 제7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u>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과 양식 또는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의 기준·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1조 (<u>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기준 등</u>)</p> <p>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과 양식 또는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이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의 기준·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수산업법</p> <p>제79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①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어법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도차단의 제한 또는 금지 5. 외국으로부터 수산동식물의 반입·이식 또는 외국으로의 반출에 관한 제한·금지·승인 6.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수질오탁 및 오염의 제한 또는 금지 7. 수산동식물의 병해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8. 수산동식물의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9.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p>②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③행정관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제32조 (자원보호를 위한 부가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u>제18조 내지 제23조에서 규정한</u> 금지구역·기간·어종 및 어구 등과 <u>관련하여</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조치를 취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 수질오탁 및 오염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병해방지에 관한 사항과 양식 및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품 또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p>②행정관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u>대체의무를</u> 명할 수 있다.</p>	<p>-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부대조치를 규정</p> <p>- 수산동식물의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에서 규정</p> <p>- 대체의무 부과</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수산업법 제75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수산업법 제76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p>	<p>제33조 (범칙어획물에 대한 조치 및 명령) ① 누구든지 이 법 제18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산자원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p>	
<p>제 5 장 어획노력량의 관리</p>		
<p>수산업법 제54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34조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①수산업법 제41조의 구분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획어업의 허가정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평가의 결과, 해당 어업경영자들의 숫자 또는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참작하고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대체 조항의 신설 : 수산업법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를 폐지시킴에 따라 동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조업구역’과 동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와 이를 구체화시킨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갈음할 상위 법률상의 근거조항 필요</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칙으로 현행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 *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결정후 개별 허가어업에 대한 구체적 허가처분은 수산업법을 적용
<p>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3 (근해어업의 어선의 선복량제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이상의 근해어업의 업종분류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을 증톤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안에 해당하는 증톤의 오차를 허용하되, 증톤되는 어선의 총톤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35조 (선복량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속선 및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복량 제한의 기준·한계·방법 또는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톤수의 제한 *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포함
(신규)	<p>제36조 (기관출력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의 기관 출력을 제한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마력수를 제한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출력을 제한하고자 할경우에 <u>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u> 그 제한의 결정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신 규)	<p>제37조 (어구의 규모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u>크기와 사용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항 및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업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구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u>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 어구의 규격이외에 규모를 제한</p> <p>* 어구의 규모 : 어구의 크기와 사용량</p>
(신 규)	<p>제38조 (어구의 실명표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구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실명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의 표시를 요하는 어구의 종류와 표시의 위치·방법·절차 및 관리자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의 표시가 필요한 어구로서 실명표시가 없이 조업에 이용중인 어구와 그 안에 포획된 수산물은 무주물로 본다.</p>	<p>* 실명표시가 없는 어구를 무주물로 간주</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④수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 또는 어업인은 그 관리에 속하는 폐그물 기타 폐어구를 회수하여 처리할 책임을 진다.</p> <p>⑤제4항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어선 또는 어업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표시가 필요한 어구에 대한 허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실명표시가 없이 조업에 이용중인 어구와 그 안에 포획된 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p>	<p>* 관할 행정기관에 의한 수거 및 처분</p>
<p>제 6 장 어획량의 관리</p>		
<p>(신 규)</p>	<p>제39조 (어종별 어획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p>	<p>* 어획량 관리의 “원칙” 규정</p> <p>* 어획가능량의 관리</p>
<p>수산업법 제54조의2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p>	<p>제40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선노력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u>수산자원관리위원회 총허용어획량전문위원</u></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선노력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2 (총허용어획량의 결정) ①해양수산부장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등에서의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관리대상수산자원에 대한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3. 어업의 종류별·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종별 총허용어획량 중 시·도별 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제3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종별 또는 시·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u>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2. <u>부수어획, 초과어획, 읍서버에 관한 사항</u> 3.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p>* 하위법령 규정사항</p> <p>[어획량결정]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 안에서 어업여건·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어선규모, 대상어업의 어획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위원회] 총허용어획량전문위원회는 과학자·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정보제공]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1.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방침</p> <p>2. 어업의 종류별·해역별 또는 기간별 허용 어획량에 관한 사항</p> <p>3. 제2호의 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p> <p>③시·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대상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등에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계획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선의 규모 등은 관리대상수산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의 범위안에서 어업여건·어업종사자의 수,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선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대상수산자원등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수준의 평가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p> <p>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는 과학자·어업인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⑦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의 수립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수산자원보호령</p> <p>제27조의3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제27조의2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표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단속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p>	<p>제41조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u>제40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표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u>제42조의 규정에 의한</u> 배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권고·지도 또는 단속을 할 수 있다.</p>	<p>* 어획량의 배분 : 제42조로 규율</p> <p>* 포획량의 보고 : 제44조로 규율</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배분량에 관련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포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지도·단속·권고, 포획·채취의 정지와 포획량의 보고등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량의 합계가 <u>제42조의 규정에 의한</u>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배분량에 관련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포획·채취를 <u>중단시키거나</u>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총허용어획량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운전자 및 모든 선원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u>오피서버의 임무수행을 허용·지원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 오피서버 활동의 지원</p>
<p>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p> <p>제12조 (배분량의 할당등) ①영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조합장 또는 어업관련단체장으로부터 소속어업자별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어업자별로 할당한다.</p> <p>②영 제2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별조합장으로부터 소속</p>	<p>제42조 (총허용어획량의 배분량의 할당 등)</p> <p>①<u>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조합장 또는 어업관련단체장으로부터 소속어업자별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어업자별로 할당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량의 할당과 관련된 어업자별 할당 또는 할당계획서의 제출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하위법령 규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시·도지사가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별조합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업종별조합 또는 어업관련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자에 한한다)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어업자별로 할당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는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어업자(업종별조합 또는 어업관련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자에 한한다)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어업자별로 할당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는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 대하여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할당한다.</p> <p>④업종별조합장·어업관련단체장 또는 지구별조합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소속어업자별할당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경우 어선을 2척이상 소유한 어업자에 대하여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할당한다.</p> <p>- 업종별조합장·어업관련단체장 또는 지구별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소속어업자별할당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p> <p>제 9 조 (포획량등의 공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어획량(이하 "포획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영 제27조의 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게 된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3. 포획량의 합계가 단기간에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p>제43조 (포획량 등의 공표)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포획량의 합계가 <u>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배분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게 된 후에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3. 포획량의 합계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u>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이름 2. 제1호의 수산동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3. 공표시까지의 포획량의 합계 4. 배분량에 대한 공표시까지의 포획량의 합계의 비율 5.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량의 합계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주간신문(수산분야의 것을 말한다)에 게재하거나 시·도지사, 업종별조합장, 어업관련단체장 및 지구별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채취되는 수산동물의 이름 2. 제1호의 수산동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3. 공표시까지의 포획량의 합계 4. 배분량에 대한 공표시까지의 포획량의 합계의 비율 5. 포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포획량의 합계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주간신문(수산분야의 것을 말한다)에 게재하거나 시·도지사, 업종별조합장, 어업관련단체장 및 지구별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 (포획·채취실적 보고) ①어업자는 영 제2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포획·채취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포획·채취된 수산동물을 양륙하는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포획·채취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4조 (포획·채취실적의 보고)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의 조사나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동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할 경우에 어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체의 장</p> <p>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의 장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p> <p>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로부터 포획·채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어업자가 소속된 업종별조합장·어업관련단체장 또는 지구별조합장(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업종별조합장·어업관련단체장 또는 지구별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실적보고서의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리대상수산자원별로 포획·채취실적을 집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포획량의 합계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표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자에 대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조업위치보고서에 포획·채취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체의 장</p> <p>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의 장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p> <p>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자로부터 포획·채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어업자가 소속된 업종별조합장·어업관련단체장 또는 지구별조합장(소속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업종별조합장·어업관련단체장 또는 지구별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실적보고서의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리대상수산자원별로 포획·채취실적을 집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포획량의 합계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표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자에 대하여 <u>그</u> 포획·채취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⑤읍서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산자원관리공무원에게 보고한다.</p>	<p>*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에 의한 어선의 조업위치보고서와 연계</p> <p>* 읍서버의 보고</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4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지정) 어업자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을 사용하여 선상에서 냉동·냉장·염장·건조 또는 삶은 제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5조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지정) 어업자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어획물과 그 어획물을 사용하여 선상에서 냉동·냉장·염장·건조 또는 삶은 제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도·단속)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이하 “어업감독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어업감독공무원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선장등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을 항·포구 또는 일정해역으로 오게 한 후 승선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의 정선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어업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도·단속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p>	<p>제46조 (지도·단속)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하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u> ②수산자원관리공무원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선장등으로 하여금 당해어선을 항·포구 또는 일정해역으로 오게 한 후 승선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선의 정선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산자원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을 한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u> 지도·단속 결과보고서를 작성</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지도·단속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도·단속상황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p>	<p>하여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관리공무원으로부터 지도·단속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u> 지도·단속 상황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p>	
<p>제 7 장 자원의 조성</p>		
<p>(신 규)</p>	<p>제47조 (인공어초의 시설)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u>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동시행계획에 따라</u>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어초의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어초의 모형·목적·대상생물·해역별로 시설용량 및 수요량의 산정</u> 2. <u>어초시설 사업지침의 표준화</u> 3. <u>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개발</u> 4. <u>어초의 사후관리</u> 5. <u>연안과 근해를 연계한 어장조성기술개발 및 조성</u>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수역별 특성과 어울리는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u>제공</u>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신 규)	<p>제48조 (해중립의 조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동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중립 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갯녹음 실태조사 2. 해조장 조성 지침의 표준화 3. 해중립 조성기술의 개발 4. 사업의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수역별 특성과 어울리는 해중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구역내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신 규)	<p>제49조 (수산종묘의 방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동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역별·품종별 종묘의 방류 2. 방류종묘의 원활한 확보 및 관리 3. 종묘생산 및 방류기술의 개발 4. 방류효과분석 5. 등록제 및 종묘배양장의 활성화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수역별 특성과 어울리는 수산종묘방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u>제공</u>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구역내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종묘생산 품목을 결정하고 해역별 특화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품종을 방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수산종묘를 방류할 경우에는 <u>생물다양성, 질병전염방지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u> 한다.</p>	
(신 규)	<p>제50조 (바다목장사업)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동시행계획에 따라</u>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바다목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역의 범위 2. 어장의 조성 및 자원증대방안 3. 자원이용관리방안 4. 생태계관리 5. 사업의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수역별 특성을 <u>고려하여</u>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u>제공</u>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바다목장사업 추진구역의 어업인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다목장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목장의 <u>이용과 관련하여</u> 해당 구역 내의 어업인 또는 그 단체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기르는어업육성법 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나 당해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해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나 당해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당해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p><u>5. 수산업법 제7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동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로서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동법 제4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상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p>제52조 (수산자원조성금)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5. 수산업법 제7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동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로서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동법 제4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상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p>(이 관)</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3.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중 소량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p>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p> <p>③행정관청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p> <p>④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수산자원보호에 미친 영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행정관청은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⑥조성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중 소량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p>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p> <p>③행정관청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p> <p>④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수산자원보호에 미친 영향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행정관청은 재해를 당한 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⑥조성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⑦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조성금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⑦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조성금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기르는어업육성법 제 6 조 (자금의 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u>조성 또는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어업</u>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제53조 (재정지원 및 자금보조) ①<u>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회복 또는 조성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어업인단체 또는 어업인 등에 대하여 <u>수산자원의 관리에 필요한</u>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 자원회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가</p>
<p>제 8 장 수산자원관리위원회등</p>		
<p>(신 규)</p>	<p>제54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①<u>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회부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u>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아래 수산자원회복계획 또는 <u>총허용어획량계획 등의 전문분야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 하위법령 규정사항 [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정수와 임기·예우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역별 어업인단체등의 구성원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어업인 [6]인 2. 수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인 3.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6]인 4.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인
<p>(신 규)</p>	<p>제55조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 기타 시·도지사가 회부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②시·도위원회 아래 수산자원회복계획 또는 총허용어획량계획등의 전문분야를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③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예우등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 하위법령 규정사항</p> <p>[위원회] ①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②시·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역별 어업인단체등의 구성원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어업인 [5]인 2. 수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3.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 수산업 관련 업무 담당자 [8]인 4.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인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신 규)	<p>제56조 (한국수산자원관리협회) ①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등 민간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역량을 지원하고 정부시책의 수립·이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협회는 특수법인으로 한다.</p> <p>③협회에 사무국을 둔다.</p> <p>④협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p> <p><u>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분쟁의 예방 또는 그 해결의 알선·조정</u></p> <p><u>2. 자발적 협약 및 자치규약의 체결과 그 이행의 장려</u></p> <p><u>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수산자원관리 업무의 수행</u></p> <p>4.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업</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특수법인의 설립</p> <p>* 기존 협회·전문단체등의 흡수·통합: 부칙</p> <p>* 재판외 분쟁해결(ADR)의 촉진</p> <p>* 자발적 협약등의 촉진</p> <p>* 부칙조항으로 기존의 협회등을 흡수</p>
(신 규)	<p>제57조 (자발적 협약) ①어업인단체 및 관련 단체와 정부는 수산자원의 이용에 관한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관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1. 협약의 대상이 되는 해역과 수산동식물</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2. 대상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현황과 방법 3. 상호협력의 목표와 내용 4. 협약의 유효기간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6.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협약의 체결방법 및 참여와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민·관의 협력에 의한 관리기반의 조성 * 민간과 정부(지자체 포함)가 협약을 체결 * 민간만에 의한 자치규약(제58조)과 구분
<p>수산업법 제72조 (어업의 자율관리지원) ①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이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규약의 이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 (자치규약의 인가와 지원) ①어업인단체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이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약의 내용이 수산자원관리에 기여할 것 2. 규약의 내용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3. 규약의 내용이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의한 명령 기타 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 수산업법 제72조(2004.12.31제정)의 이관 * 조문 제목 변경 * “어업질서” 항목을 수산업법으로 이관 * 용어변경 : 자체규약 → 자치규약 *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인가를 도입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인가의 절차</u>, 이행의 확인, 어업인단체의 범위, 규약참가의 알선 및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제 9 장 보 칙		
<p>수산업법 제80조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제59조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u>오피서버 기타 수산자원의 관리에</u>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①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제1호의 경우, 제2호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중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 (금지조항의 적용제외) ①<u>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에 대하여서는 제18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포획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채취·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u></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1.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육상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때</p> <p>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할 때</p> <p>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p> <p>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p> <p>5. 제2호 내지 제4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p> <p>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p> <p>2.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p> <p>3. 포획·채취의 방법</p> <p>4.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p> <p>5. 포획·채취의 시기</p> <p>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를 위한 수산동물의 포획허가를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육상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때</p> <p>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할 때</p> <p>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친어)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p> <p>4. 수산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p> <p>5. 제2호 내지 제4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u>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덧붙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p> <p>2.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p> <p>3. 포획·채취의 방법</p> <p>4.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수량</p> <p>5. 포획·채취의 시기</p> <p>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를 위한 수산동물의 포획을 허가할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④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8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이나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p>⑥제1항 및 제4항의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20조의 금지기간과 제28조의 체장·체중 제한규정을</u>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어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이나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수산업법</p> <p>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협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 행정관청에 대한 위임</p> <p>*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위탁</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수산업법 제62조 (어업감독공무원) ① 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2조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의 직무수행) ①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은 수산자원의 관리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산자원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수산업법 제63조 (사법경찰관)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p>	<p>제63조 (사법경찰관)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신 규)	<p>제64조 (개선·정지명령) ①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후 그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복량의 제한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출력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p>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여전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복량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 기관출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신 규)	<p>제65조 (과징금 처분) ①행정관청은 어업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그 어업인의 생활,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 및 수산자원의 거래 질서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경제적 이익의 2배까지 또는 그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체장 또는 체중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명령</p> <p>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등의 금지</p> <p>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그물코의 표준규격</p> <p>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이식</p> <p>8.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기준 등</p> <p>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배분량의 할당</p> <p>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p> <p>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 규)	<p>제66조 (청문) 행정관청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수산업법 제93조의2 (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수산업의 동향과 수산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7조 (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수산자원관리의 동향과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신 규)</p>	<p>제68조 (사전협의 및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3. 건축법상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5.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안육역 및 연안해역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p>* 행정절차의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 사전협의후 인·허가의 의제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3. 건축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6.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제10장 벌 칙		
	<p>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기간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속에 낚은 물고기 알을 채취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u>유해어법의 금지</u> 를 위반하거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구의 규격에 대한 강화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칙포획·채취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금지 위반한 자	<p>* 수산업법 제73조(유해어법의 금지)를 수용</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5.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선복량 및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출력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이러한 제한 또는 금지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 6.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구의 규모 제한을 위반한 자	
	제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호수면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수면안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원관리수면 안에서 허가 없이 각호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구의 실명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그물 기타 폐어구를 회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 금지 또는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제3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하성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한 자</p> <p>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4.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p>	<p>* 수산업법 제74조(소하성 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를 수용</p> <p>* 수산업법 제76조(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를 수용</p>
(신 규)	<p>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자</p> <p>2. 제52조제1항에 규정된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를 면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 면제를 위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p> <p>3.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관청 또는 공무원은 전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하게 당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한다.</u></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③ 계고장의 발부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계고장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명령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정산기준에 따른 감액·납입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관할관청은 과태료부과를 명령받은 자의 사업규모, 책임정도, 위반경력 및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액하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과태료의 정산요소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신 규)	<p>제73조 (몰수) ①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3회</p>	

관련법령 내지 초안	제 정 안	비 고
	<p>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p>	
	<p>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참고문헌

- 한규설, 수산업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2004.1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 류정곤, John M. Gates, 남종오, 『우리나라 ITQ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해양수산개발원(2004)
- 한국수산회, 수산자원회복계획 초안작성을 위한 Working Group 운영 (해양수산부 : 2004.12)
- 황갑수, 수산업법해설 (수협중앙회 : 2004)
- 황갑수, 어업피해보상(배상)판례연구 (수협중앙회 : 2002)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2002 (2002.9 : 해양수산부)
- 정도훈,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 방지시스템에 관한 연구(2002.8 : 부경대학교 대학원)
- 부경대학교, 수산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2.2:해양수산부)
- 한국법제연구원, 해양수산법제 연혁분석표 I [개발·보전편](2002.7)
- 홍성걸 외, 수산정책 집행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20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여수대학교, 어업보상 및 배상관련 분쟁조정제도 수립방안연구(2001.10:해양수산부)
- 송낙헌, 동해안지역해수욕장운영의 합리화방안(2001.11: 강원발전연구원)
- 최종화·차철표, “우리나라 어업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3권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1
- 최종화, 『국제해양법강의』 태화출판사(1998)
- 차철표, “수산업법상 어업자원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1998)

-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1998 : 한국법제연구원)
- 전재경·이종길, 어촌사회의 법률관계(1997 : 한국법제연구원)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어장정화 및 정비법제정을 위한 조사연구
(1997 : 해양수산부)
- 해운산업연구원, 21세기 해양수산업의 진로(1996:해운산업연구원)

[日本文獻]

-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지음, 이선애 옮김, 海洋人類學 (서울, 민속원 : 2005)
- 金田禎之, 漁業法のここが知りたい、(東京都, 成山堂 : 2003)
- 解説 계획영어의 전국적 전개, 전어련지도부, 어협 No4, 85. 6.
(2004)
- 국제어업재편대책실시요강등통달집, 사단법인 대일본수산회, 2001. 1.
- 수산기본계획관계자료, 농림수산성, 2002. 4.
- JF그룹의 사업·조직·경영개혁을 향한 운동방침,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02. 11.
- 어선어업재생재편에 관한 정책요망, 사단법인 대일본수산회, 2004. 3.
- 자원회복등추진지원사업실시요령의 제정에 있어서, 농림수산사무차관,
2004. 4.
- 자원회복등추진지원사업비보조금교부요강의 제정에 있어서, 농림수산
사무차관, 2004. 4.
- 2003년도 사업보고(사업보고서·수지결산서), 사단법인 대일본수산회,
2004. 5.
- 2004년도 사업계획(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사단법인 대일본수산회,
2004. 5.
- (그림으로 보는) 일본의 수산, 수산청, 2004. 6.
- 수산기본법의 개요(あらまし), 수산청(2004)

- 수산기본계획의 개요(あらまし), 수산청(2004)
- 어업법에 관하여, 수산청 기획과 법령계(2004)
- 자원회복계획 · 어획노력량(TAE) 관리제도의 개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수산청 감수)(2004)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활동에 관하여,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국제대책실(2004)
- 제52년도 사업보고서(2003년4월1일부터 2004년3월31일까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英美文獻]

-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Executive Summary, 『Net Benefits : A Sustainable and Profitable Future for UK Fishing』* (Cabinet Office : March 2004)
-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2002 reissue** : Fisheries, Preliminary
- Halsbury's *Statutes England and Wales*(4th edn: London) vol.18 : Fisheries, Preliminary
- R.Gordon Pirie, *Oceanography: Contemporary Readings in Ocean Sciences* (3rd.edn)(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Jan G. Laitos & Joseph P. Tomain, (1992: West)
- Bonnie J. McCay, *ITQ Case Study: Atlantic Surf Clam and Ocean Quahog Fishery, in Limiting Access to Marine Fisheries: Keeping the Focus on Conservation* (Karyn L. Gimbel ed., 1994)

- Carrie A. Tipton, *Note, Protecting Tomorrow's Harvest: Developing a National System of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to Conserve Ocean Resources*, 14 Va. Env'tl. L.J. 381,(1995)
- Catherine E. Decker, *Issues in the Reauthorization of the 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 Ocean & Coastal L.J. 323,(1995)
- David A. Dana, *The Ecosystem Approach: New Departures for Land and Water: Fisheries Management: Overcoming the Political Tragedy of the Commons: Lessons Learned from the Reauthorization of the Magnuson Act*, 24 Ecology L.Q. 833
- E. Michael Linscheid, *COMMENT: Living to Fish, Fishing to Live: The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Fishing-Dependent Communities*, 36 U.S.F.L. Rev. 181(2001)
-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162 Science 1243 (1968)
- Grant Monk & Grant Hewison, *A Brief Criticism of the New Zealand Quota Management System, in Limiting Access*
- Harry N. Scheiber, *Ocean Governance and the Marine Fisheries Crisis: Two Decades of Innovation and Frustration*, 20 Va. Env'tl. L.J. 119,(2001)
- John McQuaid, *Fisheries Overhaul Act Passes in Senate*, New Orleans Times-Picayune, Sept. 20, 1996, at A1.

- NOAA Fisheries, *Achievements in Marine Stewardship Since Passage of the Sustainable Fisheries Act of 1996*
- ----- *Bush Administration Recommends Strengthening of Magnuson - Stevens Act*, 2003. 6. [http://www/docs/Magnuson Press Release .pdf](http://www/docs/Magnuson%20Press%20Release.pdf)
- -----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Fisheries Act ACHIEVEMENTS FROM 1996 TO THE PRESENT*, (2003. 6)
- Peter Shelley et al., *The New England Fisheries Crisis: What Have We Learned?*, 9 Tul. Envtl. L.J. 221 (1996)
- Sharon R. Siegel, *Applying the Habitat Model to Fisheries Management: A Proposal for a Modified Fisheries Planning Requirement*, 25 Colum. J. Envtl. L. 141 (2000)

참고자료 1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1 장 총 칙	<p>목적(제1조)</p> <p>정의(제2조)</p> <p>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제3조)</p> <p>어장이용개발계획 등(제4조)</p> <p>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제5조)</p> <p>서류송달의 공시(제6조)</p> <p>공동신청(제7조)</p>	<p>어장이용개발계획 등(제4조)</p> <p>시행령(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등:제3조)</p> <p>시행령(서류송달의 공시:제4조)</p> <p>시행령(공동신청:제5조)</p>	<p>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개발계획의 수립등:제2조)</p> <p>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등: 제6조의2),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제3조의2)</p> <p>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공동신청시의 변경신고:제3조)</p>	
제 2 장 면 허 어 업	면허어업(제8조)	<p>·시행령(면허신청등:제6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제8조, 양식어업의 종류:제9조,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이 한계등:제10조)</p> <p>·수산자원보호령(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제6조의3)</p>	<p>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또는 소지:제41조의5),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목적:제1조, 우선순위결정의 신청등:제4조, 면허신청등:제5조, 다른 어업과의 관계:제5조의2, 다른 어업과의 관계:제5조의2, 정치망어업어업의 가두리시설:제13조, 어장의 시설기준:제15조,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제16조, 패류양식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제16조의2,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제17조)</p>	

참고자료 1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2 장 면 허 어 업	마을어업 등의 면허(제9조)	시행령(협동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등:제11조, 준조합원의 자격:제11조의2,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제11조의3)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등: 제5조의3)	영어조합법인정관(예) (고시 제1997-45호)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목적:제1조, 조합법인의 설립통지:제2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9조의3)			
	면허의 결격사유(제10조)	시행령(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제12조의2)		
	면허의 금지(제11조)	시행령(면허의 금지요청등:제13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면허의 금지: 제9조)	
	어업의 제한 및 조건(제12조)	어업등록령(직권등록사항:제39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4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제12조),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등록의 제한기간 등: 제5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6조)	
	우선순위(제13조)	시행령(수산기술자등: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제14조)	시행령(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제14조의2)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제21조)	
	면허 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제14조의2)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제15조)			
어업권의 등록(제16조)	어업등록령(목적:제1조)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2 장 면 허 어 업	<p>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7조)</p> <p>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제18조)</p> <p>어촌계 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제19조)</p> <p>담보시의 공작물 부가(제20조)</p> <p>공유자의 동의(제21조)</p> <p>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제22조)</p> <p>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제23조)</p> <p>제24조 삭제</p> <p>어업권의 경매(제25조) - 어업등록령(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소멸의 등록등: 제55조)</p> <p>제26조 삭제</p> <p>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제27조)</p>	<p>시행령(어업권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16조)</p> <p>시행령(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17조)</p>	<p>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어업권이전인가신청 등:제22조, 어업권분할가신청 등: 제23조, 어업권변경인가신청 등:제24조,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관한 기준·절차등: 제30조의2)</p> <p>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등: 제26조,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제26조의2,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제26조의3, 관리선</p>	

참고자료 1 수산업법제 연관분석표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2 장 면 허 어 업	<p>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 등(제28조)</p> <p>보호구역 (제29조)</p> <p>휴업의 신고 (제30조)</p> <p>어업의 개시 등 (제31조)</p> <p>타 인 지 배 의 금지 (제32조)</p> <p>임대차의 금지 등(제33조)</p> <p>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 어업의 제한 등(제34조)</p>	<p>수산자원보호령 (어업권보호 구역내의 행위제한: 제26조)</p> <p>시행령(어업개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의2), 어업등록령(면허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제43조)</p> <p>시행령(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등: 제18조, 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제19조), 어업등록령(면허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제43조)</p>	<p>의 규모: 제27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유어장관리선: 제5조)</p>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등: 제28조)</p>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제12조)</p> <p>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휴업등의 신고서: 제2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휴업등의 신고: 제29조),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규칙(휴업의 신고: 제10조)</p> <p>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타인지배의 한계: 제23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타인지배의 한계: 제30조),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규칙 (타인지배의 한계: 제11조)</p>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절차등: 제30조의 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목적: 제1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p>	<p>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 1998-85호)</p>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2 장 면허 어업	면허어업의 취소(제35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제37조) 어장관리규약(제38조)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 등(제39조) 입어 등의 제한(제40조)	어업등록령(면허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제43조) 시행령(어촌계등의 어업권 행사:제22조) 시행령(어업권행사의 제한등:제39조)	관한규칙(어업허가의 제한:제12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어업허가의 제한:제12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면허어업의 취소:제32조의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 관한규칙(목적:제1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어업권의 취소의 통지:제31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행사의 우선순위:제3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어장관리규약의 내용:제39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제40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제42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제42조)	
제 3 장 허가 및 신고 어업	허가어업(제41조)	·시행령(근해어업의 종류:제25조, 원양어업의 종류:제26조, 연안어업의 종류:제27조, 해상종묘생산어업:제28조, 구획어업의 종류:제29조) ·수산자원보호령(어구의 규모 제한:제6조의2,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제6조의3,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 근해어업의 어선의 선복량 제한:제23조의3)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적용범위:제2조, 어업의 명칭:제3조, 어업허가신청대상 등:제4조, 어업허가신청서:제6조, 어업허가의 신청시기등:제7조, 어업허가의 제한:제12조, 어업허가중의 교부:제17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제21조), 유어장의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1-44호)

참고자료 1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3 장 허 가 및 신 고 어 업	<p>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제42조)</p> <p>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3조)</p> <p>신고어업 (제44조)</p> <p>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 등 (제44조의2)</p> <p>준용규정 (제45조)</p>	<p>수산자원보호령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제6조의3)</p> <p>·시행령(신고어업:제33조)</p> <p>·수산자원보호령(어구의 규모 제한:제6조의2, 특정어구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제6조의3)</p>	<p>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유어장관리선:제5조)</p> <p>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적용범위:제2조, 시험어업의 신청:제24조, 연구·교습어업의 실시:제25조,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제25조의2, 시험어업실적의 관리:제29조)</p> <p>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제31조)</p> <p>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적용범위:제2조,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등:제18조, 신고어업의 신고:제32조, 어업신고필증의 재교부:제33조, 어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4조),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등록사항의 변경:제8조)</p> <p>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어업폐지의 신고수리:제35조), 어획물운반업허가에관한규칙(등록사항의 변경:제8조)</p> <p>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목적:제1조)</p>	<p>연구·교습어업의 승인대상기관 지정 (고시 제1997-63호)</p>
제 4 장 어 획 물 운 반 업	<p>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46조)</p>	<p>시행령(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36조)</p>	<p>어획물운반업허가에관한규칙 (목적:제1조, 등록의 신청:제2조, 시설기준:제3조,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종류:제4조, 등록의 제한기간:제5조)</p>	<p>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등록기준(고시 제2002-17호)</p>

	수산법	수산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4 장 어획물 운반업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제47조) 제48조 삭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제49조) 제50조 삭제 준용규정 (제51조)	수산자원보호령 (적용범위:제3조)	어획물운반업허가에관한 규칙(목적:제1조), 수산 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 한규칙(목적:제1조)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 한규칙(목적:제1조)	
제 5 장 어업 조 정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제52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제53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제54조) 총허용어획량 의 설정(제54 조의2) 유어장의 지정 등(제55조) 제56조 삭제	수산자원보호령(위생관리를 위 한 어업제한:제18조의2, 위생관 리기준의 설정등:제18조의3) 시행령(조업수역의 조정신청등: 제46조) 수산자원보호령(적용범위:제3 조,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제27 조의2) 시행령(유어장의 지정등:제47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 한규칙(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4조)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 관한규칙(목적:제1조, 기본계획의 변경:제2조, 수산자원관리계획의 승 인신청:제3조, 포획량 등의 공표:제9조, 지도· 단속:제10조, 배분량의 할당:제12조, 포획·채 취실적보고:제15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규칙(목적:제 1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8 조, 유어장의 지정 취 소:제13조)	국제수산기구의어 업규제사항이행에 관한고시(고시 제 2002-35호), 연근 해어업의어업조정 (고시 제2001-59 호), 연근해오징어 채취기어선의집어 등광력기준에관한 고시(고시 제 1998-41호)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의 종류등의지 정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03 -92호)

참고자료 1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5 장 어업 조 정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제57조) 시설물의 철거 등(제58조) 표식의 설치·보호(제59조) 감독(제60조)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제61조) 어업감독공무원(제62조) 사법경찰권(제63조)	시행령(표지의 설치:제51조) 시행령(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제52조) 시행령(정선 또는 회항명령: 제53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등:제54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시설물의 철거기간:제39조, 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제40조), 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규칙(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제43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표지의 설치:제42조의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관한규칙(위반행위의 보고등:제2조)	어선표지판규격 및부착요령(고시 제99-17호), 원양어선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관한고시(고시 제2002-88호)
제 6 장 삭 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 7 장 자원의 보 호 관 리	보호수면의 지정(제67조) 보호수면의 관리(제68조)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제69조)	시행령(보호수면의 지정:제55조)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목적: 제1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신청:제2조, 의견제출:제3조, 공고:제4조)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 관한규칙(목적: 제1조)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7 장 자원의 보 호 · 관 리	육성수면의 지정(제70조)	시행령(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제56조,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제57조)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목적: 제1조, 육성수면의 지정요건:제2조, 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 제3조, 육성수면지정의 공고:제4조, 육성수면관리자의 지정:제5조, 유효기간의 연장등:제9조)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고시 제1999-109호)
	육성수면의 관리(제71조)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목적: 제1조)	
	제72조 삭제 제72조의2 삭제			
	유해어법의 금지(제73조)	시행령(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59조)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제41조)	
	소하성어류 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제74조)			
	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금지(제75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목적:제1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제76조)			
자원의 조사·보고(제77조)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목적:제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자원의 조사 및 보고: 제35조)		
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제78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제79조)	수산자원보호령(특정어업의 금지구역:제4조, 수산동식물의 이식:제11조의3,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등:제16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제17조)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목적:제1조)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고시 제1999-109호)	

참고자료 1 수산법제 연관분석표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 7 장 자원의 보 호 · 관 리	제79조의2 삭제 제79조의3 삭제 제79조의4 삭제 포상(제80조)	시행령(포상방법 및 절차:제60조)		
제 8 장 보 상 · 보 조	보상(제81조) 수 질 오 염 에 의한 손해배 상(제82조) 제83조 삭제 보상금의 공 탁(제84조) 입어에 관 한 재결(제85조)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결(제 86조) 보조 등 (제87조)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제88조)	시행령(보상의 청구:제61조, 손실액의 산출:제62조) 시행령(보조대상:제6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 관한규칙(손실액조 사기관의 지정등:제 51조의2) 수산업의장려및진흥 을위한자금의용자에 관한규칙(목적:제1 조), 영어조합법인에 관한규칙(보조금교 부대상사업 및 우선 순위의 결정:제3조)	어업의손실액 조사기관지정 (고시 제2004- 10호)
제 9 장 수 산 조 정 위 원 회	수산조정위원 회의 설치(제 89조) 수산조정위원 회의 기능(제 90조) 수산조정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제91조)	시행령(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68조의2)		중앙수산조정위 원회운영규정 (고시 제2004- 00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수산자원보호령	기타 시행규칙	고시 등
제10장 보칙	과징금처분 (제91조의2) 권한의 위임· 위탁(제92조) 수수료(제92 조의2) 청문(제93조) 수산시책에 관 한 연차보고 (제93조의2)	시행령(과징금을 부과할 위 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제72조의2, 과징금의 용도: 제72조의5) 시행령(권한의 위임:제73조)		과징금부과대 상에서 제외하 는 수산관계법 령위반행위에 관한고시(고시 제1997-89호)
제11장 벌칙	벌칙(제94조) 벌칙(제95조) 벌칙(제96조) 제97조 삭제 과태료(제98조) 몰수(제99조)	시행령(과태료의 부과:제76조)		

참고자료 2

韓 · 日 수산업법 대조표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목적) §2(정의) §3(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1(목적) §2(정의) §3(적용범위)	
§4(어장이용개발계획 등) §5(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6(서류송달의 공시)	§7(공동신청)	§5(공동신청)	§4 삭제
	제 2 장 면허어업	제2장 어업권 및 입어권	
	§8(면허어업)	§6(어업권의 정의) §9(어업권에 의하지 않는 정치어업 등의 금지)	
§9의2(營漁組合法人の 육성) §9의3(다른 법률의 준용)	§9(마을어업 등의 면허)	§10(어업면허) §7(입어권의 정의)	§43(입어권의 성질) §44(입어권내용의 서면화) §45(재정에 따른 입어권의 설정변경 및 소멸) §46(입어권의 존속기간) §47(입어권의 공유) §48(입어료의 부지불등) §49 삭제 §51(재판소관할)
	§10(면허의 결격사유) §11(면허의 금지) §12(어업의 제한 및 조건) §13(우선순위)	§14(면허의 적격성) §13(면허를 하지 않는 경우) §34(어업권의 제한 또는 조건) §15(우선순위)/§16(정치어업면허의 우선순위)/§17(구획어업면허의 우선순위)	§18~§19 삭제 §20 삭제
	§14(어업면허의 유효기간)		
§14의2(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15(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16(어업권의 등록)	§21(어업권의 존속 기간) §23(어업권의 성질) §50(등록)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p>§17(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19(어촌계등의 어업권의 담보금지) §20(담보시의 공작물 부가) §21(공유자의 동의) §22(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23(처분시의 권리의 무의 승계) §24 삭제 §25(어업권의 경매) §26 삭제 §27(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28(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지정등) §29(보호구역) §31(어업의 개시등) §32(타인지배의 금지) §39(어업권행사등의 제한)</p>	<p>§28(수면사용의 권리의무) §22(어업권의 분할 또는 변경)/ §26(어업권이전의 제한) §24(저당권의 설정) §42(어장정착공작물의 매취) §32(어업권의 공유) §30(등록권리자의 동의) §27(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혹은 분할에 있어 취득한 정치어업권 또는 구획어업권) §31(조합원의 동의) §33 삭제 §36(휴업중의 어업허가) §35(휴업의 신고) §29(대부의 금지) §39(공익상 필요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취소 또는 행사의 정지) §38(적격성상실등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11의2 삭제 §12(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자문) §41(저당권자의 보호) §8(조합원의 어업경영권) §11(면허내용의 사전결정) §42의2(입어권취득의 적격성)</p>
	<p>§25(특정구획어업권의 양도에 있어 선취특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p>
	<p>§36(휴업중의 어업허가)</p>
	<p>§37(휴업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40(착오로 인한 면허의 취소)</p>
	<p>§11의2 삭제 §12(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자문)</p>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제3장 허가 및 신고어업	제 3 장 지정어업	
§42(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41(허가어업)	§52(지정어업의 허가)	§53 삭제
	§43(어업허가등의 유효기간)		§55 삭제
	§44(신고어업)		§56(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
	§44조의2(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등)		§58(공시)
	§45(준용규정)	§60(허가의 유효기간)	§58의2(공시에 따른 허가등)
		§61(변경의 허가)	§59(허가등의 특례)
		§63(준용규정)	§62의2(허가등의 실효)
			§62의3(허가증 교부등)
	제 4 장 어획물운반업		§62(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혹은 분할)
§48 삭제 §49(수산물가공업의 등록등) §50 삭제 §51(준용규정)	§46(어획물운반업의 등록)	§54(기업의 인가)	§64(수산정책심의회에 대한 보고)
	§47(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57(허가 또는 기업의 인가에 있어서의 적격성)	
		제 4 장 어업조정	
		§52(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65(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53(조업수역의 조정)			
§54(허가정수등의 결정)			
§54의2(총허용어획량의 설정)			
§55(유어장의 지정등)			
§56 삭제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p>§58(시설물의 철거등)</p> <p>§60(감독)</p> <p>§61(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p> <p>§63(사범경찰권)</p> <p>제7장 자원의 보호관리</p> <p>§67(보호수면의 지정)</p> <p>§68(보호수면의 관리)</p> <p>§69(공사의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p> <p>§70(육성수면의 지정)</p> <p>§71(육성수면의 관리)</p> <p>§72:§72의2 삭제</p> <p>§73(유해어법의 금지)</p> <p>§74(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p> <p>§75(범칙어획물의 판매등의 금지)</p> <p>§76(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p> <p>§77(자원의 조사보고)</p> <p>§78(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p> <p>§79(자원보호에 관한 명령)</p> <p>§79의2~§79의4 삭제(2002. 1. 14.)</p> <p>§80(포상)</p>	<p>§57(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p> <p>§59(표식의 설치·보호)</p> <p>§62(어업감독공무원)</p> <p>제6장 (§64~§66) 삭제</p> <p>§66(허가받지 않은 중형선망어업등의 금지)</p> <p>§72(어장 또는 어구의 표식)</p> <p>§74(어업감독공무원)</p> <p>제5장 (§75~§81) 삭제</p> <p>§67(해구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p> <p>§68(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p> <p>§69~§71 삭제</p> <p>§73(공공의 사용에 공여하지 않는 수면)</p> <p>§74의2(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p>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p>제 8 장 보상·보조 및 재결</p> <p>§81(보상) §82(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83 삭제 §84(보상금의 공탁) §85(입어에 관한 재결) §86(어장구역등에 관한재결) §87(보조등) §88(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칙)</p>	<p>제 9 장 수산조정위원회</p> <p>§89(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90(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91(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제 6 장 어업조정위원회등</p> <p>제 1 절 총 칙</p> <p>§82(어업조정위원회) §83(소관사항)</p> <p>제 2 절 해구어업조정위원회</p> <p>§84(설치) §85(구성) §86(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87(결격자) §88(선거사무관리자) §89(선거인명부) §90(투표) §91(투표의무효) §92(당선인부족이 생긴 경우) §93(위원결원이 생긴 경우) §94(공직선거법의 준용) §95(겸직의 금지) §96(위원사직의 제한) §97(피선거권의 상실에 따른 위원의 실직) §97의2(취직제한에 따른 위원의 실직) §98(위원의 임기)</p>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p>§99(위원해직의 청구) §100(위원의 해임) §101(위원회의 회의) §102~§104 삭제</p> <p>제 3 절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p> <p>§105(설치) §106(구성) §107(위원의 임기 또는 해임) §108(위원의 실직) §109(준용규정)</p> <p>제 4 절 광역어업조사위원회</p> <p>§110(설치) §111(구성) §112(의결의 재의) §113(해산명령) §114(준용규정)</p> <p>제 5 절 잡 칙</p> <p>§115 삭제 §116(보고징수등) §117(광역어업조정위원회등 에 대한 농림수산대신의 감독) §118(어업조정위원회의 비용) §119(위임규정)</p> <p>제 7 장 토지 또는 토지 정착물의 사용</p> <p>§120(토지사용 또는 출입) §121 삭제 §122 삭제 §123 삭제 §124(토지 또는 토지정착물 의 사용) §125(사용권설정의 재정) §126(토지 또는 토지정착물의 대부계약에 관한 재정)</p>

한국 수산업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		일본 어업법(2002. 6. 19. 법률제75호)	
			제 8 장 내수면어업
			§127(내수면에 있어서 제5종 공동어업의 면허) §128 삭제 §129(유어규칙) §130(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131(구성) §132(준용규정)
	제10장 보칙	제 9 장 잡 칙	
§91의2(과징금처분) §92(권한의 위임·위탁)			
§93(청문)	§92의2(수수료)	§133(어업수수료)	
	§93의2(수산시책에 관한 연차보고)	§134(보고징수등)	
			§134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35(불복신청의 제한) §135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136(관할의 특례) §137 삭제 §137의2(제출서류의 경유기관) §137의3(사무구분)
	제11장 벌칙	제10장 벌 칙	
§97 삭제 §98(과태료) §99(몰수) §100(양벌규정)	§94~§96(벌칙)	§138~§146	
	부 칙	부 칙	